

고령화리뷰

포커스 / 이슈 분석 모음집 2018



고령화리뷰

포커스 / 이슈 분석 모음집 2018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 모음집 2018

표지면지 대체

Contents_ 포커스

1 연금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류건식	5
주요국 연금 매칭기여 방식과 시사점	강성호 김동겸	14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류건식 김동겸	24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IRP)의 원리금보장형 편중 원인과 시사점	최장훈	34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김동겸	42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김동겸	51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제도 발전 방향	최장훈 강성호	61
선진국 연금세제 지원금의 환류 사례와 소득보장효과	강성호 류건식	71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행태 및 제도평가	류건식 강성호	81

2 건강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조용운 오승연	93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오승연 안소영	101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조용운 김동겸	111

Contents_ 이슈 분석

1 연금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의사결정 체계 및 시사점	류건식	123
개인연금 지급형태가 기초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최장훈	126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과제	류건식	129
연금보험의 비과세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	강성호	132
주요국의 리스크 중심 퇴직연금감동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135
연금 선진국의 위험자산으로 투자 전환사례와 함의	강성호 김혜란	139
일본 디폴트옵선편제도 시행과 시사점	이상우	143
영국 Master Trust 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과 함의	강성호 김혜란	148
퇴직연금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김동겸	152
일본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156
미국 퇴직연금의 TDF 활용 현황 및 함의	최장훈	159

2 건강

건강검진과 국민의 건강성과	이정택	167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오승연	170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안(案) 비교	이정택 김동겸	174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지출실태와 과제	김동겸	179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	오승연 김혜란	184
수술입원일수 감소와 보험회사의 대응	김동겸	188
모바일 건강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과 시사점	오승연 김혜란	192
일본 지자체의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이상우	195

Contents_ 이슈 분석

3

저출산 및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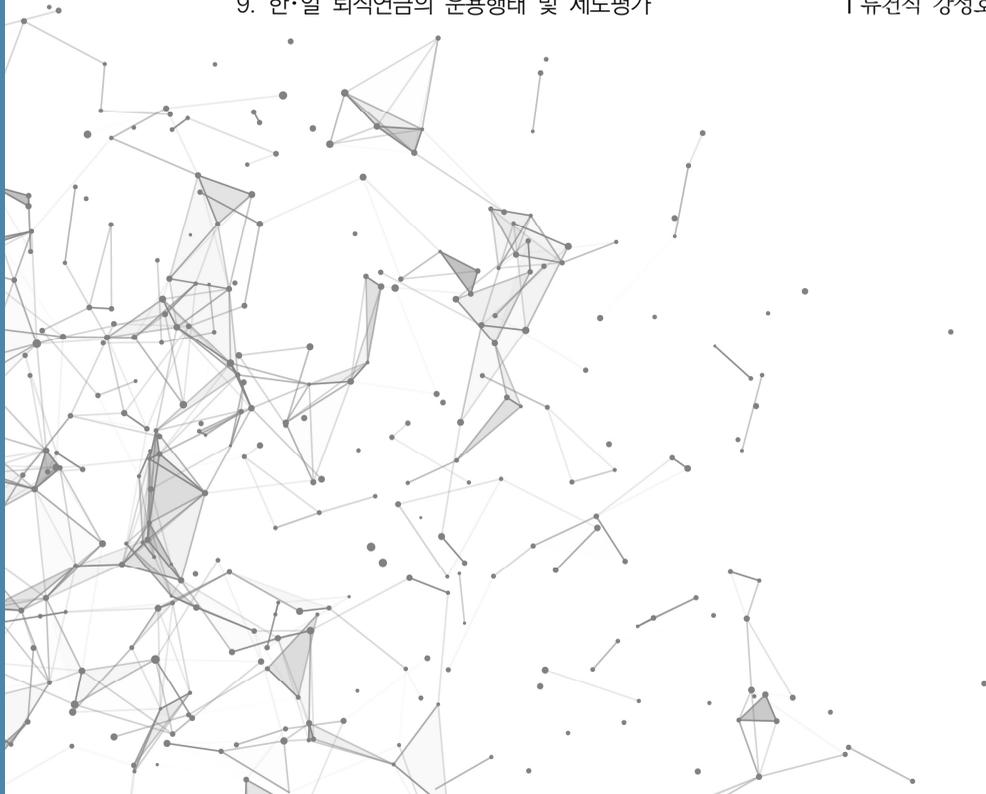
30~49세 근로세대, 노후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순자산 관리 필요	최장훈	203
노년기 가구형태와 인지기능	이정택	206
저출산 시대 난임·불임 증가와 보험의 역할	강성호 김동겸	209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원인과 시사점	최장훈	213

2018 고령화리뷰 모음집

kiri 포커스

연금

- | | |
|---|---------|
| 1.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 류건식 |
| 2. 주요국 연금 매칭기여 방식과 시사점 | 강성호 김동경 |
|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 류건식 김동경 |
| 4.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IRP)의 원리금보장형 편중
원인과 시사점 | 최장훈 |
| 5.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동경 |
| 6.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동경 |
| 7.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제도 발전 방향 | 최장훈 강성호 |
| 8. 선진국 연금세제 지원금의 환류 사례와 소득보장효과 | 강성호 류건식 |
| 9.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행태 및 제도평가 | 류건식 강성호 |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퇴직연금 사업자를 포함한 수탁자들이 근로자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할 감시기능이 보다 요구됨
 - 이에 보고는 수탁자의 감시기능 필요성, 주요국의 수탁자 감시기능 장치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평가한 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OECD는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문제(대리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능 장치 마련을 권고함
 - 수탁자는 근로자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감시기능 장치로는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 감시제도,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시장기능제고(정보제공) 등임
- 미국 등은 OECD 권고안에 기초해 수탁자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수탁자를 사용자, 사업자, 연금컨설턴트, 자산운용사, 정책당국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수탁자별로 책임(주의의무, 충실의무, 분산투자의무, 개인정보준수의무)을 엄격히 부여함
 -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 감시인제도를 통해 제도운영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운영리스크에 기반한 내부통제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법규위반 여부 등을 평가함
- OECD 권고안 및 선진국 사례를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감시기능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사업자 이외에 사용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수탁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감시기능과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인·검증 등을 위해 미국 등처럼 수탁자 감시인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부통제 관련 규정 마련과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수탁자의 보고 및 통지의무 강화가 요구됨

1. 검토배경



- 퇴직연금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을 포함한 수탁자¹⁾들이 근로자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이익보다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익 상충문제)²⁾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할 감시기능이 요구됨
 - 특히 퇴직연금 운영이 기금형³⁾인 경우 사용자, 사업자, 기금운용위원회 등 많은 수탁자가 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하게 되므로 보다 다양한 감시기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OECD는 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익상충문제를 해소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운영의 감시기능 장치 마련을 권고하고 있음⁴⁾
 - 미국 등 선진국들은 OECD 권고안에 기초해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된 감시기능체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선진국은 어떠한 형태로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본고는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수탁자 감시기능 필요성, 그리고 주요국의 수탁자 감시기능 장치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평가한 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는 위탁자이고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등은 수탁자(Fiduciary)임. 퇴직연금 운영에 일정한 재량권(Discretion)을 가지고 있으나 여부로 수탁자 여부를 판단함
 2) 이익상충문제(이익충돌문제)는 본인·대리인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의미함
 3) 기금형은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연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구조로, 제도 관리 및 기금 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계약형과 차이가 존재함
 4) OECD는 연기금 자산 관리 등 11개 퇴직연금 지배구조원칙에서 감시기능 관련 장치 마련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자세한 내용은 OECD(2015), "OECD 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를 참조 바람

2. 퇴직연금의 운영 특징 및 감시가능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인 사용자, 금융기관인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정책당국 등 많은 이해관계자(수탁자)가 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함(〈표 1〉 참조)
 - 일반적으로 소유자와 경영자로 분리된 일반기업에 비해, 퇴직연금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임
 - 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수탁자)는 근로자(위탁자)를 대신하여 제도를 운영·관리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대리인(Agent) 역할을 담당함
 - 퇴직연금을 계약형으로 운영하느냐(한국·일본), 기금형으로 운영하느냐(미국 등 앵글로 색슨계 국가)여부에 따라 수탁자 차이가 존재함

〈표 1〉 퇴직연금과 일반기업의 운영 특징

구분	퇴직연금	일반기업
본인(Principal)	근로자	주주
대리인(Agent)	다수(사용자, 사업자, 운용사, 정책당국 등)	단일(경영자)
제도 운영 형태	계약형, 기금형 등(DB형, DC형, IRP)	-
이익상충 발생	매우 복잡·다양화	비교적 정형화

- 퇴직연금 수탁자는 근로자 이익을 위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운영 재량권을 행사하는 이익상충문제(본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높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고위험자산의 투자 유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 및 사기(횡령)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문제가 빈번히 발생함⁵⁾

5) 최근 일본은 수탁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부실 운용, 적립금 횡령 등으로 근로자에 의한 수탁자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함

〈표 2〉 OECD 지배구조 기준에서 제시한 감시기능 장치

감시기능 장치(수단)	세부 내용(요약)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수탁기관 등) 자격기준 강화, 수탁자 책임 명시
수탁자 감시제도	자문 및 전문가선임, 독립적인 감사, 연금계리사 선임
내부통제시스템	리스크(운영 및 규제리스크 등)에 기반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장기능제고(정보제공)	보고 및 통지의무(공시의무 포함) 등 시장기능제고

자료: OECD(2015), “퇴직연금 지배구조 기준” 등에서 재정리

- 퇴직연금제도를 정착하고 근로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수탁자들이 근로자 니즈에 부합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이에 따라 OECD는 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익상충문제를 해소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 관련 감시기능 장치(감시기능수단)를 제시·권고함(〈표2〉 참조)
 - OECD 퇴직연금 지배구조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시기능 장치는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감시인제도, 내부통제시스템, 시장기능제고(예: 정보제공) 등 4가지임
 - 수탁기관 책임 명시, 연금 운영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⁶⁾을 명확히 부여하고, 자문 및 전문가 선임, 연금계리사 선임을 통해 퇴직연금 운영의 감시기능이 제고되도록 유도함
 - 또한, OECD는 리스크에 기반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보고 및 통지의무 등 시장기능 제고가 감시기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함

3.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감시기능 평가



- 여기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수탁자 감시기능 장치(체계)를 수탁자 책임 측면, 수탁자 감시 측면, 내부통제 측면, 시장기능제고(정보제공)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대비하여 평가함⁷⁾

6)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은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계되는 책임으로 미국 등 영어로 색슨계 국가의 신탁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탁자가 가지는 제도 운영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7) 여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유사한 일본, 미국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함

■ (수탁자 책임) 미국 등은 수탁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탁자별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수탁자의 범위를 사용자, 사업자, 컨설턴트, 정책당국까지 확대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함⁸⁾
 - 주의의무, 충실의무, 분산투자의무, 개인정보준수의무 등 4대 수탁자 책임을 수탁자별로 엄격히 규정하여 수탁자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도록 유도함
- 일본은 사용자, 사업자, 컨설턴트 등까지, 영국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고용되어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도 수탁자로 간주하여 수탁자 책임을 부여함
 -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연금자산을 부적절하게 활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이를 가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함

〈표 3〉 수탁자 범위 및 책임

구분	외국	한국
범위	- 미국, 일본 모두 수탁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사용자, 지명 및 신탁수탁자, 외부전문가 등	- 근퇴법상 수탁자 정의 및 규정 부재 • 다만 사용자, 사업자를 수탁자로 간주
책임	- 수탁자별 책임 명확화 • 주의의무, 충실의무, 분산투자의무 등	-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 •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규정 미흡

자료: 미국·일본·영국의 퇴직연금 관련법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반면 우리나라는 수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이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은 미흡한 수준임
 - 퇴직연금 운영을 일괄적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계약형 지배구조인 점을 고려해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됨

■ (수탁자 감시인제도) 미국 등 선진국은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 감시인제도를 통해 제도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감시인 제도에 의한 제도 운영 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8) ERISA법상의 수탁자는 ① 연금운영에 재량권 또는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 ② 연금자산운용 등에 관하여 보수를 받고 조언하는 자 ③ 연금자산의 운용 및 처분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④ 외부전문기관(펀드매니저, 연금컨설팅 등) 등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근로자 이외의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련자 모두를 수탁자로 간주함

〈표 4〉 수탁자 감시인제도

구분	외국	한국
전문가 자문제도	- 전문가 자문 등에 의한 전문성 강화 • 미국 등에서 적극 활용	- 근퇴법상 별도의 관련 규정 부재 • 수탁기관의 전문성 제고 미흡
감시인 제도	- 미국·일본 모두 지정 연금계리사제도 도입 •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 - 외부감사인에 의한 퇴직연금 운영 감사 • 연금업무 및 연금회계 감사 등	- 사업자등록 요건(보험계리전문가)에 불과 • 재무건전성 확인 및 검증이 형식적 - 외부감사인에 관한 규정 부재

자료: 미국·일본·영국의 퇴직연금 관련법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미국은 수탁기관의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 건전성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 수탁기관, 사용자 등은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고 수탁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함
 - 일본은 지정 연금계리사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재정이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공인회계사 등이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감사함
 - 연금수리 감시 및 연금업무 감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 여부를 평가함
 -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감시자가 정책당국 이외에 별도로 없는 상황이며 근퇴법에 제3자적 감시자인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내용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 외부감사인제도에 대한 별도의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사업자 등록요건으로 보험계리전문가를 요구하는 수준임
- (내부통제기준) 미국 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제도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 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익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운영 리스크에 기반한 내부통제기준(내부통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법규위반 여부 등을 평가함¹⁰⁾
 - 예를 들어 미국은 “수탁자의 리스크관리기준”¹¹⁾을 설정하고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영국은 법규준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법규준수감사 및 보고를 요구함¹²⁾

9) 일본에서는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지정연금계리사제도가 도입되어 1997년부터 시행함

10)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한 통제리스크는 사기, 기업측의 적립상태, 투자리스크, 아웃소싱기관의 법규위반·경영실패, 부적절한 제도 관리,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임

11) 리스크 관리 기준(Risk Standards for Institutional Investment)은 20개 기준(리스크 관리, 리스크 측정, 리스크 감시)으로 구성됨

〈표 5〉 내부통제 기준

구분	외국	한국
기준	- 리스크에 기반한 내부통제 강화 • 운영리스크 및 법규리스크 관리 등	- 내부통제에 관한 시스템(규정) 부재 • 근퇴법 및 시행령 등
특징	- 감독 규정 등에 명시(영국) • 미국은 자율적 내부통제 지향	- 이해상충문제 모니터링 한계

자료: 미국·일본·영국의 퇴직연금 관련법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운영책임이 있는 모든 자가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법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은 부재함
 - 이익상충문제를 사전에 확인·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 제도적으로 부재함
- (시장기능) 미국 등은 수탁자에게 보고 및 통지의무 등을 엄격히 부여한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수탁자는 연차보고서 등을 노동성 및 연금급부보증공사에 매년 보고하고, 사용자는 최저적립기준 미달 원인, 잉여연금자금의 이관상황 등을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함
 - 일본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업무 및 결산 관련 보고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 시 관리운영업무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보의 통지를 의무화함
 - 영국은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사항 발견 시, 감독당국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¹³⁾

〈표 6〉 시장기능(정보제공)

구분	외국	한국
내용	- 미국·일본 등 수탁자의무 엄격 • 보고 및 통지의무, 신고의무 등	- 최소한도의 수탁자의무 부과 • 신고의무 등은 상대적 미흡
특징	- 시장기능 제고에 의한 감시 강화 • 적극적인 정보제공 추세	- 근로자와 수탁자 간 정보비대칭 심화 • 관련 규정 정비 필요

자료: 미국·일본·영국의 퇴직연금 관련법 등에 기초하여 작성

- 반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퇴직연금보장법에는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없고 퇴직연금 감독차원에서 최소한도의 공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12) 또한, 영국은 투자와 현금부문 직무를 분리하는 등 사전에 적절한 리스크통제절차에 의해 수탁자와 관련된 사기리스크를 관리함

13) 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은 부정, 연기금 불법사용, 투자정책 오류, 부적절한 기록 관리, 운용 실패 등임

-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감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소한의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근로자에게 적립부족결과를 통지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임

4. 제언



- 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익상충문제 해소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OECD 기준에 준하는 감시기능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계약형 지배구조¹⁴⁾로 퇴직연금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의 감시기능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정책에 따라 기금형 도입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감시기능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고용노동부 등이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금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감시기능장치 마련이 사전에 전제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수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고 사용자, 사업자 등 수탁자별로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는 사업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많은 영향력으로 행사하고 있음에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는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 규정이 설정됨
 -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수탁자의 범위를 사업자 이외에 사용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책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 부여 등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는 미·일 등 선진국처럼 운영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의 감시기능이나 재무건전성 확인·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4) 우리나라의 계약형과 유사한 규약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감시기능 수준이 미흡함

- 따라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수탁업무 등을 상시 감시하는 별도의 수탁자 감시인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셋째, 법규위반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관련 규정 정비와 수탁자의 보고 및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에서 수탁자의무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명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수탁자는 계리적 가치평가, 감사보고서 등을 감독당국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퇴직연금 운영의 중요사건 발생 시 통지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제 도입이 요구됨 kiri



주요국 연금 매칭기여 방식과 시사점

강성호 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

- 최근 모기업에서 노후 생활의 수단으로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 방식의 복지 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퇴직연금에의 확대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퇴직연금 매칭기여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매칭기여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호주의 Super Co-contribution 제도 등과 같이 정부가 매칭기여 방식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경우는 그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연금취약계층임
 - 한편, 기업이 매칭기여제도 운영을 통한 보험료 지원을 하는 목적은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력수급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미국 401(k) 제도 운영 기업의 60%는 기업복지 차원에서 매칭기여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Vanguard 2017)
 - 401(k) 제도에서 사용자의 보험료 지원비율(Match rate)은 근로자 급여의 평균 4% 수준임
 - 매칭기여비율 설정방법에는 단순매칭, 단계별매칭, 상한매칭 등이 있으며, 대부분 단순매칭 방법을 적용
- 미국의 401(k) 제도를 대상으로 매칭기여 방식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 결과, 매칭기여가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국의 401(k) 제도의 경우 매칭기여 방식 적용 이후 사적연금 가입이 증가하였음(Choi(2015) 등)
 - 특히, 터키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칭기여 방식은 퇴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가입률을 제고 시키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매칭기여 방식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회·경제적 환경 등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한 자율적 도입 유도가 필요함
 - 또한, 저소득층 등 연금취약계층이 사적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매칭기여 방식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요구됨

1. 검토배경



- 최근 모기업에서 노후생활의 수단으로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 방식의 복지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퇴직연금에의 확대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매칭기여 방식은 퇴직연금 보험료(기여금)에 대해 본인 납부수준에 상응하여 정부 또는 고용주가 추가로 보험료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호주,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임
 -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모기업이 매칭기여 방식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¹⁾ 이는 기업의 복지지원금을 활용하여 직원의 노후생활보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도입(혹은 도입 예정인) 사업장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동 방식이 현행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기초하여 설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현행 퇴직급여법 하에서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²⁾
 - 퇴직급여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기여율은 8.3%(=1/12)로 설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복지 차원에서 최소기여율 이상으로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본고에서는 퇴직연금 매칭기여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향후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기업복지 지원금이 퇴직연금 계좌로 유입될 수 있는 바,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매칭기여제도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매칭기여 방식이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이투데이(2018. 1. 8), “아직 낯선 매칭형 퇴직연금 제도…美선 이미 활성화”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수준 및 납입 등)

2. 선진국의 매칭기여 방식 운영 사례



가. 매칭기여 방식의 다양성

- 매칭기여 방식은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운영 중임³⁾
 - 과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지원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연금가입 유도를 위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매칭기여 방식 적용사례가 늘고 있음⁴⁾
- 매칭기여는 기본적으로 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 주체에 따라 운영목적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 호주, 체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은 정부가 매칭기여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이나,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은 보험료 지원 주체가 기업임⁵⁾
 - 국가별로 매칭지원비율을 보면, 칠레·터키는 가입자 납입액의 50%, 호주·아이슬란드·뉴질랜드는 50%, 멕시코는 325%를 지원하는 등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먼저, 정부 주도의 매칭기여제도 운영은 주로 저소득층, 소기업근로자 등 연금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주목적으로 함
 - 호주에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가 비적격 퇴직연금제도⁶⁾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조적립(Super Co-contribution)제도⁷⁾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⁸⁾

3)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age 19"

4) OECD(2016), "OECD Pensions Outlook 2016"

5)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6)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제도 이외의 퇴직연금으로 우리나라의 IRP(본인부담)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7)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super-co-contribution/>

8)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소득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해당금액을 정산해서 소득세신고서

- 2014년부터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1달러 당 50센트(연간 최대 \$500의 지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하고 있음⁹⁾
- 칠레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매칭기여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¹⁰⁾ 콜롬비아나 페루 등의 경우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특히, 칠레에서는 18~35세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¹¹⁾

〈표 1〉 주요국의 매칭기여제도 운영 현황

국가	지원주체	대상	주요 내용
호주	정부	저소득층 및 중산층	비적격퇴직연금제도: Super Co-Contribution(2003년부터 시행) -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50% 지원(연간 최대 \$500 지원)
체코	정부	근로자	보충형연금제도: 납입보험료 수준에 따라 지원 차등 - 지원액: CZK 90 ~ 230(최소납입액 CZK 300)
뉴질랜드	정부	근로자 (18세 이상)	KiwiSaver 제도 - 연간 NZD 521.43 한도로 1달러 당 50센트 대응출연
아일랜드	정부, 기업	중산층 저소득층	신규 자동가입연금제도(22세 이상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연계 *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33% 세액공제액에 해당
터키	정부	전체	개인연금제도(정부가 납입보험료의 15% 지원)
중남미국가	정부	저소득층	콜롬비아: 저소득 비정규직(Beneficios Económicos Periódicos) 페루: 소기업 근로자(Sistema de Pensiones Sociales)
미국	기업	근로자	고용주의 자율 결정(통상 근로자임금 6% 한도로, 50% 지원)
아이슬란드	기업	근로자	급여의 최소 2% 지원(일반적 형태: 근로자 4% + 고용주 2%)
일본	기업	근로자	기업형 DC연금(マッチング 拠出): 2012년부터 제도 시행

자료: OECD(2015) 등을 참고로 저자가 작성

■ 다음으로, 기업이 매칭기여제도 운영을 통해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하는 목적은 주로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인력수급의 유연성 등 때문임¹²⁾

- 미국의 401(k) 퇴직연금에서 활용하는 매칭기여 방식은 IT 등 전문 업종에서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영실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가 제출되는 매년 6월 각 개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을 취함

9) 2017/2018 기준 총소득이 \$36,813 이하일 경우 최대 \$500까지 보조금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조금이 줄어들어 \$51,813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Australian Taxation Office)

10) OECD(2014),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 Ireland", p. 127); Solange Berstein J.(2009), "Pension System in Chile: The Effect of the Financial Crisis"; 한편, 여성에 대해서는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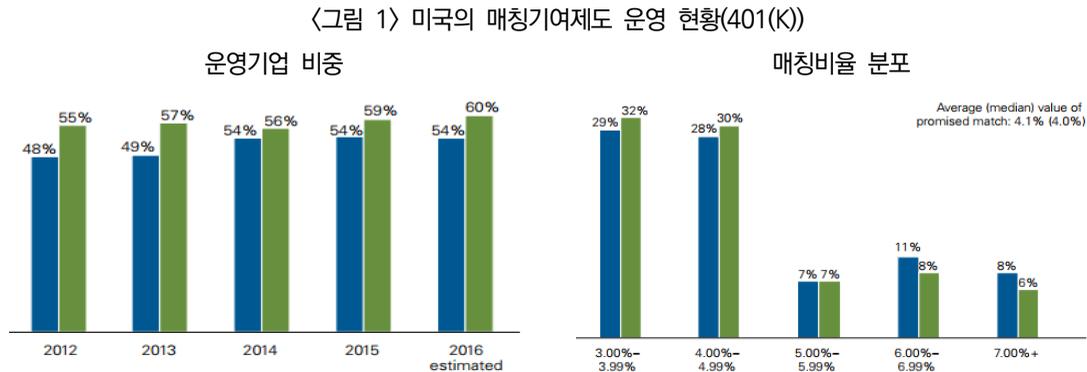
11) Oxera(2014), "The Retirement Income Markets: Country Analysis"

12) 이광상(2017), 『미국 기업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매칭 비율 상승과 시사점』, 금융연구원

- 미국의 경우 고령 및 고임금 종업원의 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채용인력을 확대하는 등 인력 수급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용자의 매칭기여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고령자의 예정퇴직 기간보다 조기퇴직 시, 전문인력 채용 시 매칭기여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 한편, 일본의 경우도 기업형 DC연금에 2012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매칭기여가 허용되면서 부담금 납부한도의 50%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고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의 기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업원의 추가 기여가 가능함¹³⁾
 - 企業年金連合会(2017)¹⁴⁾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 중 매칭기여 방식 운영비율은 44.2%임

나. 미국의 401(k)에서 매칭기여 운영 사례¹⁵⁾

- 401(k) 제도하에서는 근로자가 401(k) 계좌에 적립하는 부담금에 대응하여 고용주가 추가로 적립해 주는 매칭기여제도(Matching Contribution)를 운영 중임
 - Vanguard(2017)의 조사에 따르면 401(k)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60%가 기업복지 차원에서 매칭기여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율(Match rate)은 근로자 급여의 평균 4% 수준임



주: 왼쪽막대(파랑)는 사업체 수 기준, 오른쪽막대(초록)는 가입자 수 기준
 자료: Vanguard(2017), "How America Saves 2017"

13) 사업주와 가입자 기여금 합산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퇴직연금 보유 시: 330,000엔, 미보유 시: 660,000엔)
 14) 企業年金連合会(2017), "2015 年度決算 確定拠出年金実態調査結果 概要"
 15) 이하에서는 매칭기여 방식이 가장 발달된 제도로 평가되는 미국의 401(k)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매칭기여비율 설정방법(Match Formula)에는 단순매칭, 단계별매칭, 상한매칭 등이 있으며, 대다수 고용주는 단순매칭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¹⁶⁾

- 단순매칭(Simple match)은 근로자급여의 고정된 비율을 한도로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특정 비율을 고용주가 대응출연해 주는 방식임
 - 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의 6%를 한도로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매칭기여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
- 단계별매칭(Tiered Match)은 근로자의 납입한 보험료 구간에 대응하여 고용주가 지원하는 방식임
 - 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의 4%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100% 매칭기여를 하고, 그 다음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매칭기여해 주는 방식임
- 상한매칭(Dollar cap)은 고용주가 지원하는 최대 한도액을 설정한 이후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이외에도 근로자의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기초하여 고용주가 지원비율을 달리하는 방식 등도 있음¹⁷⁾

■ 한편, 매칭기여 방식에는 퇴직연금 수급계획(Vesting Schedule)을 통해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억제하는 장치도 있음

- 기업은 근로자가 근무한 연수에 따라 고용주가 매칭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 수령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
 -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2년인 경우 고용주 지원액의 20%, 3년인 경우 고용주 지원액의 40% 등과 같이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감액함

16) Investment Company Institute(2016), "The BrightScope / ICI Defined Contribution Plan Profile: A Close Look at 401(k) Plans"

17) Vanguard(2016), "How America Saves 2016"

3. 매칭기여의 가입률 제고 효과



- 미국의 401(k) 제도를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매칭기여 방식 적용 이후 근로자들의 연금 가입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¹⁸⁾
 - Choi(2015)¹⁹⁾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용주가 매칭비율(match rate)을 10%p 높일 경우 가입률은 2.5~ 6.3%p 증가한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Madrian(2013)²⁰⁾은 고용주의 매칭비율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가입률이 높아지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함
 - Beshears et al.(2007)²¹⁾의 연구에서는 고용주가 급여의 1% 만큼 매칭비율을 감소시킬 경우 근로자의 가입률은 1.8~3.8%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Engelhardt & Kumar(2007)²²⁾은 사용자가 근로자 납입금액의 25%를 매칭해 주는 경우 401(k) 가입률이 3.75%에서 6%로 증가하고 저축액은 연 \$400~\$7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함
 - Duflo et al.(2006)²³⁾은 매칭기여가 제공되지 않는 IRA제도에 대한 가입의향 비율은 3%에 불과하나, 매칭기여가 20%, 50% 제공될 경우 가입의향이 각각 8%, 14%까지 증가함을 보여줌

18) OECD(2017), "The impact of tax incentives and other policies on retirement savings: A literature review, 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 OECD(2017), "Designing funded pension arrangements given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and behavioural biases", 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

19) James J. Choi(2015), "Contributions to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s", NBER Working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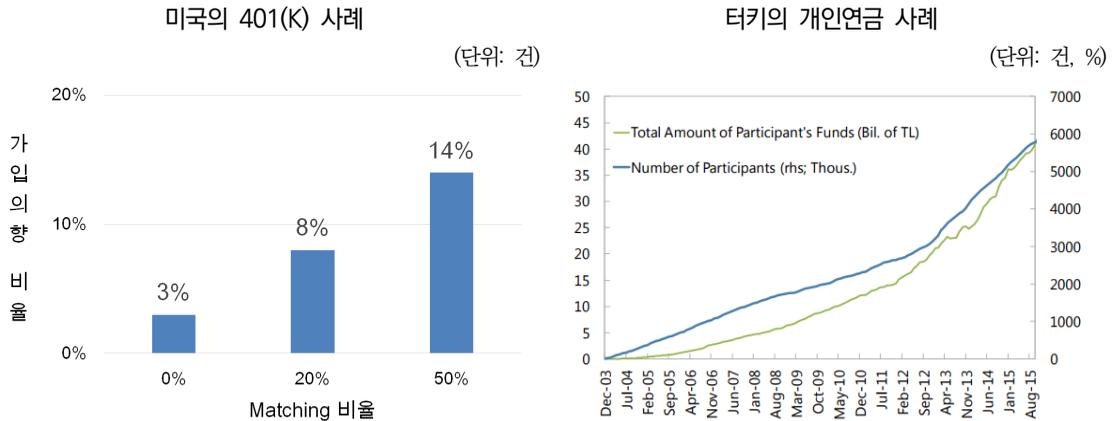
20) Brigitte C. Madrian(2012), "Matching Contributions and Savings Outcomes: A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NBER Working Paper

21) John Beshears, James J. Choi, David Laibson, Brigitte C. Madrian(2007), "The Impact of Employer Matching on Savings Plan Participation under Automatic Enrollment", NBER Working Paper

22) Engelhardt, Gary V., and Anil Kumar(2007), "Employer Matching and 401(k) Saving: 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

23) Duflo, Esther, William Gale, Jeffrey Liebman, Peter Orszag, and Emmanuel Saez.(2006), "Saving Incentives for Low-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 (4)

〈그림 2〉 매칭기여제도 도입의 영향



자료: Duflo et al.(2006); IMF(2016)

■ IMF(2016)²⁴⁾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개인연금 매칭기여제도를 도입한 터키의 경우 적립금 규모와 가입자 수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됨(〈그림 2〉 참조)

- 터키는 2001년 10월에 도입된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부진함에 따라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2013년 1월부터 정부주도의 매칭기여 방식을 도입함²⁵⁾
- 한편,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을 대상으로 한 Carranza et al(2012)²⁶⁾의 연구결과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매칭기여제도 도입이 가입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4)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6), "TURKEY - PRIVATE SAVINGS IN TURKEY—DEVELOPMENTS AND POLICY OPTIONS"

25) Willis Towers Watson(2012), "Turkey: New Pension Reforms to Include Government Matching Contributions, GLOBAL NEWS BRIEFS"

26) Luis Carranza, Ángel Melguizo, and David Tuesta(2012), "Matching Contributions for Pensions in Colombia, Mexico, and Peru: Experiences and Prospects", BBVA Research

4. 매칭기여 방식 평가 및 시사점



가. 매칭기여 방식 평가

- 첫째,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매칭기여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매칭기여 방식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부 참여의 경우는 조세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입유인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매칭기여 방식을 통해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하는 주요한 이유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인력 수급의 유연성 등이었음
 - 매칭기여 방식을 통해 IT 등 전문 업종에서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영실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 셋째, 매칭기여 방식은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401(k) 제도를 중심으로 매칭기여 방식이 사적연금 가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Choi(2015) 등)
 - 특히, 매칭기여 방식은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터키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연금 가입률을 제고 시키는 데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음

나. 고려사항 및 시사점

- 매칭기여 방식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를 따르지 않고 사회·경제적 환경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8.3%)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선진국들과 다르므로, 8.3% 이상 납입액에 대한 매칭기여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이분화되어 있어 퇴직 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과 여건이 다르므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일원화가 선행 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매칭기여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매칭기여 방식은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 방식은 추가적인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므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소득층 등 연금취약계층의 가입유도를 위해 매칭기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금세제 체계 내에서 매칭기여의 본인부담은 IRP 계좌에 자동 연계시킴으로써 세제혜택이 발생되도록 하고, 사업주 부담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통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전 국민 퇴직연금 계좌가 된 IRP에 대한 저소득층의 가입 유도를 위해 매칭기여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²⁷⁾ Kiri

27)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일정금액을 추가 납입할 경우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 검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비 등으로 중도인출되는 비중(예: 주거 관련 비용충당 인출 63.8%)이 높아 연금재원 소진이 매우 우려됨
 - 이에 보고는 중도인출 관련 규정 및 실태를 살펴본 후, 미국 등 선진국과 중도인출 관련 규제를 비교·평가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함
- 광범위한 중도인출 허용, 인출한도 미설정 등 중도인출에 대한 낮은 규제수준,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전액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함
 -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과 같이 중도인출 사유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임
 - 특히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충당 목적의 중도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 등은 엄격한 중도인출 허용 및 중도인출 한도 설정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별 인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필요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이루어짐
 -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함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도인출 규제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첫째, 사망, 영구장애 등 긴급자금수요에 국한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이 바람직함
 - 둘째, 주택구입비,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담보권 설정, 상계처리 등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총당으로 약 64%가 인출되어 연금재원의 소진이 매우 우려됨
 - 통계청이 발표한 중도인출 사유(2016년 기준)를 보면 주택구입(45.7%), 장기요양(25.7%),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총당(18.1%)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광범위한 중도인출 허용, 한도 미설정 등 중도인출 규제가 약해 전액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함¹⁾
 - 퇴직연금 적립금이 은퇴시점까지 인출되지 않고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현안과제로 대두됨
- 따라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등 선진국은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중도인출 한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또한 중도인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립금 유출 효과가 작은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²⁾
- 본고는 중도인출관련 규정 및 실태를 살펴본 후, 중도인출 관련 규제를 중도인출 허용범위, 중도인출 한도, 담보대출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비교·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함

1)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제도가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중도인출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적립금 상환 의무가 없는 반면, 담보대출은 적립금 상환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도인출이 노후재원의 소진 가능성이 높음

2. 중도인출 규정 및 실태



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한해 근로자에게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담보대출은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제도에서 허용되고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사유(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사유)로는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 등이 있음

〈표 1〉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관련 규정

구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담보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②(수급권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등)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기초하여 작성

■ 중도인출의 경우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액 또는 부분인출이 모두 가능함

-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한도가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³⁾ 중도인출에 대한 인출한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적립금의 전액인출이 가능함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 부담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담보대출 사유에는 해당됨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입자는 적립금 전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으나, 담보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②

대출의 경우 가입자의 인적·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적립금의 40% 또는 50% 내에서 피해금액을 적용함⁴⁾

〈표 2〉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허용 사유 및 한도

사유	중도인출		담보대출	
	DC, IRP		DB, DC, IRP	
	허용	한도	허용	한도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	적립금 전액 인출 가능	○	적립금의 50% 이내
무주택자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비	○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5년 내 파산선고	○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	별도규정

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의 경우 가입자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적용(별도규정)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이경희(2017) 등을 참조 작성

■ 이처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는 광범위하고 인출한도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중도인출에 대한 규제수준이 낮은 편임

- 중도인출은 담보대출과 달리 적립금 인출의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칫 느슨한 중도인출 규제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담보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담보대출 규정은 형식적인 규정이 되고 있음
 - 퇴직연금 담보대출 규모는 2015년도 4억 3,700만 원, 2016년 4억 5,600만 원에 불과함⁵⁾

나. 실태⁶⁾: 성별, 연령대별, 사유별 중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 91명이며, 인출 금액은 1조 2천억 원 규모임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②의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5) 조선일보(2017. 4. 12), “퇴직연금 담보대출, 2년간 팔랑 9억 원..“있으나마나” 비판 고조”
 6) 중도인출 실태(현황, 중도인출 사유)는 통계청이 2017년에 발표한 퇴직연금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통계청은 2016년부터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일자리 DB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퇴직연금가입 및 수급 자료를 연계하여 퇴직연금 통계를 작성함

-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전년(2015년) 대비 42.8%, 중도인출 금액은 전년 대비 27.7%로 대폭 증가함

〈표 3〉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단위: 명, 억 원, 만 원,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인출자 수 (명)	28,080 (100)	40,091 (100)	22,326 (79.5)	31,933 (79.7)	5,754 (20.5)	8,158 (20.3)
인출 금액(억 원)	9,648 (100)	12,318 (100)	8,076 (83.7)	10,433 (84.7)	1,572 (16.3)	1,885 (15.3)
1인당 인출 금액(만 원)	3,436	3,073	3,617	3,267	2,732	2,310

주: 괄호 안의 값은 전체 대비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12. 22),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전체 중도인출자의 79.7%, 중도인출 금액의 84.7%를 차지하며, 1인당 인출 금액도 남성이 3,267만 원인데 반해 여성은 2,310만 원에 불과함

- 중도인출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79.7%와 20.3%로 여성보다 남성의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수준임
- 또한 남성은 중도인출 금액의 84.7%를 차지해 중도인출이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령대별(2015년 기준)로 보면 30~40대가 전체 중도인출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15.0%에 불과함(〈표 4〉 참조)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6.5%로 가장 많고, 40대 33.1%, 50대 13.6% 등의 순임
- 2015년 말 기준으로 확정기여(DC)형 가입자 연령분포가 30대 미만 12.7%, 30대 29.5%, 40대 28.1%, 50대 20.5%, 60대 이상이 9.2%임을 감안하면 30대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

〈표 4〉 연령대별 퇴직연금 중도인출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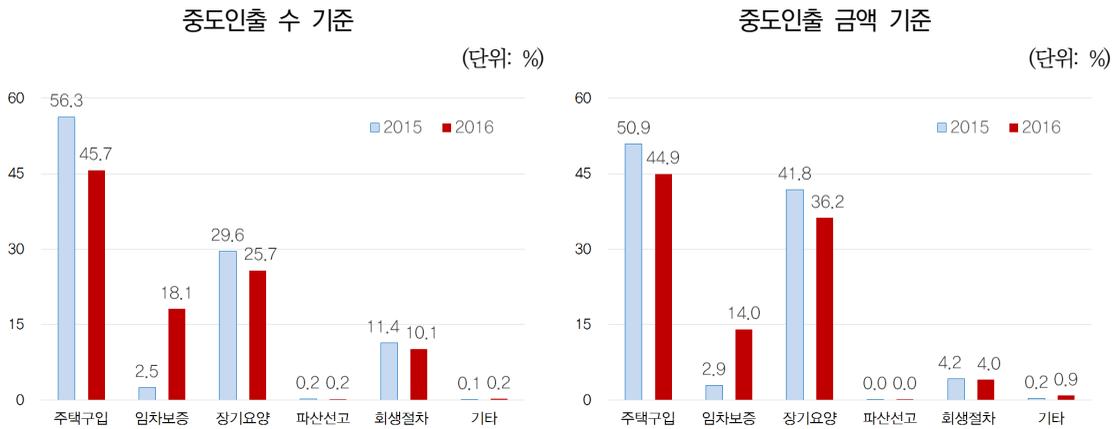
연령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비중	0.0	5.4	46.5	33.1	13.6	1.4

자료: 통계청 자료(2016)를 기초로 작성

■ 사유별로 보면, 주택구입,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 중도인출(63.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인출자 수 기준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45.7%), 장기요양(25.7%),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충당(18.1%), 회생절차개시(10.1%)의 순임
- 인출 금액 총액 기준으로는 주택구입(44.9%), 장기요양(36.2%), 임차보증(14.0%) 등임

〈그림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비중



자료: 통계청 자료(2017. 12) 등을 기초로 작성

- 중도인출 사유별 1인당 인출 금액은 장기요양(4천 3백만 원), 주택구입(3천만 원), 임차보증(2천 4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⁷⁾
- 특히 201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에 대한 중도인출이 허용되어, 이에 대한 중도인출이 대폭 증가함

7) 2016년 기준 중도인출 사유별 1인당 인출 금액은 다음과 같음(통계청(2017),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
 (1) 주택구입: 3,019만 원 (2) 임차보증: 2,384만 원 (3) 장기요양: 4,322만 원 (4) 파산선고: 750만 원 (5) 회생절차: 1,307만 원

3. 중도인출 제도 평가



- 여기에서는 제2장 중도인출 규정 및 실태에 기초해 중도인출 범위 측면, 중도인출 한도 측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연계 측면에서 미국 등과 대비하여 평가함⁸⁾
- (중도인출 사유)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여 노후재원 소진이 우려되는 반면, 미국 등은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국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은 근로활동 중단(사망, 영구장애, 55세 이후 퇴사),⁹⁾ 긴급자금수요 발생(의료비 지출) 등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음
 - 최초 주택구입, 재건축 등을 목적으로 한 중도인출은 개인퇴직계좌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함¹⁰⁾

〈표 5〉 중도인출 허용범위(사유) 비교

구분	해외	한국
허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경우로 제한(위급사항) - 미국: 사망, 영구장애 등 - 영국: 건강상 퇴직, 기대여명 1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인출 사유가 매우 광범위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파산선고 등 - DC형, IRP 중도인출 사유 동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중도인출 규제 - 노후재원 확보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슨한 중도인출 규제 - 퇴직금 중간정산제 감안

자료: IRS(2017), Publication 590-B - 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GOV.UK(<https://www.gov.uk/early-retirement-pension/personal-and-workplace-pensions>)

-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 사유 외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5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함
 - 호주는 영구 및 일시적 장애, 심각한 재무적 곤경 시에만 중도인출을 인정함¹¹⁾
-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과 같이 중도인출 사유가 일반적이고 그 범위 또한 매우 포괄적임

8) 제3장에서는 제2장 중도인출 규정 및 실태 등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기초로 평가하고자 하였음

9) 사망 시(가족들이 유산으로 인출), 영구장애(실명, 뇌손상 등 해당사항이 영구적 장애일 때), 55세 이후 퇴사 등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함

10) 주택구입 시 중도인출은 전통형 IRA, Roth IRA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1)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5), "Early Access to Your Super"

- (중도인출 한도)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한도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적립금의 전액인출로 이어지는 반면, 미국의 경우 해당 사유별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어 필요금액 한도 내 부분인출이 이루어짐
 - 미국은 중도인출 한도가 엄격하여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 시 제도규약에 근거한 심사 후 필요한 금액한도에서만 중도인출이 이루어짐
 -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는 보험, 자산매각, 퇴직연금 담보대출 등 다른 재원으로 긴급 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함
 - 인출한도가 엄격하여 의료비 지출은 총소득의 7.5% 초과한 금액, 최초 주택구입비 및 재건축비용 등에 대해서는 10,000달러로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인출이 가능함에 따라 주택 구입 목적 등으로 전부 인출되고 있는 상황임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12) 의료비의 경우에도 요양에 대한 정의 및 세부조건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과도하게 인출될 가능성이 높음

〈표 6〉 중도인출의 금액한도 비교

구분	해외	한국
주택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구입 시 중도인출 허용(IRA에 해당) - 미국: 10,000달러 한도(120일 내 사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별도 관련 규정 부재 -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의료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중도인출 한도 제한 - 미국: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에 대한 정의 및 세부규정 모호 - 추상적 규정: 6개월 이상 요양 시

자료: IRS(2017), Publication 590-B - 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 (담보대출 연계)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담보대출의 세부규정 미흡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거의 활용되지 못해 중도인출에 의한 연금재정의 소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미국 등은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있음
 - 담보대출은 적립금 상환의무가 존재하므로 노후재원 소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12) 가입자가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하여 주택구입비로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마다 한 번씩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요양의 정의 부재 및 한도 미설정으로 사소한 질환을 목적으로 전부 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함

-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대출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도인출 금액에 대한 패널티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임

〈표 7〉 담보대출과의 연계성 비교

구분	해외	한국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대출의 조건 및 규정 세분화 - 담보대출 규정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대출에 대한 세부 규정 미흡 - 금리상한선, 담보권 설정 규정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역할 분담 - 담보대출 먼저 활용, 부족 시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인출 편중 적립금 인출 - 노후재원 소실 가능성 우려

자료: 미국 등 각국의 퇴직연금 관련법을 참조하여 작성

-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또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성 규정 등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개선과제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재원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준하는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최근 퇴직연금 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중도인출 제도 개선 검토가 요구됨
- 첫째, 사망, 영구장애 등 가계의 재무적 곤경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미국 등과 같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를 중심으로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중도인출 허용범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면적 제도 개선보다 단계적 제도 개선(퇴직연금 의무화 추세 반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둘째, 주택구입비,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필요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도인출의 경우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적립금 전액인출로 노후재원이 소진될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주택구입 등을 위한 인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립금의 일정비율(예: 30%) 또는 일정금액(예: 3천만 원)으로 한도를 별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요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와 같은 치료기간(6개월) 기준이 아니라 총소득의 일정비율로 요양비용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셋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됨
 - 담보대출의 상환기간,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담보권 설정, 담보대출 금리수준 관련 규정 마련 등으로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담보대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중도인출에 비해 적립금 유출효과가 작은 담보대출이 먼저 활용되도록 검토가 필요함

kiri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IRP)의 원리금보장형 편중 원인과 시사점

최장훈 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매우 낮아 노후보장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호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본고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호되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호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과 수익률의 변동성을 비교함
 -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고, 수익률의 위험(변동성)이 큰 상품은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위험수준을 같도록 조정한 후, 각각에 대해 무위험 수익률(CD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수익률(Sharpe Ratio)을 비교함
-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선호도가 높은 원인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 더 높지만, 수익률의 리스크인 편차가 커서 체감수익률은 오히려 낮기 때문임
 -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Sharpe Ratio)을 비교해 보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DC형과 개인형 IRP의 경우 각각 3배와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으므로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적극적인 투자를 하되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최저보증이율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등급제를 시행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음
 - 빠른 고령화 속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¹⁾
 - 국민연금의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²⁾은 2017년 45%에서 2028년 40%로 인하될 예정임
 - 하지만 2017년 기준, 실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³⁾
 - 이는 2016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인 52.9%보다 낮은 수준임⁴⁾
 - 퇴직연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준공적연금의 역할을 하므로 안정적인 연금급여의 확보가 노후대비에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 노후보장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2016년 1.58%, 2017년 1.88%으로 2017년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1.9%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호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적립액 대비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적립액 비중은 80~9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DC형과 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수익률 현황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선호도가 높은 원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택권은 근로자와 관계없으므로, DB형 퇴직연금을 제외한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에 대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함⁵⁾

1) 조선비즈(2018. 3. 30),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5월 이후 공개...기금 고갈시기 빨라진다”

2)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자의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을 의미함

3) 보건복지부(2017. 11. 6), 「201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황」

4) OECD (2018),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

2.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IRP) 적립금운용 현황 및 특징 : 원리금보장형 vs 실적배당형



■ 국내 퇴직연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 유형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80% 이상)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 DC형과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5년 36조 원, 2016년 46조 원, 그리고 2017년 56조 원으로 해마다 10조 원씩 늘어나고 있음(〈표 1〉 참조)
- DC형과 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총 적립금 중에서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각각 81.2%, 82.7%, 81.5% 수준임
- 2016년 기준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예·적금(47.7% 비중), 금리확정·연동형 보험상품(42.9%), 원리금보장형ELB⁶⁾(7.9%) 순으로 운용되고 있음⁷⁾
 - 실적배당형 상품은 채권형·채권혼합형(84.7%)에 대부분 투자되며, 주식형은 8.1% 수준임

〈표 1〉 DC형과 개인형 IRP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

(단위: 조 원, %)

구분		DC형	개인형 IRP	전체
2017. 12	전체	41(100.0)	15(100.0)	56(100.0)
	원리금보장	34(82.7)	12(78.3)	46(81.5)
	실적배당	7(17.3)	3(21.7)	10(18.5)
2016. 12	전체	34(100.0)	12(100.0)	46(100.0)
	원리금보장	28(82.9)	10(82.2)	38(82.7)
	실적배당	6(7.1)	2(17.8)	8(17.3)
2015. 12	전체	27(100.0)	10(100.0)	36(100.0)
	원리금보장	21(80.2)	8(83.6)	30(81.2)
	실적배당	5(19.8)	2(16.4)	6(8.8)

주: 괄호 안은 적립금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 이에 비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퇴직연금에는 예·적금 및 채권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반면, 주식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⁸⁾

5) DB형의 전체 적립금 대비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DC형과 개인형 IRP의 경우보다 더 높음

6) 원리금보장형 ELS상품

7) 이상우(2017),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 국내동향 제10호』

- 세 국가 모두 퇴직연금 적립액 중 40%이상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투자 비중이 채권투자 비중보다 높음
- 영국과 호주에서는 해외 주식투자 비중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보다 더 높음
- 세 국가 모두 퇴직연금 적립액 중 예·적금의 비율은 매우 낮음

〈표 2〉 미국, 영국, 호주의 퇴직연금 자산 포트폴리오(2016년 기준)

(단위: %)

국 가	예·적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채권	부동산	기타	합계
미국	2	28	14	39	1	2	14	100
영국	2	16	29	31	5	8	9	100
호주	10	21	24	19	7	9	10	100

자료: UBS(2017)

■ 국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2015년 2%대에서 2017년 1%대로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는 연도별로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2015년 2.26%, 2016년 1.79%, 그리고 2017년 1.52%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실적배당형의 경우 2015년에는 원리금보장형보다 약간 낮았고, 2016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오름
- 이로 인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6%, 2016년 1.35%, 그리고 2017년 2.48%로 U자형 추세를 보임

8) UBS(2017), "A long-term perspective"

〈표 3〉 DC형과 개인형 IRP형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

(단위: %)

구분		DC형	개인형 IRP	전체
2017. 1 ~ 2017. 12	전체	2.58	2.21	2.48
	원리금보장	1.64	1.19	1.52
2016. 1 ~ 2016. 12	실적배당	7.10	6.64	6.95
	전체	1.44	1.08	1.35
2015. 1 ~ 2015. 12	원리금보장	1.91	1.45	1.79
	실적배당	-0.52	-0.56	-0.53
2015. 1 ~ 2015. 12	전체	2.40	1.50	2.16
	원리금보장	2.41	1.86	2.26
2015. 1 ~ 2015. 12	실적배당	2.35	1.25	2.09

주: 전체 수익률은 DB수익률을 제외한 DC형과 개인형 IRP의 수익률만 고려하여 산출 된 것임
 자료: 금융감독원

■ 미국, 영국,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5년 평균 수익률은 3.2%로 미국의 5.6%, 영국의 7.1%, 그리고 호주의 8.4%보다 낮음

〈표 4〉 미국, 영국,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

(단위: %)

연도	미국	영국	호주	한국
2012	7.0	11.8	10.7	4.8
2013	12.9	7.5	12.4	3.8
2014	4.4	5.7	7.4	3.2
2015	-0.4	3.2	4.7	2.6
2016	4.1	-	6.6	1.4
평균	5.6	7.1	8.4	3.2

주: 2016년 미국 수익률은 개인연금이 포함된 수익률임
 자료: 호주, "SuperGuide"; 한국: 미국; 영국(2016), "Pension Markets in Focus"; 한국(2016), "금융감독원"; 미국(2016), "Pension Markets in Focus"(2017)

■ 2017년 기준으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실적배당형의 수익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에 대한 선호현상은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016년에는 더 높았으나, 2017년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높아짐

- 하지만, 동기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2.7%에서 81.5%로 크게 변하지 않음

3.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IRP) 선호 원인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이 선호되는 원인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손실회피성향이나 낮은 투자지식 등과 같은 정성적인 측면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정량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함
-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호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과 수익률의 변동성을 비교함
 -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려 하고 수익률의 위험(변동성)이 큰 상품은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두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상품의 위험수준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수익률을 비교해야 함
 -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위험수준을 같도록 조정한 후, 각각에 대해 무위험 수익률(CD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수익률(Sharpe Ratio⁹⁾을 비교함
 - $Sharpe\ Ratio = \frac{E(\text{수익률} - \text{무위험 수익률})}{\text{수익률 표준편차}}$ 으로 정의되므로 Sharpe Ratio가 높은 상품이 투자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 위의 식에서 Sharpe Ratio가 높(낮)기 위해서는 수익률은 높(낮)거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낮(높)아야 함
-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 시장 수익률이 더 높지만 수익률의 기복(편차)이 심해 수익률이 보다 안정적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보임¹⁰⁾(〈표 5〉 참조)
 - 실적배당형 상품의 평균 연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 DC형과 개인형 IRP에서 각각 0.82%p, 0.9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9) Sharpe Ratio는 투자 효율 평가지표로 투자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투자의 위험을 조정해 반영하는 방식이며, 초과수익률을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함. William F. Sharpe의 이름을 따 명명됨(위키백과)

10) 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2010년 3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기별 수익률임

- 연 수익률의 표준편차도 DC형과 개인형 IRP의 경우 각각 7.42%p, 6.58%p만큼 실적배당형 상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위험을 조정한 초과 수익률(Sharpe Ratio)을 비교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DC형의 경우 3배, 개인형 IRP의 경우 2배 더 높게 나타남
 - Sharpe Ratio 계산을 위해 적용한 무위험 수익률은 2010~2017년 시중은행 대표수익률의 평균인 2.40%임

〈표 5〉 퇴직연금 연 수익률 및 표준편차(2010년 3분기 ~ 2018년 1분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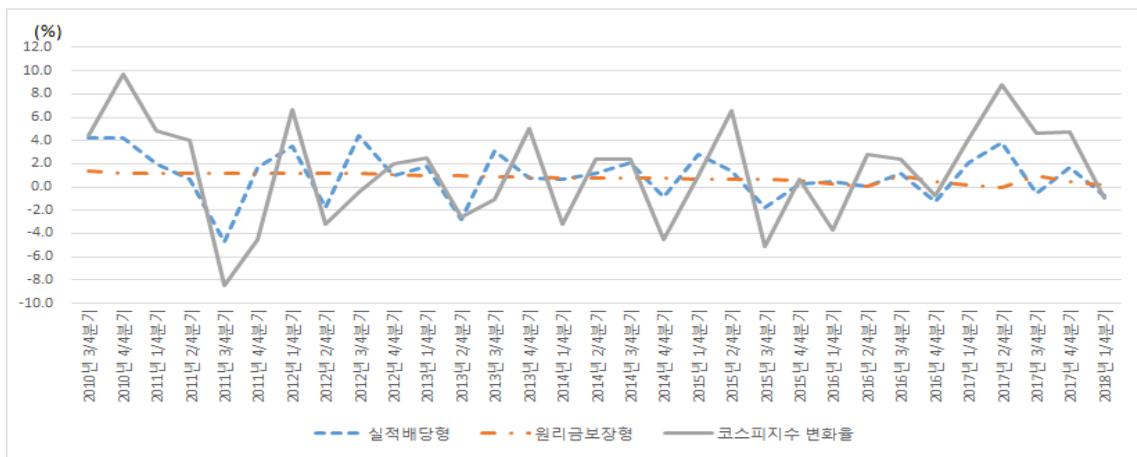
(단위: %)

상품	구분	수익률(①)	표준편차(②)	Sharpe Ratio[=(①-2.40)/②]
DC	원리금보장형	3.11	1.22	0.6
	실적배당형	3.93	8.64	0.2
개인형 IRP	원리금보장형	3.07	1.61	0.4
	실적배당형	3.99	8.19	0.2

주: Sharpe ratio 계산시 CD수익률 - 2010년 ~ 2017년 시중은행 대표수익률 평균인 2.40을 기준수익률 지표로 사용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로부터 직접 계산함

-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주가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익률과 코스피 지수 변화율과의 상관성을 계산한 결과, 상관계수가 0.66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퇴직연금 수익률과 코스피 지수 변화를 추이



주: 데이터 적용 기간 - 2010년 3분기 ~ 2018년 1분기
 자료: 금융감독원

4. 시사점



- 정량적인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원인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¹¹⁾
 -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더 높지만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더 높게 나타남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편중 현상은 수익률을 더욱 낮출 수 있으므로 수익률을 높이고 이에 따른 위험(변동성) 증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되 주식 위주의 투자보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며 최저보증이율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국내투자뿐만 아니라 해외투자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전체 주식 중 해외 주식 비중이 각각 33%, 64%, 53%에 달함
 -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이 적용될 경우 수익률의 큰 하락을 막을 수 있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 경쟁을 유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독립된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자 등급제를 시행하면 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 KIRI

11)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 기간이 짧으므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후 재계산해 볼 필요가 있음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약 94%가 단일 금융회사에 의해 모든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이에 본고는 전문영역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경쟁력을 제고하는 해외 금융회사 사례(서비스 전문화 사례)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함
- 해외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가입자 니즈변화로 퇴직연금서비스 모두를 단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체계에서 전문화된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별도 위탁하는 개별서비스 체계로 전환됨
 - 개별서비스 체계 환경에 대응하고자 해외 금융회사들은 전문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로 수익경쟁력 제고에 주력함
- 해외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서비스 전문화에 주력하고 있는 영역은 연금제도설계 영역, 운용상품 제공 영역, 투자상담 및 자문 영역, 가입자교육 영역 등임
 -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운용상품을 개발하고 특화된 투자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조직 운영, 교육전담회사 설립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
- 해외 금융회사의 서비스 전문화 사례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첫째, 금융회사는 자사의 핵심역량에 부합한 전문서비스 영역이 무엇인지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요구됨
 - 둘째, 운용상품, 투자상담 및 자문, 가입자교육 등으로 전문 서비스영역을 설정하고 차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가입자 니즈 차이를 고려하여 기업규모별(중소기업, 대기업)·제도 유형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전략 모색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94%가 단일 금융회사에 의해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 모두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됨¹⁾
 - 기업규모 구분 없이 단일 금융회사가 전 퇴직연금 업무(운용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를 일괄 전담하는 구조임
 - 금융회사 간 서비스 경쟁 부재 등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추세임
 - 그러나 퇴직연금 규제 완화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개별서비스 전문화로 금융회사의 수익경쟁력 제고가 요구됨
- 해외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개별서비스 체계 전환에 대응하고자, 전문 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서비스 전문화로 수익경쟁력 제고에 주력함
 - 즉 다수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상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로열티(Loyalty)를 높여 나가되, 전문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전문 영역의 수익경쟁력을 제고함
 - 따라서 해외 금융회사들이 어떠한 퇴직연금서비스 영역을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하고 서비스 전문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는 해외의 개별 퇴직연금서비스 체계 전환 배경 등을 살펴 본 후, 해외 금융회사의 대표적 서비스 전문화(전문 영역의 서비스 차별화)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1)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퇴직연금 도입기업(300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13년), 94%의 기업이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동일하다고 응답함

2. 해외의 개별 퇴직연금서비스 체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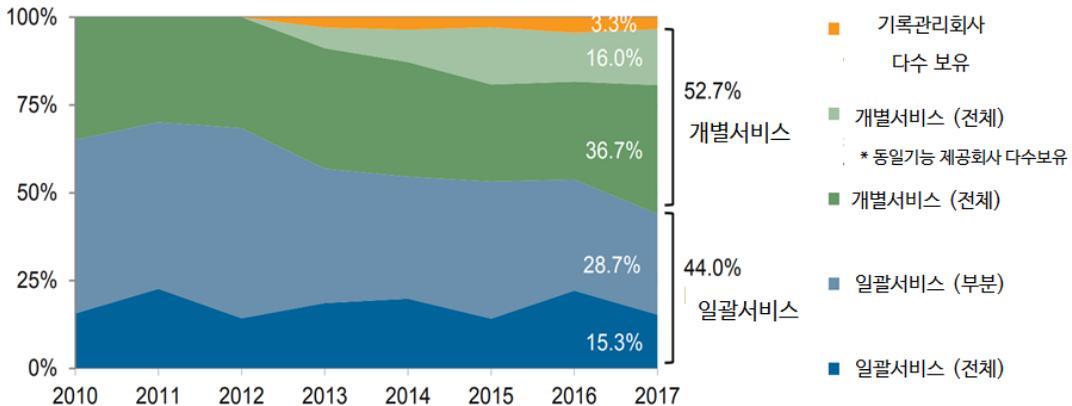


■ 미국 등은 운용 및 자산관련 서비스 모두를 단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일괄서비스 체계에서 중견 기업 중심으로 전문화된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별도 위탁하는 개별서비스 체계로 전환됨²⁾

● 미국 DC형 퇴직연금 대상으로 한 Callan(2018)의 조사에 따르면, 개별서비스 체계 도입 기업은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52.7%가 개별서비스 체계를 적용함

〈그림 1〉 개별 퇴직연금서비스 체계 비중(예: 미국)

(단위: %)



자료: Callan(2018), "2018 Defined Contribution Trends"

- 복수의 금융기관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서비스(UnBundled Services) 체계로의 전환이 중견기업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남
 - 퇴직연금서비스는 운용 관련 업무서비스, 자산 관련 업무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짐³⁾
 -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모든 기업이 일괄서비스(Bundled Services)체계로 운영됨
- 중견기업 등이 개별서비스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서비스 체계, 일괄서비스 체계 등으로 서비스 체계가 이원화됨(〈표 1〉 참조)⁴⁾

2) 여기에서의 개별서비스 체계는 언번들형 서비스(UnBundled Services)체계를 의미함

3) 운용관리업무 서비스는 적립금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연금제도설계 및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운용방법전달, 가입자 교육 등이며, 자산관련서비스는 퇴직연금계좌설정, 적립금보관, 운용지시이행, 퇴직급여지급 등임(근퇴법 제 28조①, 근퇴법 제29조①)

4)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

〈표 1〉 일괄서비스 체계와 개별서비스 체계 비교

구분	일괄서비스 제공체계(번들형 체계)	개별서비스 제공체계(언번들형 체계)
정의	• 1개 금융기관이 모든 서비스 일괄 공급	• 복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를 조합하여 완성된 서비스 제공
가입자	소기업 등	중견기업 등
장점	• 간편성과 편리성 존재 • 서비스 비용의 저렴화	• 서비스의 차별화 및 전문화 • 상호 견제 및 감시기능 작동
단점	• 금융기관 간 연계 업무 발생 시 부담 • 서비스의 확일화 가능성	• 운용비용의 부담 가능성 • 가입자 요구 신속 반영의 어려움

자료: 해외의 퇴직연금서비스 체계(2017) 등을 기초 작성

■ 개별서비스 체계로의 전환배경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등으로 가입자가 전문화된 퇴직연금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데 기인함(〈표 2〉 참조)

-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는 맞춤형 투자상담서비스, 맞춤형 투자교육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요구 증대로 나타남
- 저금리 환경 속에서 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적용 등은 퇴직연금 자산, 부채를 반영한 연금재정 검증 서비스 필요성을 증대시킴

〈표 2〉 개별서비스 체계로의 전환배경

구분	내용
환경 요인	• 퇴직연금 투자규제 완화 등으로 맞춤형 퇴직연금서비스 제공 중요 - 저금리환경 및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등
제도 요인	• 기금형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사업자선정 경쟁 격화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서비스의 차별화 중요
가입자 요인	• 2010년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기준의 변화 - 서비스수준 > 자산운용성과(수익률 등) > 재무건전성(3위)순으로 우선시

자료: Plansponsor, "2016 DC Survey" 등을 기초 작성

■ 기금형 제도 시행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전문영역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하게 되었고 가입자 인식변화로 서비스능력 여부가 사업자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된 점 등임

- 기금형 제도로 운영 시 수탁법인(기금운용위원회)이 자체 제공하기 어려운 특화서비스(전문화된 서비스) 위주로 별도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함

고 있음. 즉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운용관리서비스와 자산관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번들형서비스 구조임. 따라서 금융기관 간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가 제한적임

- 2010년 이후부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수수료 수준보다 서비스 수준을 가장 중요한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인식이 변화함⁵⁾
- 이러한 개별서비스 체계 환경에 대응하고자 해외 금융회사들은 전문 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로 유료고객 기반(퇴직연금수익원)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함
- 다수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상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로열티를 높여 나가되, 전문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전문영역의 수익경쟁력제고에 주력함

3. 해외의 개별 퇴직연금서비스 전문화 사례

- 여기에서는 전문 영역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언변들형 형태(개별 퇴직연금서비스)의 비즈니스모델을 추구하는 해외 금융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⁶⁾
- 해외 금융회사의 대표적 서비스 전문화 사례(전문영역의 서비스 차별화)로는 제도설계 및 재정평가 서비스, 운용상품제공서비스, 투자상담(자문)서비스, 가입자교육서비스 등임 - 투자상담서비스 영역 등을 핵심 퇴직연금 수익원으로 인식하고 서비스 전문화에 주력함

〈표 3〉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 전문화(요약)

서비스 영역	사례 내용
제도설계 및 재정평가	• 재정방식 선정에 의한 제도설계, 연금부채에 대비한 자산의 적정성 검증 등
운용상품 제공 영역	• 상품제휴 등을 통해 맞춤형 운용상품 설계
투자상담 및 자문 영역	• 특화된 투자상담 서비스 및 자문서비스 제공
가입자교육 영역	• 교육전문회사, 전문교육조직 운영, 가입자별 맞춤교육 제공

자료: 해외의 전문화 사례 자료 등을 기초 작성

5) 미국연금전문지 플랜스폰서에 의하면 DC 운영기업과 근로자는 연금사업자 선정의 중요기준으로 서비스(1위), 자산운용성과(2위), 재무건전성(3위) 등을 들고 있음(Plansponsor, "2016 DC Survey" 참조)
 6) Freemium(Free + Premium)사업모델을 기반으로 다수 일반사용자에게 무상퇴직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해 로열티를 높이며, 전문서비스영역에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수익기반(유료고객)을 늘리는 해외 사례임

- (제도설계 및 재정평가) 해외 금융회사는 기업 비용부담 능력, 근로자 속성을 고려한 DB형 퇴직 연금설계, 국제회계기준적용 등에 따른 연금 부채변동성을 감안한 재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함
 -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려는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연금재정 측면에서 재정방식(예: 가입 연령방식 등)을 자문해주고 기업 특성에 부합한 제도를 설계함
 - 퇴직연금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수입보험료와 연금지급과의 균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지 재정방식 선정(제도설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⁸⁾

〈표 4〉 연금제도 설계 및 재정평가 서비스

유형	내용
연금제도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형을 도입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제도설계 - 기업부담능력을 감안한 재정방식(가입연령방식, 도달연령방식 등)선정 등
연금재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적용, 저금리 환경 등을 감안한 연금재정평가 - 연금부채 변동을 고려한 연금자산의 적정성 평가(적립금 과부족 등)

자료: 해외 사례 등을 기초 작성

- 퇴직연금 국제 회계기준 설정, 저금리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등을 반영하여 연금부채 대비 연금자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기업 재무리스크 관점에서 계속기준 또는 비계속기준에서의 적립금 과부족 여부 등을 평가(연금부채 대비 연금자산 적정성)함
 - 특히 Aon Hewitt, Milliman 등은 근로자의 급여상승률, 퇴직률, 할인율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재정 검증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함
- (운용상품 제공) 해외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과 연계한 운용상품 개발과 필요 시 상품제휴 등을 통해 운용상품 제공 서비스의 차별화를 유도함
 - MetLife는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이율보증 계약 상품, 일본 손보재팬은 적립형 상해보험 등을 퇴직연금과 연계한 운용상품으로 제공함
 - Manulife 등은 전통적인 GIC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안정형 가치펀드 등과 같은 대체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함
 - Vanguard, Fidelity 등은 적립기간 동안 수익보증 옵션을 부가하는 형태 또는 퇴직 후 체계적 연금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는 상품을 운용함

7) 재정방식(Funding method)은 연금수리적 관점에서 기업의 연금설계를 하는 재정모델임

8) 가입연령방식, 도달연령방식, 특정연령방식, 개인평준방식, 일시납적증방식, 개방형방식 등 다양한 재정방식 등의 재정방식 중에서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재정방식을 설계하여주는 것을 의미함

- 미국 401(k) 가입자들이 은퇴시점에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개발함
- Aviva, Canada Life, Standard Life, Prudential 등은 소득인출형(Income Drawdown) 형태로 상품을 제공함
- 미츠이 스미토모해상, 미츠이생명 등은 업무제휴를 통해 원리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상품을 공동 개발·제공하여 운용상품 제공 서비스를 차별화함

■ (투자상담 및 자문) 퇴직연금 투자 규제 완화⁹⁾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투자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핵심 사업영역으로 인식하여 서비스를 강화함

- Fidelity, Merrill Lynch 등은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한 가입자의 투자성향 파악, 포트폴리오 추천, 은퇴설계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표 5〉 퇴직연금 투자상담 및 자문서비스

유형	내용
투자상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를 통한 가입자의 투자성향 파악 후 포트폴리오 추천 및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 - Fidelity Portfolio Advisory Service, AXA Financial Newsletter 등
투자자문 및 일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된 투자 자문·일임서비스(투자성향 파악 → 포트폴리오 추천 → 리밸런싱) - Vanguard, Charles Schwab, Merrill Lynch, Wells Fargo 등

자료: Finextra(2016) 등을 기초 작성

-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성향을 파악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¹⁰⁾서비스를 제공함¹¹⁾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인 Betterment 사는 2016년부터 401(k)제도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기초한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함¹²⁾
 - Vanguard, Charles Schwab 등의 자산운용사는 기존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험성향 분석,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제안, 자산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9) 미국은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제정을 계기로 독립자문업자(IFA)에게만 허용되어 온 401(k)제도에 대한 투자자문을 컴퓨터 모델에 근거한 투자자문 등으로 한정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허용함

10)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임. 기존의 투자상담 및 자문서비스가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대면서비스 중심인 반면, 로보어드바이저는 일반대중으로 그 대상을 확장하고 비대면채널을 통한 온라인서비스를 특징으로 함

11) Fidelity의 Fidelity Go(2016. 7), Merrill Lynch의 Merrill Edge Guided Investing(2017. 2), Wells Fargo의 Intuitive Investor(2017. 11), Morgan Stanley의 Access Investing(2017.12)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함

12) Finextra(2016. 1. 27), "Robo-advisor Betterment launches business platform"

- (가입자교육) 해외 금융회사는 가입자별 맞춤형 교육 개발, 전문회사를 통한 가입자교육, 전문 가입자교육 조직의 운영 등을 통해 가입자교육의 차별화가 이루어짐
- Fidelity는 교육 전 설문을 통해 고객성향을 먼저 파악한 후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가입자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교육프로그램은 가입자별 맞춤 온라인교육으로 월별 주제(과세이연, 자산배분, 은퇴설계 등)를 적절히 배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음

〈표 6〉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서비스

유형	내용
가입자별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전 설문을 통해 고객성향 파악 후 교육방법 결정 -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강화
전문회사를 통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인 교육보다 공동설립한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 집합교육, 세미나, 통신교육 등을 통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 전담부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교육 전문조직을 개설하고 고객 눈높이 교육 제공 - 가입업종 및 규모, 근로자의 직군 및 가입연령 등 고려

자료: 일본 年金情報(2014) 등을 기초 작성

- 도쿄해상니치도화재, 메이지생명 등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DC)를 설립하여 퇴직연금 도입기업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근로자 대상으로 분야별, 연령별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함
- 일본 손보재팬 DC는 가입자교육 전문부서(HARP: Happy Aging and Retirement Planner)를 설치·운영해 가입자교육을 강화함
 - HARP 교육프로그램은 가입업종 및 규모, 근로자 직군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함

4. 시사점 및 제언



-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한 금융회사가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를 모두 취급 가능해 금융회사 간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 유인이 미흡함¹³⁾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가입자교육 서비스 업무 등을 퇴직연금의 핵심업무가 아닌 부수업무로 인식함
- 퇴직연금 규제 완화 추세, 기금형제도 도입 논의 등을 감안할 때, 전문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을 선정해 서비스 차별화로 수익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해외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퇴직연금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가입자 인식변화 등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서비스 체계로는 사업위축이 우려됨
 - 모든 금융회사가 동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에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가입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지 못할 뿐더러 사업자의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자사의 사업역량에 부합한 핵심 전문서비스 영역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먼저 기업규모별(중소기업, 대기업 등) 근로자의 속성을 반영한 개별서비스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DB형 운용기업에 대해서는 연금재정 평가 서비스 영역 등에, DC형 운용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문 및 교육서비스 영역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선진국처럼 연금제도설계 영역, 운용상품제공 영역, 가입자교육 영역, 투자상담 및 자문 서비스 영역 등으로 서비스 전문화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상품 제휴 등을 통해 맞춤형 운용상품 개발, 특화된 투자상담 서비스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됨
 - 또한 교육전문회사 운영을 통한 교육서비스 전문화, 별도 전문교육전담부서 운용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됨
 - 더불어 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등을 고려해 연금부채에 대비한 자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관심이 필요함 **키리**

13)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적격기준(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부합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대두됨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90%는 투자자문 및 일임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해 가입 이후 운용자산(자산포트폴리오)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상품 선택폭이 미흡함

 - 이에 본고는 4차 산업혁명(로보어드바이저 활용)과 연계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및 과제를 미국 중심으로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함
- 미국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접목하여 투자자문 및 자산배분을 자동화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음

 - Bettement, Vanguard 社 등은 온라인 사전질문을 통해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해주는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금융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에 접목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활용범위 및 수준(완전 자동화)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차이가 존재함
- 미국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간 이해상충 문제, 불안전판매 문제, 알고리즘 오류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은 보다 명확히 하거나 불안전판매 방지를 위한 투자교육, 알고리즘 점검 강화,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함
-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사례 및 과제를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함

 - 첫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전에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둘째,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교육 및 설명의무 강화가 보다 요구됨
 - 셋째, 로보어드바이저의 위법 행위 가능성을 감안하여, 수탁자 범위를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까지 확대하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 부여가 필요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90%는 제도가입 이후 운용자산(포트폴리오)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상품 선택폭이 매우 미흡함
 - 보험연구원(2018)¹⁾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동일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번들형 서비스(Bundled Services)²⁾ 체계하에서 투자교육을 포함한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의 미흡에서 비롯함
 - 최근의 개인형 및 DC형 퇴직연금중심 환경을 고려할 때,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반영한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운용자산의 수익률 제고가 요구됨

-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퇴직연금에 접목해 투자자문 및 자산배분을 자동화하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서비스³⁾ 제공에 주력함
 -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이 확대되어 전통적인 투자자문업의 대안으로 성장함
 - Betterment, Wealthfront 社 등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 목적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도 최근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 및 일임서비스 제공이 일부 가능하지만⁴⁾ 미국 등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낮음

1) 정원석·김세중(2018), 「미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와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 번들형서비스(Bundled Services)는 운용 및 자산관련서비스 모두를 단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일괄서비스를 의미함

3)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에 기반하여 온라인상으로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밸런싱하며 운용해주는 자산관리서비스임. SEC(2015)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란 용어를 자동화된 투자수단(Automated investment tool)으로, ESMA(2015)에서는 금융자문의 자동화(Automated tool in financial advice)로 사용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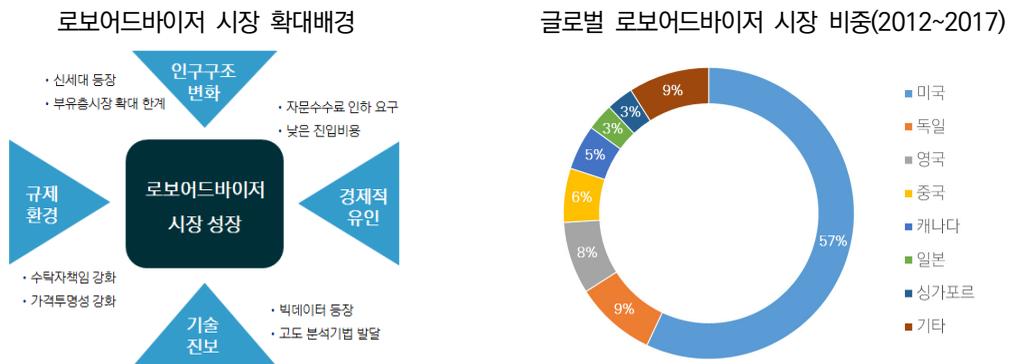
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 중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함(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6. 27))

- 이에 본고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확대배경을 살펴본 후, 퇴직연금 자산관리(투자자문·투자일임)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사례 및 제반과제 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2.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확대배경

- 미국을 중심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확대되어 온 배경으로는 경제환경 변화(저금리 고착화), 인구학적 변화(신세대 등장), 정부규제 변화, IT기술 발전 등을 들 수 있음
-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전 세계 거래대금 비중은 미국(57%), 독일(9%), 영국(8%) 등의 순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유럽보다 미국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임(<그림 1> 참조)

<그림 1>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확대배경 및 현황



자료: NOVANTAS(2018), "Man vs. Machine"

자료: CBINSIGHT(2017), "A Wealth Tech World"

- (경제환경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투자손실 경험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지는 자산운용방식에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한데 기인함⁵⁾
-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장 붕괴현상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과거와 달리 저위험 포트폴리오(Low risk portfolios)를 선호하는 시점에 도입됨
 -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변동이 존재하는 경우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재조정하는

5) Phoon and Koh(2018), "Robo-Advisors and Wealth Management", The Journal of Alternative Investments

수동적 자동자산배분(Passive, automated asset allocation)⁶⁾ 형태를 나타냄

- 또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보다 민감해져,⁷⁾ 저렴한 비용을 수반하는 효율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
 - 전통형 자산운용방식에 대한 연간 수수료(Fee)는 1~2% 수준인 반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율은 0.25~0.5%에 불과함⁸⁾

■ (신세대 등장)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세대가 베이버부머 세대에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X세대 및 밀레니얼(Millennial)⁹⁾세대로 전환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진 점

- 온라인에 익숙한 X세대 및 밀레니얼 세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금융회사를 불신하고¹⁰⁾ 상대적으로 컴퓨터와 기술력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임
- 즉,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대면접촉이 필요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전통적 자문서비스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됨
 - 영국의 경우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활용하는 연령대는 대부분 30~40대임¹¹⁾

■ (정부규제 변화) 컴퓨터 모델을 이용한 투자자문수단을 수탁자로 인식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투명성 강화정책이 이루어진 점

-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2011년 컴퓨터 모형을 이용한 투자자문도 퇴직연금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다만,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컴퓨터모델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독립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인증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금융상품 보수지급방식이 판매수수료(Commission)에서 자문보수(Fee)로 전환되고 자산운용에 대한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이 변화됨

6) 소극적 또는 수동적 투자(passive investment management)는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만 보유함으로써 시장평균 수익을 모색하는 반면, 능동적 투자(Active investment)는 시장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초과수익률) 달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함

7) Rohner and Matthias(2017), "Robo-Advisors vs. Traditional Investment Advisors - an Unequal Game"

8) Ernst Young(2015), "Winds of Change: Wealth Management Remained"

9) 1981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출생한 세대로 성장과정에서 IT와 온라인을 통해 지식의 대부분을 습득하고, 대부분의 생활을 IT기술을 통해 영위하는 특징을 보임. X세대는 1966년에서 1980년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함

10) 안수현(2016),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 로보어드바이저)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상사판례연구; 和田, 敬二郎, 岡田功太(2015), 米国で擴大するの「ロボ・アドバイザー」による個人投資者向け資産運用, 野村資本市場クオタリ-

11) MyPrivateBanking(2016), "Investors' Attitudes Towards Robo-Advisors"

■ (IT기술 발전) 모바일기기의 보편화, 빅데이터,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 IT 기술을 활용한 투자용 전략이 도입됨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의 진입 확대로 이어짐

-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상담 및 자산운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에 한계를 보인 금융회사들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 또한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I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해졌기 때문임

3.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사례 및 과제: 미국 중심

■ 여기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분야에서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사례를 퇴직연금 자산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대두되는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은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인 투자자문 및 일임서비스 제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운용에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 수탁자 책임 문제, 시스템리스크 문제 등이 핵심 과제로 대두됨

가. 활용사례

■ 미국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초창기에는 주로 자산관리서비스(Wealth Management) 시장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퇴직연금 운용시장으로 그 영역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¹²⁾

- 초기에는 전문 로보어드바이저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최근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거나 IT업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진출함
 -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초기 Betterment, Personal Capital, Wealthfront 등이 주도했으나 이후 Fidelity, Schwab, Vanguard 등이 자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시장에 진출함

12) Investment News(Mar 17, 2018), "401(k) robo-revolution is underway"

■ 퇴직연금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 및 일임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짐(그림2)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투자성향 파악(Customer Profiling),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포트폴리오 선택(Portfolio Selection), 거래실행(Trade Execution), 포트폴리오 재분배(Rebalancing), 과세혜택을 위한 조정(Rax-loss Harvesting)¹³⁾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¹⁴⁾
 - 개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질문 내용은 각社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연령, 부양가족 유무, 본인 및 가구소득, 기대수익률, 투자목적,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등의 내용을 포함함

〈그림 2〉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과정



자료: FINRA(2016), "Report on Digital Investment Advice"

■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업체인 Betterment社は 2016년부터 401(k)제도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기초한 투자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2016년부터 401(k)제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자산규모에 따라 10~60 bp 보수 수준으로 ETF 기반 포트폴리오를 통해 퇴직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¹⁵⁾

13) 이익이 발생한 자산에 부과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미실현 손익을 매매하여 이익을 상쇄시켜 전체 자본이득세를 절감하는 방식(박선후(2016))

14) 이성복(2016), 『로보어드바이저가 미국 자산관리시장에 미친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이근영(2016), 「국내외 로보어드바이저 동향 및 현황 분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제6호, 2016-04)

15) Wealth Management(Sep 11, 2015), "Betterment To Provide 401(k) Plans"; FORBES(Sep 11, 2015), "Robo-Retirement - Betterment Launches Managed 401(k)s, Employer Services"

〈표 1〉 미국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사례

(단위: 달러, %)

회사명	최소 투자금액	수수료	서비스 제공 유무		과세혜택 조정 유무	리밸런싱 제공 유무	자문방식 (자동화수준)
			IRA	401(k)			
Wealthfront	500달러	0.25%	○	×	○	○	자동화
Betterment	없음	0.25 ~ 0.40%	○	○	○	○	인력지원
Charles SCHWAB	5,000달러	없음	○	×	○	○	자동화
WiseBanyan	1달러	없음	○	×	○	○	자동화
M1 Finance	없음	없음	○	×	×	○	자동화
SoFi Wealth	100달러	0.25% (1만 달러 미만 무료)	○	×	×	○	인력지원
Vanguard	5만 달러	0.30%	○	○	×	○	인력지원
Wealthsimple	없음	0~10만 달러: 0.50%, 10만 달러 이상: 0.40%	○	○	○	○	인력지원
MEGI (Merrill Edge)	5,000달러	0.45%	○	×	×	○	자동화
OpenInvest	3,000달러	0.50%	○	×	○	○	자동화
E*TRADE	5,000달러	0.30%	○	×	×	○	인력지원
Ellevest	없음	0.25~0.50%	○	○	×	○	인력지원
Fidelity Go	10달러	0.35~0.40%	○	×	×	○	자동화
Swell Investing	50달러	0.75%	○	×	×	○	자동화
Rebalance IRA	10만 달러	0.50% (초기비용 250달러)	○	○	×	○	인력지원

자료: <https://investorjunkie.com/robo-advisors/compare/>

■ Fidelity, Vanguard, Schwab 등의 금융기관은 자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을 통해 각 회사가 보유한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향 분석,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제안, 자산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표1〉 참조)

● Goldman Sachs는 퇴직연금시장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2016년 3월 퇴직연금전문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인 Honest Dollar를 인수해 퇴직연금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¹⁶⁾

16) Financial Times(MARCH 15, 2016), "Goldman buys pensions robo-adviser"; The New York Times(March

- Honest Dollar社は 2015년에 설립된 회사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월 8달러의 수수료로 퇴직연금 운용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한편, UBS America, Wells Fargo 등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업체인 SigFig와 전략적 제휴 체결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어남
 - 예를 들어 Ellevest社は 타 금융회사와 달리 높은 평균수명, 낮은 평균임금, 소비 저축 행태 등 여성고객에 특화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함¹⁷⁾

나. 제반 과제

■ 로보어드바이저는 낮은 수수료, 높은 접근성 등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문제, 데이터 보안, 투자손실 시 책임 문제 등과 같은 과제(문제)가 대두됨

- 이에 미국의 퇴직연금 규제당국은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이해상충 및 불완전판매) 로보어드바이저는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으로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 목적과 관계 없이 임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안할 수 있어, 시장경쟁이 심화될 경우 불완전 판매 위험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대두됨

-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이 고객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이익을 우선해 유리한 수수료 또는 보수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위주로 추천이 가능함
- WSJ(2015)¹⁸⁾ 조사결과, 동일 유형의 사람에 대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추천한 자산배분 결과를 보면 자산별 편차가 매우 커 근로자에게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예를 들어, 중위험 고객에 대해 Wealthfront社は 현금 및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로 5%, Schwab社は 동 자산에 19%의 투자를 제시함

14, 2016), "Goldman Sachs to Buy Honest Dollar, a Small Plan Start-Up"

17) 서영미(2018), 『글로벌 금융투자산업의 Digitalization 동향 및 사례 조사』

18) Wall St. Journal (April 24, 2015), "Putting Robo Advisers to the Test"; THOMSON REUTERS(2015), "THE RISE OF THE ROBOS: A NEW MODEL FOR U.S. WEALTH MANAGEMENT"

- (알고리즘 오류의 책임소재 문제) 시장침체기를 거치며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됨¹⁹⁾
 - 투자자가 사전에 입력한 허용가능 위험범위를 벗어나 투자집행을 하거나, 로보어드바이저의 위법행위로 인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함
 -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 호황기에 출시되어 침체기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대두됨

- (시스템리스크 및 보안 문제)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집중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²⁰⁾ 사이버보안 문제가 대두됨
 - 개별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이 고객들에게 유사한 투자전략을 추천하는 경우 시장 내 특정자산에 투자가 집중되는 군집행동(Herd behavior)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ESMA(2015)²¹⁾는 로보어드바이저는 다수가 쉽게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안(알고리즘 해킹),²²⁾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함

4.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 일부 금융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에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활용 범위 및 수준은 미흡한 상태임
 -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설계해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해, 사람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²³⁾

19) ESMA(2015), "On Automation in Financial Advice, Joint Committee Discussion Paper"
 20) OECD(2017), "ROBO-ADVICE FOR PENSIONS"
 21) ESMA(2015), "On Automation in Financial Advice, Joint Committee Discussion Paper"
 22) BLACKROCK(2016), "Digital Investment Advice: Robo Advisors Come of Age"

-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기금형제도 도입 논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에 접목시킨 미국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일반 금융투자상품의 운용보다 근로자와 수탁자간에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보다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시 가입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검토가 필요함
 - 즉, 일반 금융투자자의 자산관리 관점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관리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파악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함
 - 이는 로보어드바이저는 낮은 수수료, 높은 접근성 등의 이점에도 자칫 잘못 운용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노후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주 활용대상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예: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투자교육과 설명의무가 요구됨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대상은 미국처럼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자 중심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투자지식 및 정보제공을 위한 투자교육과 운용설명이 요구됨
 -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근로자에 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자는 개인의 자체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므로 사전에 투자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대책이 필요함
- 더불어 로보어드바이저의 위법행위 발생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이 미치므로 기존의 수탁자 범위를 로보 어드바이저 운용기관으로 확대해 엄격한 책임부여가 필요함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수탁자 범위를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까지 확대하여 별도의 수탁자 책임 부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로보어드바이저의 위법행위 등으로 투자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임 **키리**

23) 2016년 이후 일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다수 금융회사와 같이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배분결과를 고객에게 단순히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제도 발전 방향



최장훈 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연기금의 소진시기는 2057년으로 3차 재정계산에 비해 3년이 짧아져 연금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재정안정화는 노후소득보장과 조화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민영보험과 같이 수지상등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원리(세대 간 소득재분배 등)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국민연금에서 기금소진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저부담·고급여라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인구 및 경제적 여건 모두 악화되어 기금 소진시기가 더 빨라짐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9.0%, 소득대체율은 40%로 수익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1을 초과하여 구조적으로 수지상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재정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연금 급여감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들을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보험료 인상, 급여감액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을 추진
 - 연금급여 및 급여개시연령에 대한 자동조절장치 및 재정목표 도입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함
 - 적극적 기금운용, 정부의 재정보조와 사적연금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안정 방안을 활용하는 특징을 보임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와 조화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변경(부담 및 급여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에 걸쳐 추진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수급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공적부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중소득층 이상에게는 사적부분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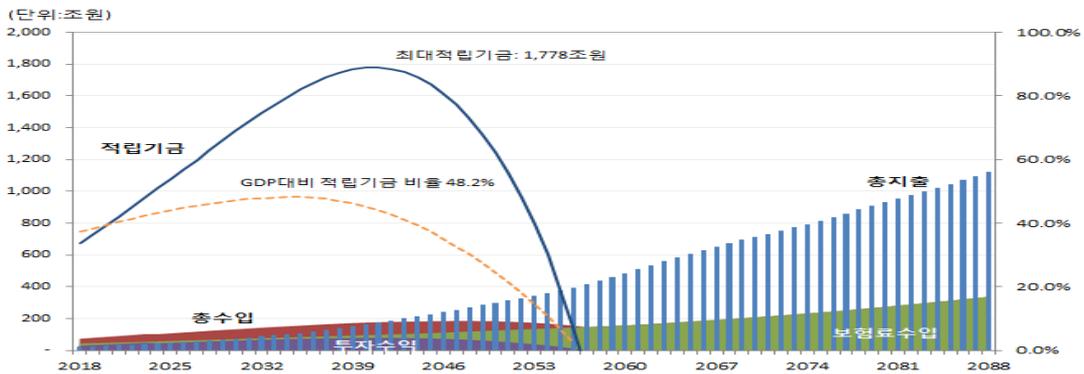
1. 검토배경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당기수지 적자는 2042년에, 소진시기는 2057년으로 나타나 3차 재정계산에 비해 각각 2년, 3년이 짧아져 연금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5년 마다 실시되고 있음
-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측면과 고령화, 저성장 등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인구 및 경제 환경 모두가 재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그림 1〉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2018),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¹⁾이므로 재정안정화는 노후 소득보장과 조화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²⁾

-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민영보험에서와 동일한 의미의 수지상등이 아닌 사회보험원리³⁾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20년사

2) Verbon, Harrie (2012), *The Evolution of Public Pension Schemes*, Springer

3) 사회보험원리는 강제적용, 최저생활보장, 세대 내, 세대 간 재분배 등 사회보장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민영보험의 원리와 차이가 있음

- 특히, 세대 간 재분배 등 제도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부담의 주체와 수준에 대한 형평성이 필요함
- 본고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의 조화를 고려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⁴⁾의 재정안정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조화적인 설계 방향이 요구됨

2.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원인

- 국민연금에서 기금소진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저부담·고급여라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임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9.0%로 OECD 평균인 18.4%의 절반 수준임에 반해 소득 대체율은 39.3%로 OECD 평균인 40.6%와 비슷함(OECD(2017), pension at a glance)
 - 이로 인해 공적연금의 수익비⁵⁾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을 초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민영 보험원리로는 재정안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임
 - 우리나라의 경우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5분위⁶⁾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1, 2분위)의 수익비는 3.0~4.2, 중소득층(3분위)은 2.5~2.6, 그리고 고소득층(4, 5분위)은 1.6~2.1로 분석됨⁷⁾
-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시점이 3차보다 빨라진 원인은 대표적으로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그리고 기금투자수익률 악화 등을 들 수 있음⁸⁾

4) 현재 공적연금은 19세기 말 독일을 시작으로 160여 개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이용하(2013), click 경제 교육, KDI)
 5) 수익비는 총 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 대비 총 노령연금급여의 현재가치의 비율로 표현됨
 6) 소득 순위를 20% 범위로 5개 분위로 구분할 때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로 구분됨
 7) 최기홍·한정립(2017),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성 추정(통계연구)

- 첫째, 국민연금 재정전망의 주료가정 중 하나인 인구가정⁹⁾에서 합계출산율¹⁰⁾은 3차 재정계산 시보다 낮아진 반면 기대수명은 더 높아져 고령화가 심화됨
 -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40년 이후 1.38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러한 가정은 3차 재정계산(2013년)보다 약 0.04명 낮아진 가정임
 - 기대수명은 2015년 남성 79.0세, 여성 85.2세에서 2040년 남성 84.7세, 여성 89.1세로, 3차 재정계산(2013년)에 비해 남성은 0.8세 ~ 1.3세, 여성은 0.2세 ~ 0.9세 높아진 가정임
 - 둘째, 국민연금 재정전망의 경제변수¹¹⁾인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금리 등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재정불안정을 심화시킴
 - 실질경제성장률은 2018년 3.0%에서 2088년 0.6%로 감소하도록 설정되었으며, 이는 3차 재정계산보다 2018년~ 2088년 동안 0.2% ~ 0.8%p 낮게 가정됨
 - 실질임금상승률은 2018년 2.1%에서 2088년 1.6%로 감소하도록 설정되어 3차 재정계산보다 2018년~ 2088년 동안 0.1% ~ 1.5%p 낮게 가정됨
 - 금리는 2018년 1.1%에서 2040년 1.5%로 증가한 후 2088년 1.1%로 감소하도록 설정되어 3차 재정계산보다 2018년~ 2088년 동안 1.0% ~ 1.9%p 낮고, 물가는 장기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됨
 - 셋째, 경제적 여건 악화와 더불어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해 기금투자수익률도 3차 재정계산 시 보다 낮게 설정됨
 - 기금투자수익률은 각 자산군별 수익률 가정치와 자산배분비중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기금투자수익률은 2018년 4.9%에서 2060년 4.5%, 2088년 4.3%로 가정되어 3차 재정계산보다 2018년~ 2088년 동안 0.3% ~ 2.3%p 낮게 설정됨
- 국민연금은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져 재정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될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없는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표 1〉 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재정 불균형 상태에 있지만 소진시점이 약 40년 이후여서 그 사이에

8)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2018),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

9) '통계청(2016. 12. 8),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에 의하면, 인구추계는 고위, 중위, 저위의 3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되며, 이중 중간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및 국제순이동의 조합인 중위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10)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11) 경제변수는 한국개발원(KDI)의 전망자료를 기초로 하되 기획재정부 통합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계에 활용됨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불안정을 완화해 갈 시간적 여유가 있음

- 예를 들어, 2003년 1차 재정계산 시 소진시점은 2047년으로 예상되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2060년으로 소진시점이 연장되었음¹²⁾

-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에 대처하고 있음¹³⁾

● 미국 OASDI 기금은 2034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¹⁴⁾ 캐나다 CPP도 1993년 재정계산 시 기금 소진 시점이 2015년으로 전망된 바 있음¹⁵⁾

-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기금이 거의 없어 공적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기금 적립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2.8%로 제일 높은 국가군이며, OECD 평균 11.7%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일본 25.8%, 미국 15.4% 보다도 높음

〈표 1〉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기금 적립비율(2015년 기준)

(단위: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한국	OECD 평균
15.4	17.0	2.5	1.1	7.3	25.8	32.8	11.7

자료: OECD(2017), *pension at a glance*

3. 주요국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평가



■ 이미 공적연금의 성숙단계¹⁶⁾에 진입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재정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12) 국민연금연구원(2017),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내실화 방안과 정부의 역할, 국민연금공단

13) Schlu,di, Martin(2005), "The Reform of Bismarckian Pension Systems" Amsterdam University Press;

Whiteford & Whitehouse(2006), "Pension Challenges and Pension Reforms in OECD Countr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22, No.1

14) The 2016 OASDI Trustees Report: 국민연금연구원(2016),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15) 국민연금연구원(2016),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16) 최초 가입대상자(예, 20세)가 수급자(예, 60세)로 전환되어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은 공적연금 운영단계를 의미함

- 선진국들의 재정안정화 방안들로는 보험료 인상(연금급여감액), 수급개시연령 상향, 자동 조정장치 도입,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 재정지원 및 사적연금 강화 등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첫째, 일반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의 인상 또는 연금급여의 감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 안정이 매우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임(〈표 2〉 참조)
 - 캐나다의 CPP는 기금 소진이 예상되자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1966년 3.6%→1997년 6%→2003년 9.9%)을 통해 재정안정(60년 후 적립배율¹⁷⁾ 5~6배)을 유지하고 있음¹⁸⁾
 - 현재 보험료율은 9.9%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비슷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25%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음
 - 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25년에 11.9%로 높아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2025년까지 33%로 증가할 예정임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년에 걸쳐 10%p 감소(2008년 50%에서 2028년 40%까지 매년 0.5%p 감액)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 기금소진 시점은 2003년 재정계산에서 2047년이었으나 2013년 재정계산에서는 2060년으로 연장됨

〈표 2〉 해외의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인상 또는 급여액 감소

구분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한국
보험료율	19.3%(2000년)	16.5%(1994년)	8.4%(1969년)	3.6%(1966년)		3.0%(1988년)
	->	->	->	->	13.0%(1990년)	->
	18.7%(2015년)	13.9%(2004년)	12.4%(1990년)	6.0%(1997년)	->	6.0%(1993년)
	->	->	->	->	18.5%(1999년)	->
	22.0%(2030년)	18.3%(2017년)	15.18% (위원회 2018년 제안)	9.9%*2003년)		9.0%(1998년)
급여	-	-	보험료 15.18% 상향의 대안으로 급여 17% 감액 (위원회 2018년 제안)	-	-	소득대체율 70%(1988년) -> 40%(2028년)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세계의 연금제도: 김현수(2017), 일본의 공사연금제도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2017), 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2016),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17) 적립배율은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임. 적립배율 5배는 보험료 납입 없이 5년치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임
 18) 국민연금연구원(2016),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 둘째,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재정문제를 완화시키고 있음(〈표 3〉 참조)

-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은퇴 이후의 연금지급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시행하고 있음

〈표 3〉 해외의 재정안정화 방안: 수급개시연령 상향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한국
65세(2013년) -> 67세(2029년)	60세(2010년) -> 67세(2025년)	65세(2015년) -> 67세(2027년)	최저연령 61세(1999년) -> 최저연령 64세(2026년 계획안)	60세(1988년) -> 65세(2033년)

자료: 국민연금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송지원(2018), 스웨덴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안, 한국노동연구원

■ 셋째, 연금급여 또는 급여 개시 연령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및 재정목표 도입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 연금급여에 대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이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스웨덴,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표 4〉 참조)
-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수급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프랑스에서는 근로기간과 은퇴기간의 비율이 일정해 지도록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¹⁹⁾

〈표 4〉 해외의 재정안정화 방안: 급여 자동조정장치

독일	일본	스웨덴
지속가능성계수 도입(2004년)-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에 따라 급여 자동 조정	거시경제슬라이드 도입(2004년)-가입자와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급여 자동 조정	NDC 도입(1999년)-연금부채 대비 자산의 비율이 1보다 작을 경우 급여 자동 조정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세계의 연금제도: 김현수(2017), 일본의 공사연금제도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2017), 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한편, 일본, 캐나다 등은 재정목표로 추계기간 말 적립배율을 각각 1배, 5~6배로 설정하고 있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제도 개선을 통해 소진시점이 나타나지 않는 재정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음

19) "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 in Asian Pension Systems?"(2016 IMF Working Paper)

■ 넷째, 연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음(〈표 5〉 참조)

- 미국(CalPERS), 캐나다(CPPIB), 노르웨이(GPEG) 등은 채권보다 주식으로의 자산배분 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NPS)는 국내 채권 자산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해 투자에 소극적이라 볼 수 있음
- 최근 주요국 공적연금의 5년 평균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면, 미국(CalPERS) 9.2%, 캐나다(CPPIB) 12.6%, 네덜란드(ABP) 8.1%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한국(NPS)은 5.2%로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수익률을 보임

〈표 5〉 해외 연기금 투자수익률

(단위: %)

구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한국
	CalPERS	CPPIB	ABP	GPIFG	GPIF	NPS
2013년	18.4	16.5	6.2	16.0	8.6	4.2
2014년	2.4	18.7	14.5	7.6	12.3	5.3
2015년	0.6	3.7	2.7	2.7	-3.8	4.6
2016년	11.2	12.2	9.5	6.9	5.9	4.7
2017년	·	11.9	7.6	13.7	6.9	7.3
5년 평균	9.2	12.6	8.1	9.4	6.9	5.2

주: 미국 CalPERS의 5년 평균은 2012년~2016년 평균

자료: 각국 연기금 연차보고서(미국, 2012~2013 ~ 2016~2017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CalPERS); 캐나다, 2013~2017 ANNUAL REPORT(CPPIB); 네덜란드, Annual Report(2013~2017(ABP); 노르웨이, The Government Pension Fund 2014~2018(GPIFG); 일본,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2014~2018)(GPIF))

■ 다섯째, 정부의 재정지원 및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재정안정화에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의 공적연금인 OASDI에서는 OASDI 급여에 부과된 세금이 OASDI 기금에 다시 적립 되도록 함으로써 공적연금 재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²⁰⁾
- 완전 부과방식으로 기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 급여를 위해 보험료 이외에 당해 지급되어야 할 공적연금 급여의 24.2%를 일반재정(조세)으로 지원 하고 있음²¹⁾
- 일본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급여에 대해 1/2을 일반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음

20)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Long-Range OASDI Projection Methodology*

2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2018. 8. 17),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표 6〉 해외의 재정안정화 방안: 정부의 재정 보조

독일	일본	미국
전체보험료의 24.2% 정부지원	기초연금의 1/2 정부지원	OASDI 급여에 대한 세금 다시 OASDI 기금으로 적립

자료: 김현수(2017), 일본의 공사연금제도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2017), 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Long-Range OASDI Projection Methodology

-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달성의 한계에 직면하여 사적 연금활성화를 통해 재정안정을 고려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적연금활성화 정책으로 독일의 리스터연금, 영국의 NEST, 각종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예, 미국의 catch-up plan)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제도들의 특징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대신한다는 역할 분담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지원인 세제지원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임
- 주요국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민영보험의 원리와는 다른,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재분배 등을 고려한 부분적 재정안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적연금이 부분적 재정안정화로 추진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보장제도라는 틀에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는 노후소득보장과 조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임

4. 시사점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 조화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제도의 변경(부담 및 급여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에 걸쳐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담과 급여의 조정은 매우 장기적으로(예, 독일의 보험료는 30년에 걸쳐 2.7%p 변경)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금소득세 재원을 공적연금 적립기금에 지원하는 미국의 OASDI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한다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함께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부분은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을, 사적부분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선진국의 연금개혁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사협력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다층 체계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필요함 kiqi

선진국 연금세제 지원금의 환류 사례와 소득보장효과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고령화 및 장수화 정도를 고려하면 은퇴 후 준비해야 할 은퇴자산이 현재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후소득 제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연금세제 지원금(소득공제분 및 세액공제분)을 개인의 연금재원으로 적립되도록 하는 환류세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뉴질랜드는 퇴직연금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금액을 퇴직계좌에 불입하여 연금적립금을 제고하는 환류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영국은 연금사업자가 20%세율로 적용되는 세액환급액(tax relief)을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개인계좌(pension pot)에 불입함
 - 뉴질랜드의 Kiwi Saver에서도 연금사업자가 매년 1월 1일에 가입자를 대신하여 세금환급(tax credit)을 신청하고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불입함
- 환류세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고 적립금 제고를 통해 연금 수령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노후소득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보험료 인상보다 환류세 적용을 통해 연금재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 보험료에 환류세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자 1%, 최대 납부액을 가정 시 3.07%(20년 가입, 20년 수급)이고,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환류세가 노후소득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사적연금 적립금을 제고를 위해 세금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환류세제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류세 방식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문제는 없으나 환류소득에 대한 (준)강제화를 조건으로 하므로 선택에 의한 탈퇴(Opt-out)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도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2018년 9월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가 공표된 이후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지만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5년 전 추정에 비해 3년 앞당겨짐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
- 고령화 및 장수화 정도를 고려하면 은퇴 후 준비해야 할 은퇴자산이 현재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후소득 제고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기대여명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보다 더 강화된 노후준비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의 심화는 과거와 같은 노후준비 방법의 한계를 방증한다는 점에서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 조화되는 노후준비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고는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연금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사례 검토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¹⁾
 - 이와 관련하여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연금세제혜택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함으로써 노후자산 형성을 강화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동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추정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세제지원에 따른 환급금 발생은 공적연금에서도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사적연금(IRP, 연금저축)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함

2. 사적연금 환류세(가칭) 적용 사례와 시사점



가. 영국 및 뉴질랜드의 환류세²⁾ 적용 사례 및 특징

- 영국과 뉴질랜드는 퇴직연금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금액을 퇴직계좌에 불입하여 연금적립금을 제고하는 환류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자동세액환급(automatic tax relief)을 신청하면 연금사업자(pension provider)가 20%세율로 적용되는 세액환급액(tax relief)을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개인계좌(pension pot)에 불입해 줌³⁾
 - 보험료는 소득공제되며 개인이 기여금(세후 기준)을 납입하면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기본률 20%)하여 세금을 환급 받고 이를 개인계좌에 불입해 주는 방식임
 - 한계세율이 20%보다 높은 경우 본인이 별도로 추가신고 하여야 함
 - 뉴질랜드의 Kiwi Saver⁴⁾에서도 연금사업자(KiwiSaver provider)가 매년 1월 1일에 가입자를 대신하여 세금환급(tax credit)을 신청하고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불입함⁵⁾
 - 뉴질랜드 기초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⁶⁾: NZS)의 수급시작 시점인 65까지 적용되며, 최소 5년간은 유지해야 함
 - 2011년 6월까지 1,042.86뉴질랜드달러를 100% 환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50%(521.43뉴질랜드달러) 환급됨
- 연금 환류세제는 동 제도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보조금 및 세제지원) 없이, 이미 연금 세제정책을 통해 지원된 금액을 연금재정에 다시 환류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연금 환류세제는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금액을 강제 혹은 준강제(Opt-out) 방식으로 연금재정(노후재원)으로 환류한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세제혜택과는 다름

2) 본고의 환류세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제혜택이 연금재원으로 활용되는 세제를 의미함

3) <https://www.gov.uk/tax-on-your-private-pension/pension-tax-relief>

4) 2007년에 자발적 퇴직연금인 키위세이버(KiwiSaver) 도입

5) <http://www.kiwisaver.govt.nz/new/benefits/mtc/>

6)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정액급여)

- 또한 일정 수준의 납부금을 납부단계에서 면제 혹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도 차이가 있음
- (세제혜택) 일반적으로 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금재정으로 환류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환급금 형태로 현재 소비에 충당됨으로써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사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은 공사적연금이 다르나(공적연금은 소득공제,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방식), 공제 후 연금재정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은 동일함
 - 주요국들의 공사적연금 세제지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사적연금 모두 소득공제방식을 적용받고 있으나, 환류세제를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공제 후 연금재정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은 동일함
- (보조금) 사적연금 납부액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례는 호주, 영국, 독일 등 다양한데 납부 보험료에 대한 면제 혹은 직접적 지원 형태로 환류세와 차이가 있음?
 - 호주는 비적격 퇴직연금제도(Non-Concessional (after-tax)Contributions)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super co-contribution)⁸⁾
 - 소득수준(51,021호주달러⁹⁾)이나 연령(71세 이하)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납입한 보험료 1호주달러 당 정부가 0.5호주달러(연간 최대 500호주달러)를 추가로 지원함¹⁰⁾
 - 영국의 NEST퇴직연금의 보험료는 총 8%로 사용자 3%, 근로자 4%, 정부 1%로 구성됨¹¹⁾
 - 정부 보조금 1%는 보험료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여서 가입자의 세제혜택으로 받은 금액의 환류형태인 환류세와 차이가 있음
 - 개인연금에 대한 대표적 세제지원은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들 수 있으나 국가에서 보험료에 대한 직접 지원이므로 이미 자신의 소득원이 된 세제지원금에 대해 적용하는 환류세제와 차이가 있음

7) 공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은 OECD 주요국의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적연금의 보조금을 중심으로 정리함

8)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9) 1호주달러=809.62원 (2018.10.29. 기준)

10)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to.gov.au/>)

11) 소득공제방식으로 지원(김원식·김재현·김우철·김상봉(2015),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과 재정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p. 24)

〈표 1〉 연금의 세제지원(보조금 포함)과 환류세 비교

구분	세제지원(보조금 포함)	환류세
공통점	-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있음을 조건으로 함	
차이점	- 지원된 세제혜택 및 보조금은 연금계좌로 환류되지 않고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은퇴전에 생활비로 충당되어 노후소득원이 되지 못함 대부분의 연금세제에 적용: 호주 Super Co-Contribution, 영국 NEST, 독일 리스트연금, 아이헬 보조금, 1) 우리나라 연금저축 등	- 지원된 세제혜택 및 보조금이 연금계좌로 강제 혹은 준강제(Opt-out) 형태로 적립됨 즉, 지급받은 세제혜택 금액을 노후재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임 - 영국 Automatic Tax Relief, 뉴질랜드 Kiwi Saver에 적용되는 tax credit

주: 1) 아이헬보조금은 적립방식 퇴직연금에 적용되며, 2001년 독일의 공적연금 연금급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적연금 역할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됨

자료: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참고하여 재정리

나. 환류세제의 의의

■ 환류세제는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부담이 없고 적립금 제고를 통해 연금 수령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영국의 사례에서 보면 연금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종신연금 및 Drawdown¹²⁾ 등 연금화 수령 비율이 높고 적립금 규모가 작을수록 Small pension Pot¹³⁾ 혹은 UFPLS¹⁴⁾ 등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적립금 제고가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¹⁵⁾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령 현황에서도 적립금이 많을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2〉에 의하면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약 24만 좌) 중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9%이지만 이들의 적립금액은 건당 2억 3천만 원이어서 일시금 수령자의 적립금인 1,649만 원보다 훨씬 높음

12) 축적된 자산을 거치기간동안 자유롭게 운용 및 인출이 가능하고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실적 배당형 연금 (2011년 도입, 인출형연금)

13) 60세 이상의 은퇴자는 2,000 파운드 미만의 소액연금 총액을 한 번에 인출 가능(소액인출형연금)

14) 2015년 연금자유화 이후 제한없이 적립금 인출이 가능하며, 25% 비과세 75%는 종합과세(무제한인출형연금)

15) 정원석(2017), 「영국의 퇴직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적립금 수령행태와 시사점」, KiRi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표 2〉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2017년 말)

구분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 계	
	계좌 수	적립금액	계좌 수	적립금액	계좌 수	적립금액
계좌 수(개) 및 적립금액(억 원)	4,672	10,756	236,783	39,039	241,455	49,795
비중(%)	(1.9)	(21.6)	(98.1)	(78.4)	(100.0)	(100.0)
계좌당(만 원)	23,022		1,649		2,062	

주: 일시금수령·연금수령 개시 시점의 적립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16년 상반기 퇴직연금 현황 분석결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 안내,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보험료 인상보다 환류세 적용을 통해 연금재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류세 방식은 납부할 보험료가 별도의 소득 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말 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증액이 보다 용이한 점이 있음

3. 사적연금 보험료의 환류세 적용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효과

가.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대상규모 및 금액

- 사적연금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은 대상자는 연간 239만 명¹⁶⁾이며, 이들의 연간 보험료 세액 공제액(세제혜택)은 1인 평균 35만 원(총 8천 460억 원)¹⁷⁾으로 나타남(2016년 기준)
 - 소득수준별로는 8천만 원 초과 소득구간에서 44만 원의 세액공제로 가장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수준이 높음
 - 사적연금의 연간 평균 납부액(연 35만 원)은 퇴직연금(본인부담) 265만 원, 연금저축 258만 원이며 여기에 세액공제율 13.2~16.5%를 적용하여 산출됨
 -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연간 700만 원(IRP와 연금

16) 납세자와 면세자로 구분하면 각각 219만 명, 20만 명으로 조사됨
 17) 납세여부로 구분하면 납세자는 37만 원, 면세자는 19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저축 합산)이므로 환류세 적용 시 최대 연간 116만 원(700만 원×16.5%)을 추가로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3〉 사적연금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자 및 공제규모(2016년 기준)

소득 구분	대상자 수(천 명): A	총 공제액(10억 원): B	1인 평균 공제액(천 원):B/A
2천만 원 이하	27	1.4	53
2~3천만 원	124	17	140
3~5천만 원	464	141	304
5~8천만 원	953	326	342
8천만 원 초과	821	361	439
소계	2,390	846	354

주: 1) 사적연금은 퇴직연금(본인부담분)과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산출
 2) 납세자 및 면세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
 자료: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를 기준으로 재정리함

나. 환류세 적용 시 노후소득 개선 효과

■ 환류세 적용 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함

- 적용대상자는 사적연금 가입자로 하고, 세제혜택은 현행 방식인 13.2%~16.5% 세액공제율을 납부액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사적연금 급여산식은 수지상등을 전제로 하는 수익비 1(보험료현가=급여현가)을 적용함
- 경제변수인 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은 산출의 편의상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가입기간은 각각 20년, 30년, 40년인 경우로 하되, 수급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함
- 연금의 소득보장효과는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로 판단하므로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은퇴 후 연금급여액(세제혜택 금액)/은퇴 전 연간총급여액(현가)로 산출함

〈표 4〉 분석가정

구분	내용
분석자료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
적용대상자	사적연금 가입자
세제혜택 수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는 16.5%, 5천만 원 이상은 13.2% 적용
연금 급여산출 방식	수지상등원칙 적용(수익비=1, 보험료현가=급여현가)
경제변수	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모두 동일
가입기간	20년, 30년, 40년
수급기간	20년
소득대체율	은퇴 후 연간 연금급여액현가(연간 세제혜택 현가)/은퇴 전 연간총급여액 현가

■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적립금으로 환류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자의 경우 1%, 최대 납부액을 가정할 경우 3.07%로 추정됨

-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1인당 평균 연간 총급여액 3,383만 원에서 매년 1인 평균 공제액인 35만 4천원만큼 20년동안 납부하고 20년 동안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1.0%로 추정됨
- 이를 최대 납부가능 금액인 700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평균 3.07%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5〉 사적연금 보험료의 환류세 적용 시 소득대체율 추정(20년 가입 & 20년 수급)

(단위: 천 원, 천 명, %)

소득 구분	1인당 총급여액(A)	공제자수	1인 평균 공제액(B)	소득대체율	
				평균(B/A)	최대1)(최대납부액/A)
2천만 원 이하	10,539	27	53	0.5	10.96
2~3천만 원	24,826	124	140	0.6	4.65
3~5천만 원	39,074	464	304	0.8	2.96
5~8천만 원	63,460	953	342	0.5	1.46
8천만 원 초과	120,593	821	439	0.4	0.77
소계	33,827	2,390	354	1.0	3.07

주: 1) 최대는 모든 소득계층에 연간 700만 원의 사적연금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하 동일)

2) 20년 가입기간, 20년 수급기간

자료: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를 기준으로 재정리함

■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환류세 적용에 따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가입기간을 30년(40년)으로 할 경우 평균 소득대체율은 1.57%(2.09%)로 증가함
 - 최대 납부가능 금액인 700만 원을 납부할 가정할 경우 30년(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4.61%(6.15%)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6〉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공사적연금 보험료의 환류세 적용 시 소득대체율 추정

(단위: %)

소득 구분	30년 가입 & 20년 수급		40년 가입 & 20년 수급	
	평균	최대	평균	최대
2천만 원 이하	0.75	16.44	1.00	21.92
2~3천만 원	0.85	6.98	1.13	9.30
3~5천만 원	1.17	4.43	1.55	5.91
5~8천만 원	0.81	2.18	1.08	2.91
8천만 원 초과	0.55	1.15	0.73	1.53
소계	1.57	4.61	2.09	6.15

주: 30년 혹은 40년 가입기간, 20년 수급기간
 자료: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를 기준으로 재정리함

4. 시사점

■ 환류세 방식은 연금재원에 의해 발생한 환류소득을 연금소득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동 분석 가정에 의해 추정된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자 1%, 최대 납부액을 가정 시 3.07% (20년 가입, 20년 수급)이고,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환류세가 노후소득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추가적 확대가 어렵고, 사적연금은 정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환류세 방식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문제는 없으나 환류소득에 대한 (준)강제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류세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연금세제 지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적 재정지원은 없으므로 현재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미래 소비(저축)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 논의는 필요할 것임
 - 한편, 환류세 도입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입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에 의해 탈퇴(Opt-out)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도 도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종합하면 사적연금 적립금을 제고를 위해 세금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환류세제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행태 및 제도평가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90.1%가 퇴직연금 운용지시 변경을 전혀 하지 않고, 평균 1.96개의 상품만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산투자 등이 미흡함
 - 이에 본고는 한·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행태를 기능별로 살펴본 후 운용제도를 비교·평가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 일본 퇴직연금 가입자의 64%는 가입 후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변경하고 있으며, 평균 18.7개 상품을 활용해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자보다 적극적인 운용행태를 나타냄
 - 또한 일본 DC형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44.8%인 반면, 우리나라 DC형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비중은 16.7%에 불과해 일본 가입자가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음
- 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운용제도를 평가하면, 일본은 질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여 자산운용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투자교육중심 가입자교육 의무화, 저소득계층을 위한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투자정책 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분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중 운용되지 않고, 다양한 투자상품이 조합되도록 운용손실 책임을 명확히 함
- 일본 퇴직연금 운용제도의 특징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방식을 일본처럼 질적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입자의 자산운용 재량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투자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전문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교육 강화가 필요함
 - 정책투자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으로 장기운용을 유도하고, 투자손실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투자손실에 대한 귀책사유 등)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90.1%가 퇴직연금 운용지시 변경을 전혀 하지 않고, 평균 1.96개 상품만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산투자 등이 미흡함¹⁾
 -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자가 운용지시 변경을 하지 않은 비중(평균 90.1%)은 DB형이 92.2%, DC형이 91.4%, IRP가 87.6%에 이르며, 운용상품 수는 평균 1.96개에 불과함 - 반면 일본은 운용지시 변경을 하지 않은 비중이 34.0%에 그치고, 분산투자관점에서 평균 18.7개의 운용상품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²⁾
 - 우리나라는 DC형 실적배당형 상품비중이 16.7%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DC형 실적배당형 비중은 44.8%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보수적인 운용행태를 보임
- 운용행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운용제도³⁾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평가해보고 특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일본 퇴직연금제도를 기초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문화적·경제적 요인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운용제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는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행태⁴⁾ 등을 기능별로 살펴본 후, 운용행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운용제도를 비교·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1) 금융감독원 통계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7) 참조

2) 일본 기업연금연합회(2018. 1), 「2016년도 확정각출연금실태조사결과」

3) 여기에서 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반제도를 의미함

4) 퇴직연금 운용행태는 퇴직연금가입자의 운용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운용성향(적립금 운용), 운용상품선택, 운용지시 변경, 운용교육경험 등으로 구분해 운용행태를 제2장에서 살펴봄

2. 운용행태 비교



-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행태를 적립금 운용성향, 분산투자관점에서 운용상품 활용 수, 가입 후 운용지시 변경 여부, 운용교육 및 장기운용 여부 측면에서 살펴봄
- 적립금 운용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자(DC·기업형 IRP)에 비해 일본 퇴직연금가입자가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보다 높게 나타남(〈표 1〉 참조)
 -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16.7%에 불과한 반면, 일본 퇴직연금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44.8%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 DC형 실적배당형 상품 적립금 비중(기업형 IRP 포함)은 2010년 28.9%에서 2017년 16.7%로 감소한 반면, 일본은 2010년 37.0%에서 2016년 44.8%로 오히려 증가함

〈표 1〉 한국과 일본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비교

(단위: %)

구분	한국(DC·기업형 IRP)	일본(기업형 DC)
원리금보장형	83.3	55.2
실적배당형	28.9%(2010년) → 16.7%(2017년)	37.0%(2010년) → 44.8%(2016년)

주: 한국은 2017년 말, 일본은 2016년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2017); 기업연금 연합회 실태조사(2018)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연금 상품 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평균 2개 미만 상품으로 운용하는 반면, 일본은 퇴직연금가입자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평균 18.7개 운용상품을 활용함(〈표 2〉 참조)
 -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자의 운용상품은 평균 2개 미만으로 2015년 1.98개, 2016년 1.95개, 2017년 1.96개에 불과함

〈표 2〉 한국과 일본 가입자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수

(단위: 개)

구분	한국(DC·IRP)	일본(기업형 DC)
평균 운용상품 수	1.96	18.7
조사 기관	금융감독원 실태조사(2018년)	기업연금연합회 설문조사(2018년)

주: 평균운용상품 수는 한국은 2017년 말, 일본은 2016년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실태조사(2018); 기업연금 연합회 실태조사(2018)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반면, 일본 퇴직연금가입자의 운용상품 수는 2013년 17.4개에서 2016년 18.7개로 증가 추세를 보여 분산투자 관점에서 상품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운용지시 변경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제도가입 후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 DC형 퇴직연금가입자 비중이 90.1%로 나타나 일본의 34.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표 3〉 참조)
 -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은 비중(2017년 기준)을 보면 DB형은 92.2%, DC형은 91.4%, IRP는 87.6%임
 -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기업형 DC 가입자 비중(2016년 기준)이 34.0%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임

〈표 3〉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는 비중

(단위: %)

구분	DB	DC	IRP	계
한국	92.2	91.4	87.6	90.1
일본	NA	34.0(기업형 DC)		

주: 운용지시 변경은 부담금 투입비용 변경(동일한 운용상품의 운용금액 비중만 변경) + 운용상품 변경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일본 기업연금 연합회 실태조사(2018)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운용교육(투자교육)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의 운용교육경험 가입자는 전체 가입근로자의 21.7%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퇴직연금가입자의 70.6%가 운용교육을 경험함(〈표 4〉 참조)
 - 보험연구원이 DC형 가입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2016년 기준), 제도가입 후 투자교육을 받은 가입근로자는 전체 가입근로자의 21.7%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본 기업연금연합회가 DC형 퇴직연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2016년 기준), 집합연수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투자교육 횟수로는 1회 24.2%, 2회 19.9%, 3회 16.0%, 4회 7.2%, 5회 이상 32.7% 등임

〈표 4〉 한국과 일본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교육 경험여부

(단위: %)

구분	한국(DC)	일본(기업형 DC)
투자교육 경험	21.7	70.6(2006년은 33.5%)
조사 기관	보험연구원 설문조사(2016년)	기업연금연합회 실태조사(2018년)

자료: 보험연구원 설문조사(2016); 기업연금 연합회 실태조사(2018)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운용기간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77.2%가 1년 이하 단기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3~5년 만기형 상품위주로 장기 운용되는 특징을 보임
 - 금융감독원 통계(2016년 기준)결과, 원리금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기간이 1년 이하 상품의 비중은 77.2%, 1~3년 상품비중은 4.3%, 3년형 상품비중은 10.2%로 나타남
- 이러한 운용행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고 운용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분산투자를 활용한 장기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 인식조사결과에서도 원금손실 불안감, 운용상품 정보부족 등이 퇴직연금 운용의 주된 문제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보다 요구됨(〈표 5〉 참조)

〈표 5〉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 인식(복수응답)

(단위: %)

원금손실 불안감	운용상품 정보부족	낮은 수익률	운용시간 부족	운용규제 엄격	운용상품 부족	기타 (자금부족 등)
86.4	51.7	32.7	17.1	7.0	3.5	1.5

자료: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7) 등에 기초하여 재구성함

3. 운용제도 평가



- 퇴직연금 운용행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용제도를 운용규제, 운용교육, 자산운용, 운용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평가하면 <표 6>과 같음

<표 6> 한·일의 퇴직연금 운용 제도 평가(요약)

구분	내용
운용규제	• 질적규제 방식을 채택한 일본이 운용재량권이 높은 수준
운용교육	• 투자 중심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일본)
자산운용	• 우리나라,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운용 정책 저조 평가
운용서비스	• 일본은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로 서비스 제공 경향

- (운용규제 측면) 우리나라는 연금운용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양적규제(Legal List Rule)⁵⁾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질적규제(Prudent Men Rule)를 채택해 운용의 재량권이 높음

- 2014년 이후 DC형의 총위험자산 보유한도가 DB형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일부 규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적규제 방식을 견지함
 - 근로자가 운용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는 DC형은 DB형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제약되어, 근로자의 투자운용 자율성은 낮은 수준임
 - 예를 들어, 운용손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DC형에 대해서는 일부 고위험자산(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제한됨

<표 7> 퇴직연금 운용규제 관련 제도

구분	한국	일본
DC형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규제 • 고위험자산 투자추가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후순위채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규제(자율규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이전 5·3·3·2규제 • 투자대상별 자산규제 미존재
DB형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 보다 낮은 규제수준 - 주식투자 일부 허용 등 	

자료: 근퇴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2017); 일본기업연금법(2017)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5) 양적규제는 운용자산별 투자한도, 총투자한도 등을 법상에 일일이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식인 반면, 질적규제는 운용자산별 투자한도, 총투자한도 등이 없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임

- 일본은 2001년 이후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과 같은 선관주의에 입각한 질적규제로 전면 전환하여 근로자의 투자상품의 선택폭이 확대됨
 - 2001년 이전에는 운용가능자산의 종류와 비율을 규정한 '5·3·3·2규제(안전 자산 50% 이상, 주식 30% 이하, 외화자산 30% 이하, 부동산 20% 이하)'인 양적규제 방식을 적용함
- (운용교육 측면) 근퇴법상의 가입자 교육 의무화 규정 이외에 투자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반면, 일본은 별도의 제도 보안을 통해 투자 중심의 가입자교육을 유도함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적립금 규제 완화로 투자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됨에도 제도적 장치 부재로 인해 운용상품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경험은 미흡한 수준임
 - 투자지식 및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투자교육 인프라는 매우 취약함

〈표 8〉 퇴직연금 운용교육 관련 제도

구분	한국	일본
투자교육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교육에 포괄적 규정 - 별도의 투자교육규정 미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적 투자교육 의무 법제화 - 투자교육 의무화 규정(2011년)
투자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중심 형식적 교육 - 저소득계층 투자교육 인프라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교육 중심의 가입자교육 -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법제화

자료: 근퇴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2017); 일본기업연금법(2017)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일본은 2011년 「확정각출연금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근로자 투자교육 실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투자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부적인 교육기준을 마련함
 - 저소득 계층의 투자교육 강화를 위해 기업연금연합회 등 전문기관에 투자교육을 위탁 하도록 조치하고, 사용주의 투자교육 실시 여부를 정부가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함
- (자산운용측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투자손실로부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개선함
 -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DC형 운용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대표상품을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안하는 대표상품제도⁶⁾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의 효과가 미흡함

6)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상품가입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형태인데 반해, 대표상품은 일단 가입

- 또한 기업의 적립금 운용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운용(중장기 운용)을 회피함
 - 수탁자 책임 범위를 규정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장기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는데 제약이 존재함

〈표 9〉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관련 제도

구분	한국	일본
투자 취약계층 측면 (상품가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상품제도 시행(2015년) - 가입자 선택이 필요해 효과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폴트 옵션제도 운용(2018년) - 취약계층의 합리적 자산운용 유도
장기자산 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규정 미존재 - 근퇴법에 장기운용관련 규정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정책보고서 작성의무화 등 - 일본 확정급부 기업연금법에 규정
투자손실 책임 측면 (가입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적인 규정 없음 - 근퇴법의 수탁자책임에 포괄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손실 책임범위 명확화 - 투자손실에 대한 귀책사유 마련 등

자료: 근퇴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2017); 일본기업연금법(2017)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일본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디폴트 옵션제도를 도입하고, 정책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장기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도록 유도함
 -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편중 운용되지 않고, 다양한 운용상품이 조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디폴트옵션 기준(투자손실 책임의 명확화 등)을 설정함
 - 자산운용 지침에 해당하는 투자정책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여 장기적인 분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운용서비스 제공 측면) 우리나라는 개별 금융기관 위주로 운용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일본은 금융기관 간의 업무 및 상품제휴를 통해 운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독려함

- 우리나라는 운용상품 제공을 금융기관 단독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한다는 점에 차이가 존재함

〈표 10〉 퇴직연금 운용서비스 관련 제도

구분	한국	일본
제공 형태	• 개별 금융기관이 모든 운용서비스 -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우려	• 관계회사 또는 타 금융기관 등과 제휴 - 운용서비스의 차별화 효과 존재
정부 역할	별도의 역할 부재	업무 제휴 등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근퇴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2017); 일본기업연금법(2017)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이에 반해 일본은 관계금융기관 간의 제휴, 타 금융기관 간의 제휴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차별화된 운용서비스를 제공함
 - 예를 들어, 미츠이 스미토모해상, 미츠이생명 등은 업무제휴를 통해 원리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상품을 공동개발·제공하여 운용상품 제공 서비스를 차별화함

4.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행태를 보면, 일본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고 투자상품을 활용한 분산투자 등이 미흡함
 - 보험연구원 조사결과(2016년), 실적배당형 운용에 따른 손실 불안감,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투자상품 부족 등이 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운용행태와 관련된 운용제도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운용체계가 일본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용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본의 사례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문화적·경제적 차이 등에서도 운용행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운용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 방식을 일본처럼 질적규제로 전환하여 가입자의 자산운용재량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검토가 요구됨

- DB형보다 엄격한 DC형의 운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가입자교육을 이원화(일반교육, 투자교육)하여 투자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투자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 투자교육을 위탁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함
 - 일반교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자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등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교육 강화가 요구됨
- 일본처럼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투자손실로부터 가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정책투자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투자자산이 장기 운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대표상품제도에서 디폴트옵션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설명의무, 투자손실에 대한 귀책 사유 등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운용상품 제공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해 타 금융기관과의 운용업무 제휴 등을 정책적 차원에서 독려하는 자세 전환이 요구됨 **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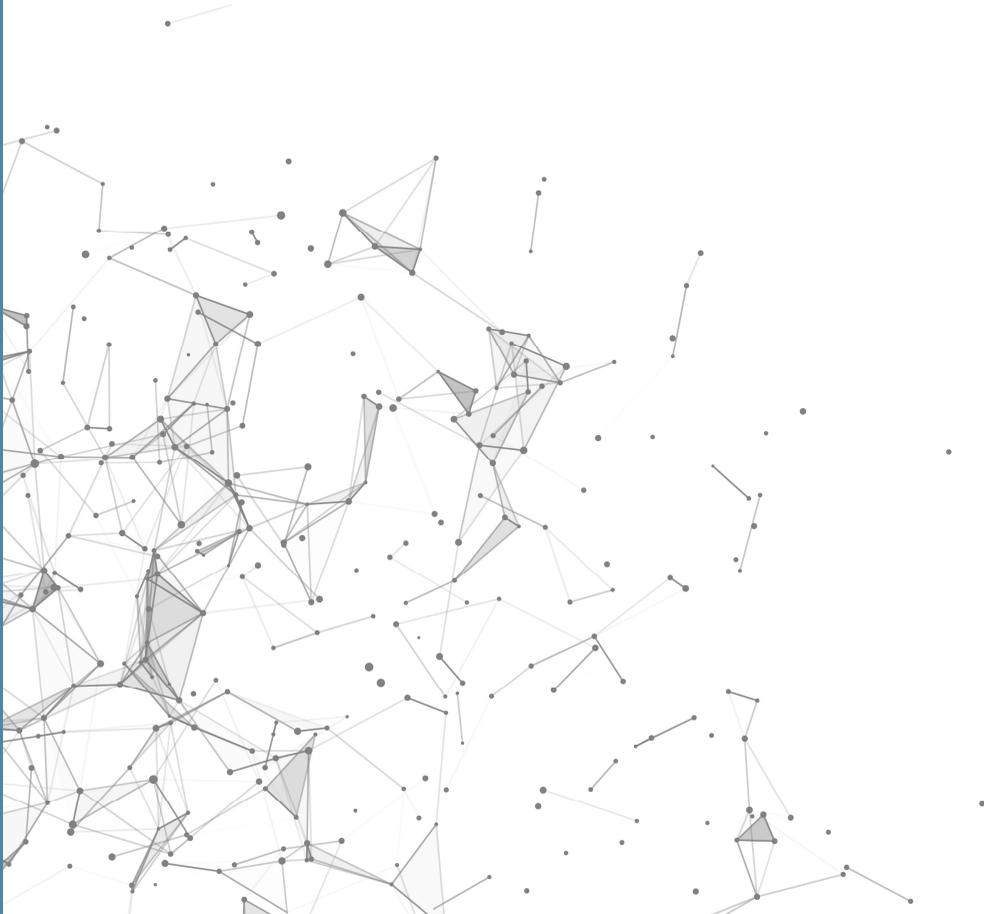
CHAPTER

02

건강

1.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2.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3.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 조용운 오승연
| 오승연 안소영
| 조용운 김동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조용운 연구위원, 오승연 연구위원

-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함
 -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는 장애부위·질환명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한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 및 장애등급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장애등급은 삭제될 것임
 -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최근 7년간 280만 건이 판매되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대안적 지급 기준이 필요함

-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상품의 보장 중단 및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법률상 장애등급이 변경 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 방지를 위해 계속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험산업이 마련해 놓은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계약 변경을 추진할 경우 표준약관에는 등급이 없으므로 불명확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에 기초하여 기존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체제상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와 의학적 접근을 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형식이므로 보험회사가 판정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자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
 -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등급판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 간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자 간 보험금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단서 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보험회사가 장애인단서에 기초하여 등급을 판정하여야 함
 - 따라서 개정 장애인단서는 장애등급 이외의 현재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 검토배경



-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및 이에 기초한 일률적 서비스 체계를 폐지하고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기로 함
 - 현재 의료기관은 요청이 있을 시 장애등급을 포함하는 장애인단서¹⁾를 발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고 있음
 - 장애인단서 기재 내용은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한 검사 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 및 장애등급(1~6급) 등이나 앞으로 장애등급은 삭제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종류 등과 관계없이 장애등급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지난 3월 5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포함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였음²⁾
 -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현재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이러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함

1) 의료기관은 장애인단서를 발급하는 등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보험산업은 표준약관에서 장애분류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함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8. 3. 5),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 본고는 해당 보험상품의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책을 논의하고자 함
- 장애인단서 상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상품 외에 장애정도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고려한 정책방향 제안을 병행하고자 함

2. 장애등급제 폐지 경과



- 현재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제는 기능손상이라는 의학적 장애정도의 판정체계³⁾에 기반하여 15가지 장애유형 각각에 대해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함
 - 장애등급제의 본래 취지는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필요성에서 도입됨(〈표 1〉 참조)⁴⁾
-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범위가 정해짐
 - 1~2급은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받고, 3급은 장애인연금(중복장애만), 경증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받으며, 4급부터는 경증장애수당 등을 받음

3) 순수한 의학적 관점에서 각종 후유장애에 따른 신체장애를 백분율(%)로 평가하는 방식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장애평가방법과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McBride 장애평가방법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음

4)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은 1~4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장애등급은 1~14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등급은 1~4급으로 분류함

〈표 1〉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에 따른 등급구분		등급에 따른 지원서비스	
장애유형	등급	장애등급	지원서비스 내용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	1~6급	1~2급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전기·도시가스 할인, 철도(50%) 및 항공(50%) 할인, 지방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
	2~6급		
	3~6급	3급	장애인연금(중복장애만), 경증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전기·도시가스요금할인, 철도(50%) 및 항공(50%) 할인, 지방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
	1~3급		
2, 5급	4급	경증장애수당, 철도(30%) 및 항공(50%) 할인, 시각 4급만 지방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	
1~3, 5급			
2~5급	5~6급	경증장애수당, 철도(30%) 및 항공(30%) 할인, 소득세 공제	

주: 항공요금할인은 대한항공 국내선 기준. 아시아나 항공은 1~6급에 국내선 50% 할인

■ **의학적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장애등급 하나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복지가 결정되다보니 각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실제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옴
- 대체로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장애등급은 낮지만 지원서비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배제되어 옴

■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옴**

- 또한 정부의 예산에 따라 등급심사가 영향을 받는 등 등급판정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공급자 위주의 전달체계라는 비판이 있음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판정기준을 둘러싸고 장애등급제를 단순화하는 방안, 각 서비스별로 적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 옴**

- 장애인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등급 단순화 방안은 현행 장애등급제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모든 서비스별로 적격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은 행정상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비판이 있음

-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종합적 욕구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원서비스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누고, 각 분야별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종합적 욕구조사’는 일상생활지원(2019년 7월),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의 세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도입해 갈 계획임
 - 현재 1~3급의 중증장애인에 한해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됨
 - 현재 단일 장애 3급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제는 한정된 자원과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논리하에 설계된 제도여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어,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바꾸어 소비자 만족도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봄

3. 장애등급제에 근거한 보험상품 현황



- 여러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장해)등급에 따라 보장하는 상품이 다수 있음(〈표 2〉 참조)
 - 한 예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한 상품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의 장애정도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법률상 장애(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사용통계	지급금액 (S: 보험가입금액)
질병/상해 장애	질병/상해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등급(1~6급) 진단 시	장애인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등록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1, 2급: 1S 3급: 0.5S (4~6급 미판매)
질병/상해 후유장애	질병/상해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상 장애분류표에 해당하는 장애상태 진단 시	보험회사 경험통계(경험률)	장애지급률(3~100%)*S
장기간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4등급 판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현황(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	1급: 1S 2급: (2/3)S 3,4급: (1/3)S
교통사고 부상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사항 중 2. 영역별 세부지침 준용)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 진단 시	자동차보험 사고통계(보험회사) → 경험률로 전환	1급: 1S 2~4급: 0.5S 5~7급: 0.25S 8~11급: 0.125S 12~14급: 0.075S
산업재해 장애진단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상해사고 발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산업재해 장애등급 분류표에서 정한 신체장애등급(1~14급) 진단 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지급통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1급: 1S, 2급: 0.8S 3,4급: 0.7S 5,6급: 0.5S 7,8급: 0.3S 9,10급: 0.2S 11,12급: 0.1S 13,14급: 0.05S

■ 폐지 예정된 「장애인복지법」체계의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보험상품은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 상의 12가지 장애 유형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신장·심장·간·안면·장루 및 요루·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 2,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함

■ 장애등급에 기초한 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은 적지 않은 상황임

- 2010~2016년 사이에 280만 건이 판매된 상태임

〈표 3〉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기초한 보험상품의 7년간 누적 판매 실적

(단위: 천 건, 백만 원)

보장항목	신계약건수	지급건수	위험보험료
장애(1~3급)	2,807	1.4	161,410

주: 2010~2016년 장기손해보험 누적 실적
 자료: 보험개발원

■ 동 상품은 등급 판정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변경 혹은 폐지의 경우 적용할 기준을 정해 놓고 있음

- 표준약관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및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판정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 시점 기준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시점(장애등급 판정시점)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방법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상품은 해당 기준에 따른 등급 판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함

4. 보험금 지급관리

■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상품의 보장 중단 및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법률상 장애등급이 변경 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 방지를 위해 계속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⁵⁾
- 보험산업이 마련해 놓은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계약 변경을 추진할 경우 표준약관에는 등급이 없으므로 불명확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단서에 기초하여 기존의 「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현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와 유사한 의학적 판정기준이므로 보험회사가 등급을 판정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판정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자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
 -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등급판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험회사 간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자 간 보험금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 ■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단서 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 현재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에 기초한 보험상품은 장애등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장애인단서 상의 장애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여야 함
 - 장애등급에 기초한 상품은 장애인단서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함
 - 따라서 장애인단서는 장애등급 이외의 현재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kiri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오승연 연구위원, 안소영 연구원

-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생애주기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기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며, 경제활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은 건강증진정책의 핵심적 인구집단임
 - 개인의 건강생활습관은 사회의 문화, 규범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큰 직장 단위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문화의 확산이 지역단위 인구집단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임
- 건강행태 측면에서 남성 근로자는 성인 남성보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음
 - 남성 근로자의 흡연과 고위험음주 비율이 성인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서비스업과 감정노동의 증가로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대두됨
- 전통적으로 사업장의 보건은 광물, 건설, 제조업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건강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
 - 현재 건강증진정책의 주요 단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이며, 학교나 사업장의 경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 서비스 업종의 증가, 근로자의 고령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보건의 패러다임이 '직업병 예방'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 직장인의 건강은 보험산업에도 중요함
 - 직장인은 보험의 주요한 수요 계층이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직장인의 건강증진은 건강 리스크의 증가에 대응한 보험금 지급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정부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민간차원의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업과 보험회사가 협력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는 장기적 시계가 필요하며,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기,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각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함
- 경제활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은 건강증진정책의 핵심적 인구집단임
 - 예방적 건강관리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의 건강생활습관은 사회관계의 문화, 규범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음
 - 지역단위 사회관계와 비교해서 직장 내 상호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장단위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문화 확산은 훨씬 효과적일 것임
- 실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약 75%가 임금근로자이며, 이들의 건강증진은 건강한 노동능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도 중요함
- 본고에서는 직장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의 특징,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건강 증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통해 향후 과제를 논하고자 함

2. 직장인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 임금근로자에게서 발병빈도가 높은 질환은 근골격계질환¹⁾과 뇌·심혈관질환임
 - 산재보험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질병 중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된 작업 관련성 질환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음²⁾

1) 근골격계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함

2) 고용노동부(2014), 산업재해 공식통계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질환자 및 고혈압·당뇨의심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³⁾

■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직무 중 스트레스를 대부분 또는 항상 느끼는 근로자 비율이 남성 26.5%, 여성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⁴⁾
- 산업구조가 제조업, 건설업 중심에서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한 결과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커지고 있음

■ 건강행태 측면에서 보면 남성 근로자는 성인 남성⁵⁾보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음

- 남성 근로자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이 성인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흡연율에서 남성 근로자와 성인 남성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율은 격차가 감소하다 2015년에 다시 벌어짐

〈표 1〉 남성 근로자와 성인 남성의 건강행태 비교

(단위: %)

구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재 흡연율	남성 근로자	51.7	51.7	50	45.2	45.6	45.7	39.7
	성인 남성	47.8	48.3	47.3	43.7	42.2	43.2	39.4
고위험음주율	남성 근로자	26.8	24.6	24.2	22.3	21.2	20.3	22.5
	성인 남성	24.5	22.0	23.2	21.9	19.7	20.7	21.2

자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근로자건강증진(<http://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0819&siteId=null>);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3) 고용노동부(2016), 『2015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4) 통계개발원(2013), 2011년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5)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표준화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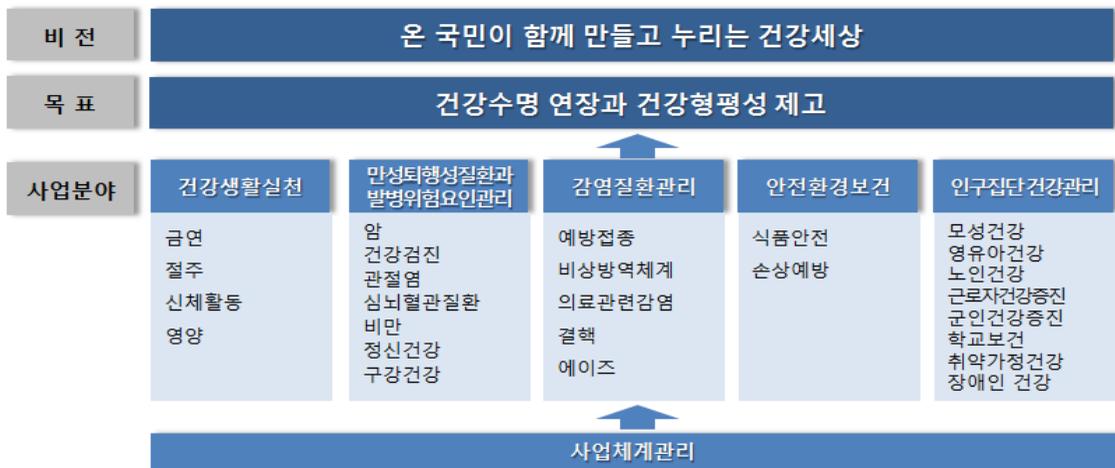
3.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정부의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 정부의 직장인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정책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⁶⁾의 인구집단 건강관리에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인구집단을 모성, 영유아, 노인, 근로자, 군인, 학교, 취약가정,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건강증진정책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지자체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림 1〉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기본 틀



자료: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뇌·심혈관질환자 수 감소와 정신건강 유지·증진을 목표로 삼고, 구체적 사업으로 사업장 건강증진 운동 활성화와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6)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로드맵임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활성화 사업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자발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자율신청 사업장 및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직종)에 대해 건강증진 관련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컨설팅, 교육, 기술정보 자료를 제공함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연합체)의 동 활동 실천에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함
 -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하여 현장평가 및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함
 -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5가지 활동(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을 선정하고 TV, 일간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함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를 운영함
 -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건강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고 작업환경 및 개인질병 유해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등에 설치하여, 직업병 등 질병상담 및 직무 스트레스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안심일터”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근거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산재보험에 가입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함
 -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 예방 활동을 추진함

〈표 2〉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목표(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단위: %)

사업목표	지표 명	2008	2013	2020	사업 명
근로자의 육체적 기초 건강 증진을 통한 뇌·심혈관 질환자 수 감소	남성 근로자의 현재 흡연율	51.70	45.60	30	가. 사업장 건강증진 운동 활성화
	남성 근로자의 고위험음주율	26.80	21.20	20	
	근로자의 고혈압 유병률	21.80	22.90	21	
	근로자의 비만 (25kg/m ² 이상) 유병률	30.30	31.70	30	나.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운영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사망률	3.60	2.30	3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증진	근로자의 우울증상 경험률	11.30	7.40	7.00	

자료: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그 외 사업장 대상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강도시사업이 있음

- 서울시는 건강도시사업을 통해 마을, 아파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를 건강리더로 육성하여 자신이 속한 사업장에서 건강생활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도록 독려함
- 시범사업으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건강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체력단련기구를 직접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기업 CEO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장 내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에 배치된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이 있음

나. 평가

■ 현재 건강증진정책의 주요 단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이며, 학교나 사업장의 경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 학교와 직장보건의 경우 건강증진사업의 총괄부서가 학교는 교육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관할하에 있음
- 건강증진사업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외에 정부 내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의료와 시민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⁷⁾

- 고용노동부의 건강사업은 작업환경 개선 및 그에 관련된 질병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
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줄이는 건강생활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대상 건강증진 사업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원 마련이 어
려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이를 통한 민간부문의 건강증진사업 참여 확대가 요구됨
 - 현재 민간기업의 건강증진사업 참여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준에 있음
 - 건강증진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계하는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전략이
미흡함
 -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도 공중보건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4. 직장인 건강과 보험



- 직장인은 보험의 주요한 수요계층임
 - 건강 관련 종목인 질병보장, 실손, 사망보험에서 화이트칼라의 보험가입률이 높음

7)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표 3〉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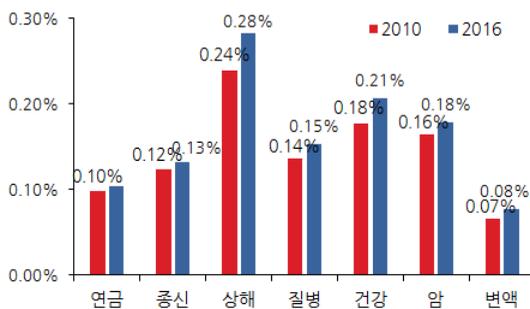
특성별	표본 수	질병보장보험	실손의료보험	사망보험	재해상해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간병보험	어린이보험	생보 전체 가입률	
전체	(2,200)	63.4	26.5	18.7	15.7	12.4	5.0	4.2	1.9	1.5	78.2	
직업	화이트칼라	(580)	64.8	33.6	27.8	17.6	17.8	6.9	5.2	0.7	1.0	85.7
	블루칼라	(611)	62.0	24.2	14.2	13.7	12.9	3.1	4.6	2.6	1.5	75.8
	농·임·어업	(95)	45.3	7.4	15.8	10.5	2.1	0.0	0.0	2.1	0.0	53.7
	자영업	(396)	71.5	29.0	25.0	17.4	12.6	6.6	2.0	2.5	0.8	86.1
	주부	(409)	67.2	22.7	10.3	16.6	9.0	5.6	6.1	1.7	3.4	75.8
	은퇴자	(19)	26.3	10.5	10.5	5.3	0.0	0.0	0.0	5.3	0.0	36.8
	학생	(59)	33.9	27.1	6.8	8.5	0.0	1.7	1.7	0.0	3.4	57.6
	무직/기타	(31)	41.9	19.4	3.2	19.4	3.2	3.2	0.0	6.5	0.0	54.8

자료: 보험연구원, 2017 보험소비자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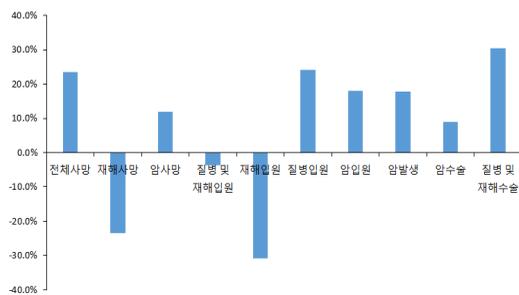
■ 민영건강보험은 다른 보험종목과 비교해서 사망사고율의 증가가 큰 편이며, 질병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건강보험(상해, 질병, 건강, 암)의 사망사고율 증가가 연금, 종신, 변액보험과 비교해서 큰 편임

〈그림 2〉 보험종류별 사망사고율 변화(2010, 2016)



〈그림 3〉 민영건강보험 담보별 사고발생 건수 변화율 (2010~2016)



주: 담보별 사고발생 건수 변화율은 2010년 대비 2016년 증감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각 연도

- 민영건강보험의 담보별 사고발생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해로 인한 사고 건수(사망과 입원 건수)는 감소한 반면, 암과 질병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증가하였음

- 한편, 근로자의 상해와 질병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체가 가입하는 직장인 단체보험에서도 질병담보의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해보험의 손해율은 FY2010년 64.7%에서 CY2015년 67.6%로 소폭 상승한 반면, 단체 상해보험의 손해율은 2010년에는 52.8%였던 것이 2015년 86.2%로 30%p 이상 급격히 상승하였음⁸⁾
 - 단체보험 중 가입규모가 가장 큰 공무원 단체상해보험의 2015년 손해율은 79.7%였는데, 위험담보별 손해율을 보면 상해보다는 질병에 의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남
 - 종합의료실비(2,691.2%), 질병의료실비(99.3%), 상해의료실비(68.4%) 순임
- 건강리스크 증가에 대응하여 직장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에서 보험금 지급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종업원 후생복지의 하나인 직장인 단체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사망을 보상했지만, 최근에는 질병위험과 실손의료비 보장으로 확대되고 있음

5. 향후 과제



- 산업보건의 패러다임이 '직업병 예방'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 전통적으로 사업장 보건의 광물, 건설,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서비스 업종의 증가, 근로자의 고령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과 함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 근로자의 주요한 질병인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 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또한 사무직, 서비스업과 감정노동의 증가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위험이 커가고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8) 단체상해보험의 손해율은 보험개발원이 발간하는 손해보험통계연보(2016)의 단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저자가 직접 계산한 값임. 단체안심상해(711), 신종단체상해(712) 등 29가지 단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계산함

- ■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은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장 단위의 건강증진정책이 요구됨
 - 종업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문화를 확산 시키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건강증진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다른 인구집단보다 사업체 차원의 건강증진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음

- ■ 현재 보험산업은 개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데만 머무르고 있으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 정부와 지자체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업과 보험회사들 간의 직원 대상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다양한 방안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비교적 자원마련이 용이한 대기업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갈 수 있을 것임 kiri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조용운 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

- 실손의료보험이 범국민적 보험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보험금 청구체계는 피보험자가 건건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과거 시장 형성 단계에 도입된 체계 그대로임
 - 2018년 상반기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77.3%가 가입함
 - 현재의 체계는 설계사(52.2%) 대리 청구, 팩스(22.1%), 직접 방문(13.6%) 등 단순 업무에 청구자의 불편과 시간 소요를 초래하고 있음
-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 사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0세 이상 피보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을 입원 방문한 횟수는 100명당 7회, 외래는 100명당 95회, 약처방은 100명당 98회임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이 입원의 경우 4.1%, 외래 14.6%, 처방약 20.5%에 이룸
 - 미청구 이유는 90.6%가 금액이 소액이어서, 5.4%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실제로 피보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건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수작업으로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편함과 시간소모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청구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계약 하에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계약이 필요하므로 대중화가 어려움
- 미청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험금이 소액이기 때문이므로 미청구 사례 발생을 방지 하면서 효율적인 청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청구 체계의 개선이 있더라도 체계 구축비용, 운용비용, 행정비용 등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체계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전산체계 구축비용 최소화가 필요함

1. 검토배경



- 7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할 수 있음¹⁾
 -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0세 이상 성인 남·여 77.3%가 가입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함²⁾

〈표 1〉 연령별 실손의료보험 가입 실태

(단위: 명, %)

구분	전체			연령별 가입률				
	응답 수	가입자 수	가입률	2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2,440	1,886	77.3	81.8	85.9	81.5	63.6	22.5
남	1,214	937	77.2	80.3	83.9	82.3	65.0	19.0
여	1,226	949	77.4	83.5	87.9	80.7	62.4	26.3

주: 총 가입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39세 35.8%, 40~59세 44.2%, 60~69세 19.5%, 70세 이상 0.5%임
 자료: 보험연구원(201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함

- 많은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등의 경우와 비교하면 빈번히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런데 현재의 보험금 청구체계는 피보험자가 건건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해야 하는 초창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요양기관은 많은 증빙서류를 종이문서로 발급해야 하는 비효율성, 보험회사는 증빙서류를 요양기관과 별도로 수작업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감내하고 있음
- 본고는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소비자 불편 실태를 조사하고 그동안 제시해 온 실무적으로 실현 가능한 소비자 불편 경감 및 산업 효율화 방안을 재정리하고자 함

1) 본고는 2018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미청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여 2,440명을 면접 조사하였음. 조사기관은 코리아리서치임
 2) 2014. 12월 말 3,082만 건, 2015. 12월 말 3,266만 건, 2016. 12월 말 3,654만 건 가입함(한국신용정보원)

2.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체계



■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 체계임³⁾

- 첫째 단계, 요양기관이 본인부담진료비를 산정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함
- 둘째 단계, 피보험자가 본인부담진료비 전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함
- 셋째 단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본인부담진료비를 상환 받는 체계임
 -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함. ① 피보험자가 의료이용 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통보,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구비해야 할 서류를 통지하고 피보험자는 필요한 구비서류⁴⁾를 준비하여 대리인(설계사, 가족 등),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접수, ③ 보험회사는 보상 여부 결정, 사고내용 확인 또는 조사, 지급보험금 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금액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본인부담진료비)을 기초로 결정함

■ 이와 같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체계는 피보험자를 번거롭게 하고 피보험자의 시간을 소모하게 함

- 설계사(52.2%)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13.6%)하는 등 단순 업무에 청구자의 시간 소요를 초래함
- 피보험자는 여러 청구 건을 모아 한꺼번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즉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 있음
-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표 2〉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방법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설계사	이메일·스마트폰	팩스	직접 방문	기타
전체	272	52.2	22.4	22.1	13.6	8.5
남	133	48.9	24.8	23.3	12.0	7.5
여	139	55.4	20.1	20.9	15.1	9.4

주: 여러 번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응답 가능함
 자료: 보험연구원(201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함

3) 조용운·김경환·김미화(2014),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 협력방안」, 보험연구원

4)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진료비상세내역서, 영수증 등임

■ 또한,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증빙서류 처리업무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효율성을 저해함

- 요양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많은 실손의료보험 환자에게 증빙서류를 종이문서로 발급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접수된 청구서류 및 증빙서류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요양기관과는 별개로 많은 데이터를 전자 입력하고 있음

3.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의료이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0세 이상 피보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을 입원 방문한 횟수는 100명당 7회임
- 동 기간 동안 외래 방문 횟수는 100명당 95회이고, 약처방 방문 횟수는 100명당 98회임

〈표 3〉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치료목적 요양기관 방문 실태

(단위: 명, 회)

구분	입원 방문 횟수		외래 방문 횟수		약처방 방문 횟수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25	0.07	1,793	0.95	1,842	0.98
남	71	0.08	862	0.92	814	0.87
여	54	0.06	931	0.98	1,028	1.08

주: 1) 방문 횟수는 피보험자가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요양기관을 방문한 횟수임

2) 외래의 경우 피보험자별 큰 금액 순으로 4건, 약국의 경우 3건을 기준으로 하여 미미하지만 과소 조사 가능성이 있음
 자료: 보험연구원(201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함

■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건의 많은 경우는 소액 이어서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외래의 경우 1만 원 이하가 87.7%, 약 처방의 경우 8천 원 이하가 93.4%를 차지함

〈표 4〉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영수증 금액 분포 (공제액 차감 전)

(단위: %)

구분	입원 (N=3)		외래 (N=799)			약처방 (N=709)		
	3만 원 이하	3만 원 초과	1~1.5만 원 이하	1.5~2만 원 이하	2만 원 초과	8천 원 이하	8천 원 ~ 2만 원 이하	2만 원 초과
전체	66.7	33.3	6.9	1.8	3.6	93.4	5.4	1.3
남	100	0.0	8.5	1.9	5.2	91.5	6.7	1.8
여	0.0	100	5.5	1.6	2.3	95.0	4.2	0.8

- 주: 1) 외래의 경우 피보험자별 큰 금액 순으로 4건, 약국의 경우 3건을 기준으로 함
- 2) 의료이용을 하였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을 기준으로 작성함
- 3) 표준실손의료보험의 외래 공제액은 '병의원 중별로 1, 1.5,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임
- 4) 표준실손의료보험의 약처방 공제액은 8천 원과 20% 중 큰 금액임
- 5) 표준실손의료보험의 입원 표준형의 경우 공제금액은 없고 20%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6)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은 30만 원 공제액이 있고, 통원은 3만 원 공제액이 있음

자료: 보험연구원(201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함

■ 실손의료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입원의 경우는 4.1%, 외래의 경우는 14.6%, 약처방의 경우는 20.5%가 미청구한 것으로 조사됨.

〈표 5〉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율 (공제액 차감 후)

(단위: %)

구분	입원	외래(1.5만원 공제 후)	약처방(8천원 공제 후)
전체	4.1	14.6	20.5
남	4.7	18.3	24.6
여	3.3	11.2	16.5

- 주: 1) 입원 미청구율=입원 미청구 건수/피보험자의 입원 보험금 청구권 발생건수
여기서, 입원 보험금 청구권 발생건수=입원 보험금 청구건수+미청구 건수
- 2) 외래 미청구율=1.5만 원 초과 미청구 건수/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발생건수
여기서, 외래 보험금 청구권 발생건수=외래 보험금 청구 건수+1.5만 원 초과 미청구 건수
- 3) 약처방 미청구율=8천 원 초과 미청구 건수/피보험자의 약처방 보험금 청구권 발생건수
여기서, 약처방 보험금 청구권 발생건수=약처방 보험금 청구 건수+8천 원 초과 미청구 건수
- 4) 외래의 경우 피보험자별 큰 금액 순으로 4건, 약국의 경우 3건을 기준으로 하고 공제액을 1.5만 원으로 하여 미미하지만 과소추계 가능성 있음
- 5) 입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하고 있다면 공제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과대추계 가능성 있음

자료: 보험연구원(201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함

■ 보험금 미청구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피보험자가 금액이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피보험자가 90.6%를 차지함

〈표 6〉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이유

(단위: %)

구분	응답 수	미청구 이유			
		소액이어서	번거로워서	시간이 없어서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이 지출되어서
전체	372	90.6	5.4	2.2	1.9
남	183	92.9	3.8	1.6	1.6
여	189	88.4	6.9	2.6	2.1

자료: 보험연구원(201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함

4. 대책



■ 실제로 피보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건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수작업으로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편함과 시간소모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청구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계약 하에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 보험회사와 전 요양기관 간의 계약이 필요하므로 이 방법은 행정비용이 과다할 수 있고 대중화에 어려움이 있음
- 전체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청구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미청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험금이 소액이기 때문이므로 미청구 사례 발생을 방지 하면서 효율적인 청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청구 체계의 개선이 있더라도 체계 구축비용, 운용비용, 행정비용 등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체계는 피보험자 불편과 시간소모 및 미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음⁵⁾
 -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청구절차에 따른 피보험자의 불편 및 시간소모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금 미청구 건이 발생하지 않음
 - 요양기관의 종이서류 발급 및 보험회사의 수작업 업무가 대폭 줄어들 것임
 -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체계 구축비용 최소화가 필요함 **kiri**

5) 조용운·김경환·김미화(2014)

2018 고령화리뷰 모음집

kiri 이슈 분석

연금

1.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의사결정 체계 및 시사점 | 류건식
2. 개인연금 지급형태가 기초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 최장훈
3.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과제 | 류건식
4. 연금보험의 비과세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 | 강성호
5. 주요국의 리스크 중심 퇴직연금감독동향과 시사점 | 류건식
6. 연금 선진국의 위험자산으로 투자 전환사례와 함의 | 강성호 김혜란
7. 일본 디폴트옵션제도 시행과 시사점 | 이상우
8. 영국 Master Trust 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과 함의 | 강성호 김혜란
9. 퇴직연금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동경
10. 일본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11. 미국 퇴직연금의 TDF 활용·현황 및 함의 | 최장훈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의사결정 체계 및 시사점

- 미·일 등을 중심으로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미국 등 선진국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투자위원회를 기업에 설치하고, 목표수익률 및 투자리스크 허용도 등을 제시한 투자정책서 작성을 기업에게 의무화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함. 이는 적립금 운용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용실패 우려로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중장기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우리나라도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근퇴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투자위원회 설치, 투자정책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감독당국은 OECD 기준에 부합한 표준 투자 정책서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수탁자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할 것임

■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 투자(적립금 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함

- 투자 의사결정체계는 회사의 적립금 운용 담당자 개인 의사결정보다는 노·사가 합의한 정형화된 자산운용 지침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함
 -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의 최종지급책임이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받은 권리(급여수급권)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적립금운용 결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있음

■ 투자 의사결정체계는 기업의 적립금 운용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용실패에 대한 우려 등으로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운용(중장기운용)을 회피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입됨

- 또한 OECD에서 연금자산 운용은 연금제도의 핵심 업무이므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시스템에 의해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임¹⁾

1) OECD(2015), *OECD 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 참조

- 미국 등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어떠한 프로세스(체계)를 통해 운용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에게 노·사 및 운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사내에 설치·운영하도록 함
 - 미국 등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전담하는 위원회(예: 투자위원회)를 사내에 별도 설치해 자산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은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일본은 기업연금법, 영국은 연금법(Pension Act)에서 투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규정함
 - 투자위원회는 사용자 및 근로자 동수로 구성되거나(미·일 등) 자산운용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형태(영국 등)로 운영됨
 - 투자위원회는 수탁자와 밀접한 이해관계 없는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투자전략, 제도자산 운용과 관련된 전반 업무에 대해 의사결정하고 있음

- 둘째, 사용자에게 적립금 운용 목적, 목표수익률 설정, 투자리스크 허용도, 운용성과평가 등이 제시된 “투자정책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자산운용지침에 해당하는 투자정책서는 일반적으로 총칙(운용원칙 등), 투자정책(목표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전략적 자산배분), 리스크관리정책, 성과평가 및 보상 등으로 구성됨
 - 미국 등 대부분 국가는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기초해 작성함
 - 투자정책서 작성 의무화는 기업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종업원 500인 이상, 일본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작성하도록 규정함

- 셋째, 미국 등은 수탁자에게 자산운용 관련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범위를 엄격히 부여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장기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임
 -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수탁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담당자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함²⁾

2) 투자계획서 등에 수탁자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기업적립금운용 담당자의 원금손실 책임부담은 경감됨

- 적립금 운용 관련자에게는 수탁자로서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을 부과함
- 미국은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수탁자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중장기 상품중심으로 적립금이 운용됨³⁾
- 일본의 경우 운용자산에 대해 장기에 걸쳐 유지해야 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장기운용 상품 비율)을 제시하도록 규정함⁴⁾

■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가 미흡하고 기업 내 퇴직연금 담당자의 개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사례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⁵⁾

- DB형 퇴직연금 가입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⁶⁾, 투자의사결정 권한은 대부분 회사의 인사·재무담당직원에게 있고 투자위원회 등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운용한 기업은 1.2%에 불과함.
- 또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95.0%가 원리금보장상품이며 원리금 보장상품의 77.2%는 1년 이하 단기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임(〈표 1〉 참조)

〈표 1〉 원리금 보장 상품의 적립금 운용기간

구분	1년 이하	1~3년	3년형	3년 초과	금리연동형
금액(억 원)	655,018	36,686	86,430	25,547	44,325
비중(%)	77.2	4.3	10.2	3.0	5.2

자료: 금융감독원(2016. 12), “퇴직연금통계”

■ 따라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적립금 운용 의사결정체계 확립이 요구됨

- 먼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투자위원회 설치 및 투자정책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독당국은 OECD 기준에 부합한 표준 투자정책서를 사전에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기업현실을 고려해 투자정책서 작성의무화를 대기업부터 적용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수탁자와 근로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수탁자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키리**

3) 미국은 운용상품의 약 70%가 3년 이상 장기상품이며 일본은 3~5년 만기형 상품위주로 대부분 구성됨

4) 일본 확정급부 기업연금법 시행규칙 제83조 참조

5)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성과보수체계 단계적 도입을 위해 2018년 기간 중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사결정체계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임

6) 2014년 금융투자협회 설문조사 결과 참조



개인연금 지급형태가 기초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최장훈 연구위원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빈곤완화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자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함.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의 소득인정액이 연금으로 받을 경우 보다 낮아지므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이는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 저촉이 되므로 기초연금 제도는 개인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빈곤완화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 의결로 기초연금액이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임¹⁾

-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자 중 소득하위 70%임
- 지급액은 2018년 2월 기준 단독가구 최대 20만 6,050원(부부가구 33만 5,920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됨
 -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감액됨²⁾
-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 의결로 기초연금액이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임³⁾
 -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46.5%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기초연금을 향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2. 22)

2) 보건복지부 웹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참조 바람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2. 22)

■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분포를 고려하여 산출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함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됨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84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액수와 기타소득을 합한 액수임
 -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하고 부채를 다시 차감한 금액에 4%를 적용하여 산출함
- 선정기준액은 2018년 기준 단독가구 월 131만 원, 부부가구 월 209만 6천 원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근로소득} - 84\text{만 원})\} + \text{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대차소득으로 구성되며 연금소득은 재산소득에 포함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 원}) - \text{부채}] \times 0.04 \div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개인연금의 지급형태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일시금이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이 연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개인연금 적립액이 1억 원인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33만 원이 됨⁵⁾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액은 기타소득(재산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 개인연금 적립액 1억 원을 10년 확정연금으로 받을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83만 원으로

4)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참조 바람

5)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에 4%를 적용하므로 $1\text{억} \times 0.04 \div 12 = 33\text{만 원}$ 이 됨(만일 다른 금융재산이 없다면 $(1\text{억 원} - 2,000\text{만 원}) \times 0.04 \div 12 = 27\text{만 원}$ 이 됨)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50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⁶⁾

-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개인연금 적립액 1억 원을 소유한 가구가 이 적립액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 월 127만 원 ~ 176만 원인 부부가구의 경우 개인연금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됨⁷⁾

■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분 아니라 개인연금과의 관계 등 다양한 제도 간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가 연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과 모순된다고 할 수 있음
- 연금으로 받을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검토될 필요 있음 *kiri*

6) 월 기타소득은 $(1억 원 \div 10) \div 12 = 83만 원$ 이 됨(이자율은 고려하지 않았음)

7)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27만 원보다 낮거나 176만 원보다 높을 경우에는 개인연금 적립액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기초연금 수급권에 차이가 없음. 전자의 경우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모두 받을 수 없음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어도 퇴직연금 미도입 중소기업의 약 34%는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에 소극적임. 통계청의 산업별 도입 실태 결과, 산업 간에 퇴직연금 도입률의 격차가 매우 크고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은 저조한데 주목하여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을 반영한 추가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별로 퇴직연금 미도입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조사해 원인별 세부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연금재원 소실을 우려하여 과거 근로기간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정부는 2022년을 목표로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의무화 조치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⁸⁾
 - 주요내용은 제도전환 이후 적립금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주어진 기간 내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의무화 조치에도 퇴직연금 미도입 중소기업의 약 34%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에 소극적임⁹⁾

■ 이러한 의무화조치 실효성 문제는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수준과 퇴직연금 도입의 장애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의무화를 추진한 데에 기인함

8) 한정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고용노동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함

9) 중소기업을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설문조사한 결과임

- 근퇴법 개정안은 확일적으로 기업규모별(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종업원 300인~100인 기업, 100인 이하 기업순)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음
-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실태 결과(2016년),¹⁰⁾ 금융보험업의 도입률¹¹⁾은 60.0% 인데 반해, 숙박음식업은 6.2%, 부동산 임대업은 11.3%에 불과해 산업간 도입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전체 산업(18개 산업) 중 도입률이 30% 이상 해당하는 산업은 광업 등 7개 산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산업(11개 산업)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업(20.5%), 운수업(20.6%), 숙박음식업(6.2%), 부동산임대업(11.3%), 예술여가서비스업(17.9%) 등은 평균(26.9%)이하의 도입률을 보임(〈표 1〉 참조)

〈표 1〉 산업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실태

도입률(%)	해당 산업
45~60	금융보험업(60.0%)
30~45	광업(41.7%), 제조업(37.6%), 하수처리환경복원업(39.7%), 운수업(30.2%), 교육서비스업(31.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2.6%)
15~30	전기가스수도업(28.1%), 건설업(20.5%), 도소매업(20.6%), 출판영상서비스업(28.1%), 전문과학기술업(29.7%), 사업지원서비스업(27.6%), 공공행정(27.8%), 예술여가서비스업(17.9%)
0~ 15	농림어업(12.8%), 숙박음식업(6.2%), 부동산임대업(11.3%)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2017) 등에 기초 작성

- 또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산업이 사업장 규모(종업원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을 고려한 도입률 제고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표 2〉참조)
 - 특히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은 가장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10) 2017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퇴직연금 통계(2016년)를 기초로 조사·분석함

11) 퇴직연금 도입률은 도입사업장/도입대상 사업장 × 100임

〈표 2〉 사업장 규모별 해당 산업 분류 현황

사업장 규모	해당 산업
100인 이상	전기가스수도업(162명), 금융보험업(237명)
50~99인	사업지원서비스업(52명)
30~49인	출판영상서비스업(35명)
10~29인	광업(26명), 제조업(22명), 하수처리환경복원업(14명), 건설업(11명), 운수업(25명), 전문과학기술업(13명), 공공행정(24명), 교육서비스업(10명), 예술여가서비스업(22명)
10인 미만	농림어업(8명), 도소매업(9명), 부동산임대업(9명), 숙박음식업(9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명)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2017) 등에 기초 작성

■ 이처럼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률 차이가 매우 큰 점에 주목할 때,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일한 기업규모(예: 중소기업)에 속하더라도 산업별로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이 달라져 도입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퇴직연금 미가입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 자금 부담(27.5%), 근로자의 부정적 인식(20.2%), 경영진 무관심(20.0%), 퇴직연금제도 지식 부족(13.9%), 도입절차 및 운용 역량 미흡(8.0%)이 주된 장애요인으로 나타남¹²⁾

■ 따라서 퇴직연금 의무화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별로 퇴직연금 미도입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해 원인별 세부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금 부담이 주된 미도입 원인인지, 아니면 제도 인식 부족이 미도입 원인인지 등을 산업별로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 중 퇴직연금의 도입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차별화 대책이 강구되어 할 것임
- 연금재원 소실을 우려하여 과거 근로기간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KIRI

12) 2016년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연금 미가입 중소기업대상(N=300명)으로 퇴직연금도입 장애요인을 조사결과임



연금보험의 비과세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

강성호 연구위원

최근 정부는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준비를 이유로 장기 저축성보험(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할 바 있음. 이 중 월적립식(월납 150만 원 한도) 연금보험에 대한 과세가 금액(합산보험료)에 의해 서라기 보다 원인계약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는 추가납입제도(추납)의 활성화 한계 및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 등으로 연금보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 (15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금액기준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정부는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준비¹⁾를 이유로, 장기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일시납에 대해 축소하고 월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신규로 적용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개정으로 '17년 4월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연금보험에 대해 일시납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월납보험료는 한도가 없었다가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²⁾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 연금보험의 월납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금액(합산보험료)에 의해서라기 보다 원인계약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³⁾

- 원인계약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연금보험 계약 체결로 합산보험료가 월납한도(150만 원)를 초과하게 될 때 한도 초과를 유발한 계약으로 정의함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28),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 31),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참조

2)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함

3) 정원석(2016),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포커스,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 현행 월적립식⁴⁾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 15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초과 시 해당 계약의 전체 납입금에 대해 과세함(〈표 1〉 참조)⁵⁾
 - 예를 들어, 월 50만 원(계약A)과 월 100만 원(계약B)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계약자가 이후 ‘계약A’에 추가로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 ‘계약A’는 월 60만 원의 상품이 되며, 원인계약인 ‘계약A’의 전체 금액(월 60만 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됨
 - 위와 동일한 계약 상황에서 반대의 경우(‘계약B’에 추납금 10만 원을 납입)에는 원인계약인 ‘계약B’의 전체 금액(월 110만 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됨
 - 이는 가입자 기준에서 전체 납입보험료가 동일하더라도 과세대상 금액(전자는 60만 원, 후자는 110만 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표 1〉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초과에 따른 과세형평성 분석 사례

구분	계약형태	계약A(원인계약)+계약B	계약A+계약B(원인계약)
비과세 한도 내 (원인계약 없음)		- 월납 150만 원 비과세: 월 50만 원(계약A) + 월 100만 원(계약B)	
추가납입보험료 (추납)		- 원인계약이 계약A인 경우: 계약A에 추납 10만 원	- 원인계약이 계약B인 경우: 계약B에 추납 10만 원
과세 및 비과세 금액		- 월 합산보험료: 160만 원 - 과세대상 월납액: 60만 원 (계약A+추납) - 비과세대상 월납액: 100만 원 (계약B)	- 월 합산보험료: 160만 원 - 과세대상 월납액: 110만 원 (계약B+추납) - 비과세대상 월납액: 50만 원 (계약A)

- 한편, 개정 전에는 연금보험에 대한 월납한도가 없어 금액기준이든 원인계약 기준이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었음

■ 또한 원인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추가납입제도(추납)의 활성화 한계 및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 등 연금보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최근 금감원 등은 보험료 추납 활용 시 수익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⁶⁾ 원인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금보험에 대한 추납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일반적으로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낮게 적용되어(보험료 2% 수준의

4)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3항 2호에 의하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의 조건은 납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매월 균등보험료를 납입하되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하고, 기본 및 추가납입 월보험료의 합산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함

5) 생명보험협회(2017), 저축성보험차익 비과세 세법개정 주요내용, ‘2017월간생명보험’ 참조

6) 금감원 보도자료(2016. 8. 24), “금융꿀팁 200선 - ③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계약관리비용만 부과)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함

- 또한 추가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보유 상품에 대한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추가 가입 및 납부가 줄어들 수 있음
 - 기 가입한 계좌가 1개 이상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최소 2개 이상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월납 70만 원 계좌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월납 1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80만 원과 20만 원 계좌로 분리하여 두 건으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연금저축 등에서는 원인계약 기준이 아닌 금액(합산보험료)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연금저축의 경우 합산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부담) 기준으로 최대 연간 700만 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이 경우 몇 개의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 IRP)가 있더라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연금보험과 같은 과세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연간 납부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 납부로 7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700만 원 초과분만 세액공제되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15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금액기준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동일 수준의 합산보험료에 대해 과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로 인한 가입유인 약화 등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임 kifi



주요국의 리스크 중심 퇴직연금감독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최근 OECD 주요국가들은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연금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중심 퇴직연금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퇴직연금 운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리스크기준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리스크 평가체계 시스템 구축, 상시보고체계 도입 등 리스크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해외의 리스크 중심 감독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수급 권보호를 위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정을 마련하고 연금제도 운영 위법사항 발견 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 투척하는 상시보고체계 도입과 연금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중심 연금감독(Risk Based Supervisors)으로 전환함

- 호주 등은 저성장·저금리 현상으로 인한 연금자산가치 하락과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심화 등으로 리스크 중심 감독을 추진함
 - 리스크 중심 감독은 연금 운용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통제하여 안정적 연금재정이 확보 되도록 하는 제반 감독을 의미함
- 국제연금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Pension Supervisor : IOPS)는 운용 관련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함¹⁾

■ 리스크 중심 감독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리스크기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며 리스크 평가 및 보고체계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²⁾

1) IOPS의 퇴직연금감독원칙(Principles of Private Pension Supervision 2014)에 의하면 연금감독기관은 리스크 중심 감독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제시함. 리스크 중심 감독의 세부내용은 원칙 5.1~5.9 참조
 2) 각국마다 리스크감독 차이가 다소 존재하지만 대체로 리스크 중심 감독은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리스크 중심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향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
-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호주 등은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절차 및 계획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 영국은 법령에서 규정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예: 연기금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수탁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
 - 멕시코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에 기초해 수탁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함
 - 법적으로 운영 및 재무리스크관리를 의무화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 (리스크기준 건전성규제) 연기금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기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이 이루어짐
 - 부실 운용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금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소적립비율(자산/부채)을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영국은 104% 이상, 네덜란드는 105% 이상으로 최소적립비율을 설정함³⁾
 - 또한 최소적립비율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건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함
 - 이자율, 신용, 환율, 장수리스크이외에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추가자본(Solvency Buffer)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 네덜란드는 지급능력 버퍼 25%를 고려해 적립비율이 1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함
- (리스크 평가시스템 구축) 연금제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호주는 금융기관의 파산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체계인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시스템을 운용함

3) 영국 등 유럽은 적립비율(자산/부채)중심의 건전성 규제, 주식투자 등 운용리스크를 고려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

- PAIRS 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의 파산확률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정도를 평가함
 - 호주의 리스크감독시스템 SOARS(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에서는 PAIRS에서 산출된 리스크정도(리스크등급)와 영향을 고려하여 감독수준을 결정함
 - 감독수준은 정상(임점검사시행), 검사(검사강화), 강제개선(개선방안요구), 구조조정(영업 활용제한 및 이사교체) 등 4가지로 구분함
- (상시 보고체계 도입) 연금재정의 건전성 문제나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 시 감독당국에 신고·보고하는 의무를 수탁자에게 부여함
- 영국은 사용자, 연금관리인 등 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whistle blowing)를 부과함
 - 감독규정에서는 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를 운용하도록 규정함
 - 덴마크는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를 운용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기금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감독당국에 보고함⁴⁾
 - 녹색등은 적절한 건전성 상태, 황색등은 건전성문제에 직면한 리스크가 있으며 적색등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리스크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리스크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동향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⁵⁾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고려한 퇴직연금 운용리스크관리·감독 규정이 부재함
 - 또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운용관련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는지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준도 없는 상황임
 - 국가간 퇴직연금 지배구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사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4) 스웨덴은 2006년 1월부터 연기금에 대한 새로운 감독방식인 신호등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5) 계약형보다 기금형에서 리스크 중심 감독이 보다 요구되므로 기금형제도 도입 이전에 리스크 중심 감독 문제 검토가 절실함

■ 따라서 연금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 퇴직연금 운용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기준(모범기준) 설정과 리스크감독계획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리스크관리 기준(리스크관리 개요, 리스크관리 측정, 리스크관리 감시)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독당국에게 보고토록 하는 신호등 체계의 도입 검토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하고 감독에 반영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kifi



연금 선진국의 위험자산으로 투자 전환사례와 함의

강성호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노후소득 감소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다양한 운용 전략이 시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금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적연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례는 시사하는바가 큼. 덴마크는 주식과 대체투자 등의 비중 강화를 통해, 네덜란드는 신확정기여제도법(WVP)의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로 전환 중에 있음. 이러한 연금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투자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상품으로 부상되고 있는 TDF 투자 상품 개발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바가 큼

-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노후소득의 감소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해 다양한 자산 운용 전략이 시도되고 있음
 - 그 동안 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특성상 안전성 중심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 저금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가입자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자산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연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적연금제도가 최근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되고 있음¹⁾
 - Mercer(2017)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금 평가에 따르면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을 기준으로 볼 때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종합지수는 각각 78.9, 78.8로 1, 2위를 기록하여 연금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음²⁾

1) Anne G. Balter et al.(2018), "The Move Towards Riskier Pension Products in the World's Best Pension Systems"

2) 한국은 적정성 46.9점, 지속가능성 46.8점, 완전성 47.9점으로 전 항목 D를 받음(Mercer(2017), Melbourne Mercer

-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GDP 대비 사적연금의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저금리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자산으로 투자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덴마크와 네덜란드³⁾의 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금 비율은 각각 209.0%, 180.3%로 OECD의 평균 83.0%와 비교할 때 사적연금 중심 국가임⁴⁾
- 덴마크의 사적연금은 최소금리(0~4.5%)를 보증하는 안전자산 연금상품에서 무보증 시장수의 상품인 주식과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음⁵⁾
 - 덴마크의 사적연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지급 방식에 따라 종신연금, 유기연금, 인출형연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연금자산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57%, 28%, 15%임
 - 종신연금은 생애기간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되고, 유기연금은 10~25년의 기간에 걸쳐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인출형연금은 은퇴 후 15년 내에 일시금 또는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됨
 - 종신연금은 유기연금, 인출형연금에 비해 최저금리 보증을 통해 최저 연금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해당 연금상품은 주로 안정적인 자산에 주로 투자되었음
 - 이러한 상품은 연금급여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가능하게 하나 낮은 투자수익률로 연금지급액도 낮아진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최저보증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연금가입자는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보증 시장금리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무보증 시장금리 상품의 준비금 비중은 2003년 약 4%에서 2015년 약 37%로 증가하여 왔으며, 동 상품의 자산구성을 보면 주식과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음⁶⁾
- 네덜란드는 2016년 9월 신확정기여제도법(Wet Verbeterde Premiereregeling: 'WVP')⁷⁾의 도입

Global Pension Index)

- 3) 네덜란드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대략 5:5로, 2013년 말 기준으로 공적연금이 54%, 퇴직연금이 40%, 개인 연금이 6%를 구성되어 있음(Anne G. Balter et al.(2018))
- 4) OECD(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 5) FINANSTILSYNET(2017), "Pensions when the guarantees disappear-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product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protection?"
- 6) 2016년 1분기 말 기준 무보증 시장수의 상품의 자산구성은 주식(37%), 채권(49%), 부동산(6%), 대체투자(8%)인 반면, 보증 평균수의 상품의 자산구성은 주식(22%), 채권(66%), 부동산(6%), 대체투자(6%)임
- 7) 새로운 법은 DC형 연금자산의 변액형연금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DB에서 DC로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음

으로 사적연금이 고정형연금(Fixed annuity⁸⁾)에서 변액형연금(Variable annuity⁹⁾)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기대수명 증가로 일부 연기금의 적립률¹⁰⁾이 100% 이하로 감소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단계(decumulation phase)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적립률이 100%이하로 떨어질 경우, 임금상승률을 보전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권고하는 조치로 나타남
 - 동 법 도입 이전에는 연금수급자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자산을 고정형연금으로 수급해야 만 했으나, 도입 이후 이를 완화하였고 이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됨에 따라 수익의 변동성은 크나 기대연금급여액은 고정형연금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¹⁾
- 신확정기여제도법 도입 이후 금융기관들은 변액형연금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상품설명서에 첫 연금급여액 및 시나리오별 기대연금액을 다양하게 제시함
 - 알리안츠는 변액형연금에 대해 연금자산의 최대 31%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고정형연금(최소수익 보장)과 혼합된 하이브리드형을 제공하며, 은퇴 후 20년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나, 장수리스크에 대한 담보가 없고 금융충격 완화기능(smoothing shocks)이 있는 상품을 제공함
 - 델타로이드는 리스크 상황에 따라 15%는 방어적 위험자산, 30%는 중립적인 자산, 45%는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하이브리드 기능이 있어 최소수익 보장도 하고 있으며, 은퇴 후 27년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장수리스크를 담보하고 5년 내에 금융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함¹²⁾

8)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을 의미함

9)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금액 변동은 크나 고수익이 기대되는 연금상품을 의미함

10) 기금적립률이란 연금부채(지급액) 대비 연금자산(적립액)의 비율을 의미함

11) Anne G. Balter et al.(2018), "The Move Towards Riskier Pension Products in the World's Best Pension Systems"

12) 85세 이후에 9년 이내에 위험자산을 0%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가입시점에서 연금자산의 80%, 70%, 55%를 고정형 연금을 구입한 경우, 나머지는 모두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함

〈표 1〉 네덜란드 변액형연금 상품의 예시

구분	위험자산 투자한도 (%)	하이브리드옵션 ¹⁾	위험투자 기간 ²⁾	장수리스크 담보여부	금융충격 완화기능 ³⁾ (smoothing shocks)
Allianz	0~31	있음	20년	무담보	없음
Aegon	66	없음	거의 없음	무담보	없음
Delta Lloyd	15, 30, 45	있음	27년	담보	5년
Nationale Nederlanden	35	없음	85세	담보	없음

주: 1) 변액형연금에 고정형연금의 특성이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기능의 존재여부를 의미

2) 은퇴 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3) 금융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

자료: Anne G. Balter et al.(2018)

■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연금 선진국이 저금리, 고령화에 대응하여 투자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투자 방향과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 조치 마련의 필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퇴직 후 고령기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상당기간 허용하여 연금수급자의 연금 자산에 대한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상품으로 부상되고 있는 TDF(Target dated fund) 투자 상품 개발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큼
- 이와 관련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수급자)에게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용 시 우선적으로 수급권보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국가마다 사회 경제 및 제도적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kiri



일본 디폴트옵션제도 시행과 시사점

이상우 수석연구원

일본은 DC형 제도 가입 후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한 무관심계층 증가로 인하여 미래에 연금수익 구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함. 일본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DC형 자산운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이 실시하고, OECD가 권고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가입자에게 운용손실의 책임이 전가되는 디폴트옵션제도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도 일본 사례와 같이 상품개발 기준과 엄격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 일본은 우리나라¹⁾와 유사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²⁾을 개정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제도³⁾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함

- 일본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가입자가 자산운용 지시⁴⁾를 하지 않고 적립금을 방치하는 자산운용 무관심계층과 소극적인 원리금보장상품 선택계층⁵⁾이 증가하여 미래 퇴직급여의 수익구조⁶⁾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DC형 제도 가입자 중에서 가입 후 약 70%가 자산운용 지시 변경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자산운용을 해주기를 바라는 가입자가 약 29% 있으며, 전체 적립금의 약 55.2%(2017. 3 기준)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

1)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 및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자산운용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금융위원회(2018. 5),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개선방안(입찰재공고 제2018-09호))

2) 確定拠出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하 개정 DC법)

3) DC형 제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특정한 운용상품에 자동 가입하게 되는 운용 메커니즘임

4) 개정 DC법 제1조는 가입자 책임하에 운용 지시할 것을 명시함

5) DC형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투자 의사결정을 미루어 우선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한 후 오랜 기간 방치한 가입자를 지칭하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인 투자행동으로 간주하고 주목함

6) 格付投資情報center(R&I)(2018. 6. 28), “2017년도 DC형 가입자의 약 40%가 1%대 이하 운용수익률”

- 후생노동성은 DC법에서 명시한 사회·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DC형 가입자가 DB형이나 퇴직일시금의 급여수준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자산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 계층에 대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자산운용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에 행정지도로 허용해 오던 디폴트옵션제도를 법률을 개정하여 세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함

■ 디폴트옵션은 설정 여부가 기업의 자율이고, DC형 제도 가입자 중 운용 미지시를 대상으로 함

- 개정 DC법상 디폴트옵션 설정 여부가 기업의 자율이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연금규약에서 명시할 경우 가입자에게 하나의 디폴트옵션 운영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생김(제3조, 제23조의 2 관련)
- 디폴트옵션제도 설정 등 연금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후생노동성의 승인이 요구됨
- 설정 대상은 기업형·개인형 DC형 제도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운용 미지시자임
 - 이에 따라 퇴직일시금이나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이전한 운용 미지시자도 가능함

■ 디폴트옵션상품은 운용 미지시자에게 특정 기간과 최고 기간에 걸쳐 예고 후 자동적인 운영이 시작됨

- 해당 기업이 연금규약에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경우 먼저 운영관리기관은 개별 근로자에게 연금 가입 시 디폴트옵션상품 개요와 운용절차를 안내함
- 다음으로 기업의 부담금 납입 후 특정 기간(3개월 이상)이 경과하여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상품 선택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운용 미지시자에게 운용 지시권을 행사하도록 통지함
- 특정 기간 경과일로부터 최고 기간(2주)이 경과하여도 운용 지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자동 운영되기 시작함(제25조의 2 관련)

■ 개정 DC법상 운영관리기관이 기업주 등에게 제안하는 적격 디폴트옵션상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디폴트옵션 기준은 우선 DC형 제도 기존의 적립금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7) 개정 DC법에서 명시한 유예기간을 편의상 최고 기간으로 번역함

- 원리금보장상품 등 특정한 운용상품만 지정하거나 제외하지 않도록 상품이 개발되어야 함
- 또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⁸⁾에서 물가 및 기타 경제사정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⁹⁾에 대비하고, 수익 확보를 위해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기준을 포함함 (제23조의 2 관련)

〈표 1〉 후생노동성령에서 적격 디폴트옵션상품 기준

핵심 내용	주요 내용
운용 손실 대비	- 물가, 외환시장, 금리, 기타 경제적 변화(가격 변동, 신용변화 등)에 의한 손실 가능성(리스크)이 해당 가입자 집단 특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일 것
예상 수익과 손실과의 관계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일정한 수익 확보가 기대될 것 - 해당 가입자 집단에 필요한 수준의 예상 수익(수수료 등 비용 공제 후) 확보가 가능할 것 - 손실 가능성이 예상 수익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일 것
비용 범위	- 예상수익에 비해 운용수수료, 신탁보수, 기타 제반비용 합산금액이 과도하지 않을 것

자료: 일본 개정 DC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요약함

■ 개정 DC법은 최고 기간, 운용 지시 변경권, 설명의무 등의 가입자 보호장치를 명시하고 있음

- DC법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용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특정 기간과 운용 지시 최고 기간을 부여함
- 디폴트옵션상품 운영 시작 후 다른 운용상품으로 변경하는 운용 지시 변경권을 보장함
- 운용관리 기간 등은 노·사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야 함
- 기업주와 운영관리기관에게 디폴트옵션상품이 가입자 본인이 운용 지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가입자 본인 의사로 운용 지시하도록 권장, 운용 지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해야 함

■ 운영관리기관 등이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상품을 제시한 경우 추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추가 정보는 디폴트옵션에 관한 수익 예상 및 손실 가능성, 디폴트옵션상품 선정 이유,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임 (제24조의 2 관련)

8) 일본 사회보장심의회는 60세까지 계속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저연령기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다가 은퇴시점이 가까울 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생애주기형 상품(Life Cycle Type)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9) 금리·환율·가격변동·신용리스크 등이 예상됨(일본 사회보장심의회 보고서(2017. 6. 16))

〈표 2〉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정보제공 사항(개정 DC법 시행규칙)

핵심 내용	주요 내용
디폴트옵션 운용 시작 전	- 운용방법의 전체 구성에 관한 정보 - 연금규약에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고 결정한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시 가입자 본인이 운용 지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 디폴트옵션이 가입자 본인이 운용 지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
미운용 기간 중	- 적립금을 방치한 가입자에게 개인별 관리자산액 잔고와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할 필요성을 강조
디폴트옵션 운용 시작 후	- 디폴트옵션 가입 연월일, 특정 기간과 최고 기간, 디폴트옵션 가입 후 운용 손실·이익에 대하여 가입자 본인이 운용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 수수료 기타 제반 비용 및 부담방법, 기타 가입자가 요구하는 사항

자료: 일본 개정 DC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요약함

■ 일본의 디폴트옵션제도 법제화는 가입자의 자산운용 무관심 문제 등¹⁰⁾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DC형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에서 현행의 DC형 제도 가입자의 자산운용 무관심 문제를 방지할 경우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입자의 운용 지시권이 훼손되고 가입자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곤란할 수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교육을 통한 투자지식 함양과 함께 OECD의 DC형 제도 개선 로드맵 보고서¹¹⁾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미운용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검토 등의 자산운용제도 개선이 필요함

■ 우리나라 DC형 제도에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용손실의 책임이 가입자에게 전가 되는 디폴트옵션제도 특성을 주의하여 상품개발 기준과 엄격한 투자자 보호제도¹²⁾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품개발 기준 핵심은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분산투자 구조, 장기적인 관점에서

10) 현재 DC형 제도는 가입자의 91.4%가 운용 지시를 변경한 경험이 없고, 운용상품 수가 평균 2개 미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83.3%로 편중 운용하고 있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7. 18),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11) OECD(2012), *THE OECD ROADMAP FOR THE GOOD DESIGN OF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S*

12) 미국 연금보호법(2006)은 적격 디폴트상품(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에 자동 가입 시 운용 지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리턴 특성이 다른 운용상품을 3가지 이상 제공, 분기당 가입자가 연금자산 운용 지시를 행할 것, 충분한 교육 등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함

안정적인 퇴직소득이 확보될 수 있는 수익성, 일시적 운용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성,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는 비용 효율성 등임

- 투자자 보호제도 핵심은 가입자의 기본적 권리인 운용 지시권과 운용 지시 변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과 충분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임
 - 정보제공은 기본 정보 외에 추가로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지시할 것과 운용 지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운용 손실에 대한 가입자 책임 등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과 손실 가능성, 상품선정 이유, 제반수수료 등 디폴트옵션상품에 관한 사항임 Kiri



영국 Master Trust 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과 합의

강성호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영국은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규제의 도입으로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의 약 25%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이유에는 201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관련 사업체를 중심으로 자산 및 가입자 규모가 급증하였으나, 적합성 및 자본충분성 등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임. 이에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격성 검사 등으로 퇴출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가입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도 제도 변경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영국은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규제의 도입으로 'Master Trust 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의 약 25%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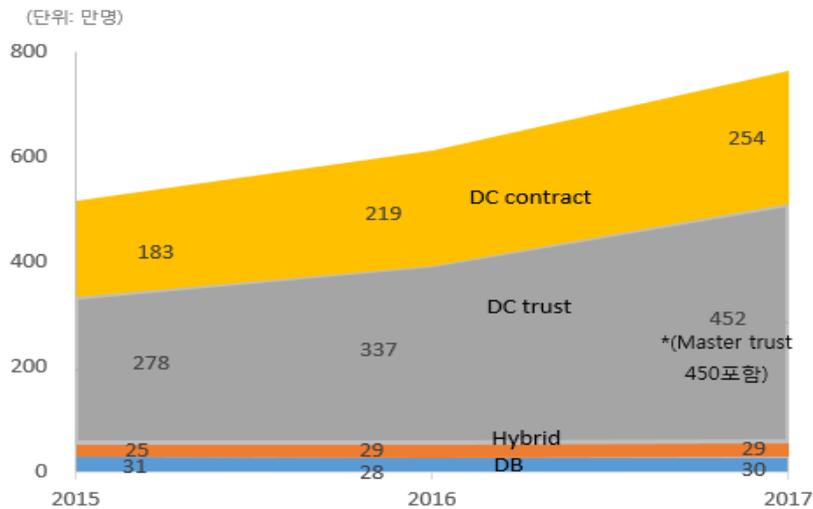
-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의 허가 및 규제에 관한 내용(code of practice)이 포함된 The Pension Schemes Act 2017(이하 'PSA 2017')이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임
- Master Trust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²⁾ 신탁형(Trust-based)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임³⁾
 - 신탁형(Trust-based)이란 수탁자가 기금의 관리·행정·투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 신탁의무를 짐⁴⁾

■ 201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자산 및 가입자 규모가 급증함

1) FT(2018. 8. 7), "Popular workplace pension schemes to quit UK market"
 2) 이러한 방식은 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퇴직연금운영 방식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abo/HP01020100.xml>)
 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7/17/section/1>
 4) House of Commons Library(2018. 3), *Master Trust regulation*

- 자동가입제도 이후 퇴직연금 유형별 가입자 규모를 보면 DB형과 혼합형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DC형은 신탁형과 계약형이 존재하는데⁵⁾ 이중 신탁형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참조)
- Master Trust 제도의 가입자는 2010년 약 20만 명 정도였으나 2017년 3월까지 퇴직 연금에 자동가입한 개인 중 절반 이상(59%)인 약 450만 명이 동 제도에 가입하였으며, 2030년 까지 가입자가 약 7백 8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⁶⁾
 - Master Trust 제도는 복수계약(폴링) 형태로 운영되므로⁷⁾ 설립 및 운영경비 면에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연금감독청(The Pension Regulator 이하 ‘TPR’)에 의하면 2016년에 76억 파운드의 자산이, 최근에는 약 81억 파운드 자산이 84개의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⁸⁾

<그림 1> 자동가입제도 이후 퇴직연금 누적 가입자 수(2015~2017년)



주: 1) 각 연도별 3월 시점의 값임

2) 2017년 DC Trust 4,521천 명은 Master Trust 4,499천 명과 기타 DC Trust 23천 명임

자료: Pension Policy Institute(2016, 2017), The Future Book

5) DWP(2014), "Minimum Governance Standards for DC trust-based schemes"

6) Pensions Policy Institute(2016), *The Future Book*

7) Master Trust 제도도 처음에는 단일 고용주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복수의 고용주를 위한 제도로 변함

8) Pensions Policy Institute(2016), *The Future Book*

■ Master Trust 제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합성 및 재무건전성 등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음

- PSA 2017 도입 전에도 TPR이 Master Trust 제도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수탁자 적합성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았음
- Master Trust 제도는 신탁형으로 운영되므로 특성상 수탁자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입자를 보호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가입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음
 - 신탁형은 TPR의 규제를 받고 계약형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의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및 관리감독이 분리되어 있음
 - 즉, 신탁형은 수탁자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므로 신탁형을 관리하는 TPR이 수탁자(금융기관)의 업무를 규제하는 반면, 계약형은 가입자와 퇴직연금 제공자 간(금융기관)의 계약관계를 규제하므로 FCA에서 수급권 보호 등 계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함
 - Master Trust 제도가 퇴직연금 분야에서 대규모로 운영되므로 단일계약(단일 고용주 제도)보다 실패할 경우 시장에 주는 여파가 커 가입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PSA 2017에 의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Master Trust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6개월 간 TPR에 별도로 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격성 테스트 등을 거쳐야 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승인 없이 운영할 수 없음
 - 특히 가입자가 2천 명 이하인 소규모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는 설립 및 운영비용 그리고 신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최소 15만 파운드를 보유해야 함
 - 보유 금액은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 최소 7만 5천 파운드보다 두 배로 증가한 금액으로 설정됨
- TPR은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음⁹⁾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6월에 고용주들이 90만 파운드의 기여금을 적립하지 않았음을

9) Pension & Investments(2018. 7. 27), "U.K., Ireland consider master trust regulations"

가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한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에게 1만 5천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음

-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은 단순히 사업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입자 보호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
 - 재무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소규모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허가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1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입자는 전체 Master Trust 제도 가입자의 0.5%인 약 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¹⁰⁾
 - 퇴출이 예상되는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의 가입자와 기금을 관리할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찾아야 할 것이나 이 과정에서 Master Trust 제도 가입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가 운용되고 향후 확대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격성, 재무건전성 등을 반영한 엄격한 선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퇴출되는 사업자가 관리하던 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조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fi

10) FT(2018. 8. 7), "Popular workplace pension schemes to quit UK market"



퇴직연금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

미국은 퇴직연금 관계자의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RISA법)에 신원보증보험(Fidelity Bond) 가입을 의무화함. 미가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함.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사기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수급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정책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탁자배상책임 강화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퇴직연금 관계자(Plan Officials)¹⁾의 적립금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 방지를 위해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RISA법 412조)에 신원보증보험(Fidelity Bond)의 가입을 의무화함
 - Wildwood Industries 社 회계담당자의 절도사건, Pacesetter Corp. of America 社 고용주의 퇴직급여 횡령사건 등 퇴직연금 수탁인의 범죄행위가 발생함²⁾
 - 미국은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³⁾를 통해 퇴직연금 관계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를 규정함
-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의무화 배경은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으로 적립금 사기 및 유용사건 발생 시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임

1) 퇴직연금 관계자의 구체적인 예로는 ① 현금, 수표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 ② 제3자에게 연금자산 이전 권한을 보유한 자, ③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 퇴직연금 재산에 관한 거래 협상권을 보유한 자, ④ 직접자금 집행 권한 보유자, ⑤ 어음, 수표 등에 대한 서명 권한 보유자, ⑥ 보증이 필요한 행위에 대한 감독 또는 의사결정 책임 보유자 등이 있음(U.S. Department of Labor(2008))

2)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2010), *Contributory Plans Criminal Project: 퇴직연금 관계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소송사례는 "Gallagher(2008), ERISA Bonding Requirements and the Fidelity Insurer, Fidelity Law Association Journal"* 등을 참조

3)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 *Department of the Treasury's Listing of Approved Sureties*

- 미국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험형태, 가입대상, 담보위험, 보장금액 등으로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표 1〉 참조)

〈표 1〉 미국 신원보증보험 내용 및 특징(요약)

구분	내용	특징
보험형태	개별보증보험, 기명집합보증보험 등 4가지 형태	재무부 승인 받은 보험회사 취급 (보증보험, 재보험사 등)
가입형태 및 대상	의무가입(미이행 시 벌칙규정 존재) 퇴직연금 관계자(Plan Official)	1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 범위 포괄적
담보위험	범죄행위(사기 및 부정직)에 의한 기금 손실	절도, 횡령, 위조, 유용 등
보장금액	연금자산 10%	50만 달러 ~ 100만 달러

■ (보험형태) 피보험자 설정방식에 따라 개별보증, 기명집합보증(Name Scheduled Bond), 직위 집합보증(Position Schedule Bond), 포괄보증으로 이루어짐

- 개별보증(Individual Bond)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 1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 집합보증(Scheduled Bond)은 보험증권상에 피보험자 성명 또는 직책을 기재 (2인 이상)하는 방식임
- 반면 포괄보증(Blanket Bond)은 특정인에 국한하지 않고 수탁인 전체를 피보험자로 설정 하는 방식임

■ (가입대상) 퇴직연금 적립금 및 기타재산을 취급하는 모든 자(퇴직연금관계자)가 가입대상이며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에 비해 포괄적임

- 신원보증 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관계자(Plan Officials)는 퇴직연금 기금 및 기타재산을 관리하거나 재량권을 보유한 모든 자를 의미함
 - 다만, 증권거래법 제1조에 의거하여 증권중개인(Broker or Dealer)으로 등록된 자,⁴⁾ 특정 요건⁵⁾ 을 충족하는 수탁인의 경우 신원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4) 단, 해당 증권중개인은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구에서 정한 신원보증요건(fidelity bond requirements)을 충족시켜야 함

5)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①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영업 행위를 하는 법인, ②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 신탁지명권을 행사하거나 보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자, ③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감독 또는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 ④ 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 한편, 퇴직급여 지급재원이 조합, 고용주, 연금관리자, 임원, 근로자의 일반자산(general asset)인 경우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면제시키고 있음

-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함
- (담보위험) 퇴직연금 기금 및 기타 재산⁶⁾을 취급하는 퇴직연금 관계자의 사기 또는 부정직 등 범죄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피해를 담보함
 - 범죄행위로는 절도, 강도, 횡령, 위조, 부당전환(Wrongful Conversion), 고의적 유용(Willful Misapplication)등이 포함됨
 - 이 점에서 수탁자책임의무 위반 및 제도관리상 과실 등에 따른 법적 책임(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보상하는 수탁자책임배상보험과 차이가 존재함
- (보장금액) 퇴직연금 관계자가 관리하는 연금자산의 10% 금액에 대하여 최소 1,000 달러에서 최대 50만 달러 한도로 설정함
 - 직전년도에 관리한 퇴직연금자산 규모를 연초에 평가하여 해당 자산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형태임
 - 다만 예술작품, 수집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비적격 자산(non-qualifying assets)에 투자한 경우, 보증채권금액은 비적격 자산 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함⁷⁾

〈표 2〉 신원보증보험 가입금액별 보험료

구분	신원보증보험 가입금액(천 달러)									
	265 미만	265~275	275~300	300~350	350~400	400~450	450~500	500~750	750~1,000	
보험료 (달러)	연간	100	101	105	113	120	127	135	170	206
	3년형	270	273	284	305	324	343	365	459	556

주: 5인 미만의 기금관리인을 보유한 제도 기준임 (뉴욕주의 경우 상기 보험료 수준을 상회)
 자료: HARTFORD, ERISA FIDELITY BOND COVERAGE FOR YOUR EMPLOYEE BENEFIT PLAN

- 2006년 이전에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최대금액이 50만 달러로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으로 일부제도의 경우 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됨⁸⁾

6) “퇴직연금 기금 또는 기타 재산(funds or other property)”이란 퇴직연금 제도운영 및 급부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함
 7) DWC - The 401(k) Experts(2018), Fidelity Bonds FAQs
 8) Pickle(2015), ERISA’s Bond Requirement - An Overview. PLAN CONSULTANT

- 2008년 1월부터 자사주(Employer Securities)가 포함된 퇴직연금은 신원보증보험 가입 최대금액이 100만 달러로 증액됨⁹⁾

■ 이처럼 미국은 수탁자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수탁자배상책임보험(〈표 3〉 참조), 신원보증보험 등 보험제도를 퇴직연금에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와 수탁자(퇴직연금관계자) 간 이익상충에 따른 손실 문제를 해소함
- 반면 우리나라는 수급권 보호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미국과 같은 제도 장치가 부재함

〈표 3〉 퇴직연금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내용 및 특징(요약)

구분	내용	특징
가입형태	임의가입	사업자 대부분 가입
가입대상	퇴직연금 수탁자(Fiduciaries)	퇴직연금사업자 등
담보위험	수탁자책임의무 위반 및 제도관리상 과실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손해배상, 소송비용
취급기관	일반 보험회사	AIG, Hanover 등
보장금액	보험계약금액 상이	300만 달러~500만 달러

■ 최근 정부정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사전적 보완차원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은 계약형 퇴직연금에 비해 제도운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와 수탁자(퇴직연금관계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함
 - 이에 따라 수탁자배상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책임위반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 또한 미국처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를 규정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kiri

9)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Pub. L. No.109-280, 120 Stat.780



일본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최근 일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함. 개선내용으로는 별도의 간이(簡易) 기업형 DC제도 도입, 기업연금연합회에 투자교육 위탁 허용, 자산운용기본 방침 설정 및 정책적 자산 구성 의무화, 자산운용관계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등임.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투자교육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의 간이 기업형 퇴직연금 도입사례를 검토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투자 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자산운용 관계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및 장기자산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은 2017년부터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¹⁾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함

- 제도 개선 배경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가입 저조 등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였기 때문임
 - 2001년 신(新)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급여제도에서 차지하는 퇴직연금의 비중이 감소하고²⁾ 투자규제 완화로 안정적 자산운용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됨
- 따라서 간이(簡易) 기업형 DC제도 도입, 영세사업장 투자교육 강화, 자산운용 기본방침 설정 및 장기자산 설정의무화, 운용관계자의 수탁자책임강화를 내용으로 한 개선이 이루어짐(<표 1> 참조)

1) 국제발행 등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보전함과 더불어 과감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시행함

2)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여 17.1%(2016년)의 수준에 불과함

〈표 1〉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개선 내용 및 목적

내용	목적	시행
별도의 간이 기업형 DC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2018년 5월
기업연금연합회에 가입자교육위탁 허용	영세사업장 근로자 투자능력 제고	2017년 1월
자산운용기본방침, 장기자산설정의무화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 장기자산운용유도	2018년 4월
운용관계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강화	자산운용관계자의 모럴해저드 방지	

자료: 일본 후생성의 퇴직연금 개선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함

■ 첫째, 퇴직연금 가입조건을 대폭 축소한 간이(簡易) 기업형 DC제도³⁾를 별도로 도입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함

- 기업형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조건을 과감히 완화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비용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자 간이 기업형 퇴직연금을 도입함
- 퇴직연금 필요한 서류 간소화, 규약변경시의 승인사항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함
 - 가입 시 필요 서류는 규약(안), 후생연금적용사업소확인 서류, 노동조합 동의서 등으로, 규약 변경 시 승인사항은 사업부 운영업무사항, 사업주보험료 납부사항 등으로 간소화함

■ 둘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투자능력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연합회 등에 계속투자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DC 연금법 개정으로 계속투자교육을 의무화하고 투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기업연금연합회에 투자교육을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교육 실시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이는 기업연금연합회 등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이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집합 교육 방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투자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임

■ 셋째,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2018년 4월부터 DB형 자산운용 기본방침 및 정책적 자산구성비율의 설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함

- 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목표, 운용자산 구성, 운용수탁기관 위임, 운용업무 내용

3) 기업형 DC제도 별도로 도입된 제도로 후생연금피보험자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 가입대상임

- 및 방법, 운용수탁기관 평가, 운용업무 준수 등과 같은 기본사항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DB형 적립금 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 운용의 자산 구성 비율(정책적 자산구성비율)을 규정하도록 함⁴⁾
- 넷째, DB형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산운용관련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
-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DB형 자산운용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수탁자책임 강화 내용은 자산규모 100억 엔 이상 DB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배분은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수탁기관 선정·평가결과는 대의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임
- 이처럼 일본이 퇴직연금 가입 유도, 영세사업장 투자교육 강화, DB형 자산운용 기준 및 책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특히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음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간이 기업형 DC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투자 능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기준 마련 등으로 장기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더불어 근로자와 자산운용관계자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운용관계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 지침이 필요함 kifi

4) 단기수익률중심의 자산운용을 지양하기 위해 법적으로 장기투자상품의 책정을 의무화함



미국 퇴직연금의 TDF 활용 현황 및 함의

최장훈 연구위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낮아 노후보장 수단의 역할이 미흡함. 퇴직연금은 투자기간의 장기화 및 분산투자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Target Date Fund(TDF)가 퇴직연금(401(k))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미국에서 TDF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많은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기본 옵션으로 TDF를 제공하고, 일반인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TDF의 비용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TDF 상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투자상품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TDF를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낮아 노후보장수단으로써의 역할이 미흡함¹⁾

-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11년 49.9조 원에서 2018년 3월 169.0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2012~2016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9%로 미국, 영국, 호주 퇴직연금의 5년 연 환산 수익률 5.6%, 7.1%, 8.4%보다 낮음
-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연금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분산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적립금 운용상품 개수도 평균 2개 미만으로 매우 적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임(〈표 1〉 참조)

1) 금융감독원(2018. 3),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표 1〉 퇴직연금 평균 운용상품 수(2017년)

(단위: 개)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금융투자
원리금보장형	1.04	1.19	1.83	1.07
실적배당형	0.39	0.09	0.16	1.85
계	1.43	1.28	1.99	2.82

자료: 금융감독원(2018)

■ 노후 보장을 위한 적정 투자수단으로서 퇴직연금은 투자기간의 장기화 및 분산투자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Target Date Fund(TDF)가 퇴직연금(401(k))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TDF란 목표시점(일반적으로 은퇴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자산 구성이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는 장기적인 집합투자형 펀드임²⁾
 - TDF는 초반에는 주식 비중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등의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글라이딩패스(Gliding Path) 구조를 가짐
- TDF는 자산 구성이 자동적으로 바뀌므로,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투자할 수 있음
- 또한 일생동안 관리되므로 은퇴를 계획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펀드라고 할 수 있음
- TDF는 1990년대 초반 최초로 출시된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2006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제정과 적격디폴트투자상품(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³⁾ 도입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비용이 낮은 수동형 TDF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TDF의 수익률 변동성은 다른 투자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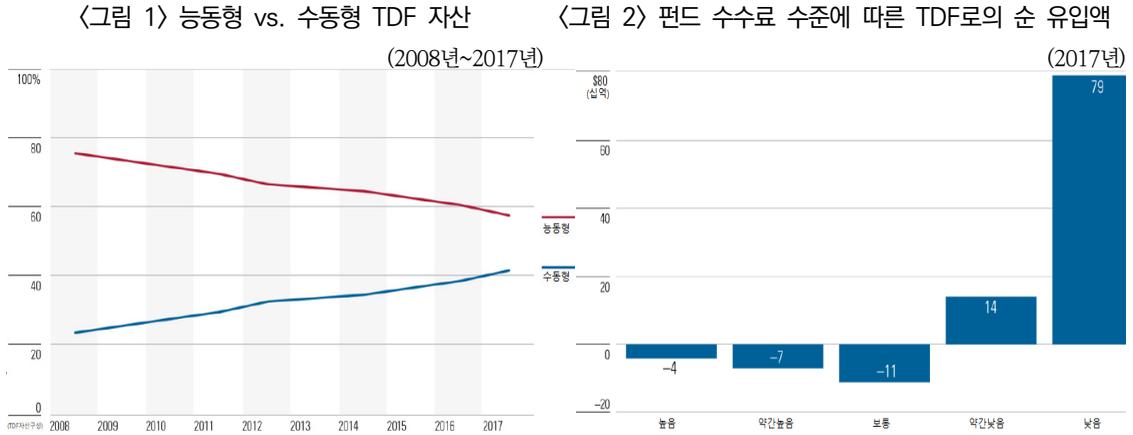
- 미국은 2016년 401(k) 중 적격지정 투자 상품 규정(QDIA) 상품의 97.6%가 TDF에 투자되고 있으며,⁵⁾ 2019년까지 새로운 퇴직연금 보험료의 88%가 TDF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함⁶⁾

2)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 webpage, https://www.ici.org/pubs/faqs/faqs_target_date

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투자자가 투자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임

4) Morningstar(2018. 5), "2018 Target-Date Fund Landscape"

- TDF 중에서도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능동형 TDF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이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TDF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임(〈그림 1〉 참조)
- 수동형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수동형 펀드의 비용이 능동형 펀드보다 낮기 때문임(〈그림 2〉 참조)



자료: Morningstar(2018. 5), "2018 Target-Date Fund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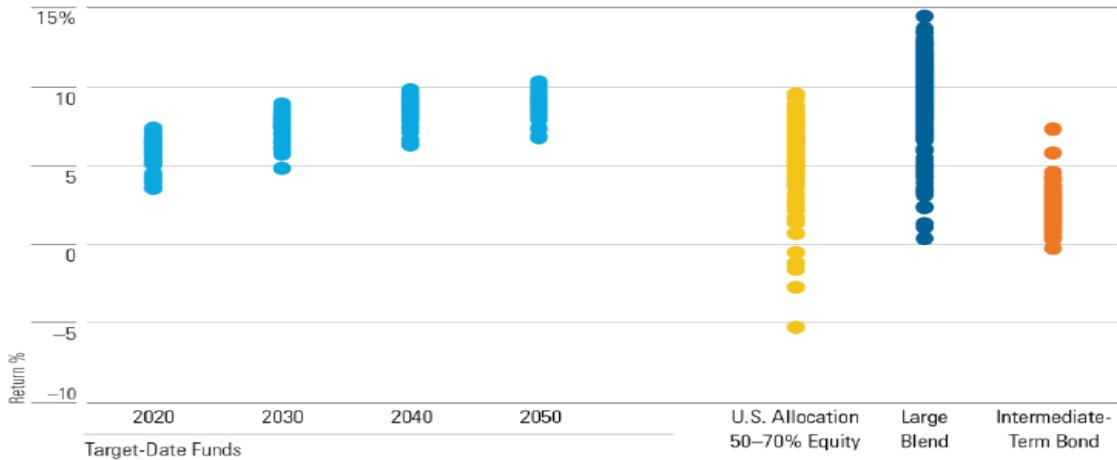
- TDF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크지만 수익률 차이(변동성)은 다양한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Large Blend) 변동성보다 크게 낮으며, 회사채 포트폴리오(Intermediate-Term Bond) 변동성보다도 낮게 나타남(〈그림 3〉 참조)
 - 예를 들어, 2050년에 만기가 되는 TDF의 3년 평균 수익률은 2017년 대략 7~11%이고 수익률 차이는 4%p(11~7%)인데 이러한 수익률 차이는 15%p인 Large-Blend는 물론 6%p인 Intermediate-Term Bond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US Department of labor(2016)

6) Forbes(2018. 6. 30), *Why Target Date Funds Dominate The 401(k) Market*

7) 이러한 선호도는 주식시장이 과거에 비해 성장이 낮아져서 수동형 상품의 비용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점차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 Target-Date Funds와 그 외 투자 상품들의 수익률 차이(변동성) 비교-3년 평균(2017년)



- 주: 1) 2020, ..., 2050: TDF의 목표(은퇴)연도에 만기가 되는 TDF 상품(예: 2020: 2020년에 만기가 되는 TDF 상품)
 2) U.S. Allocation 50~70% Equity: 주식, 채권, 예·적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주식 비중이 50~70%임
 Large Blend: 주식으로 구성된 투자형태로 주식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특정주식이 주도하지 않도록 한 포트폴리오
 Intermediate-Term Bond: 만기가 3.5~6.0년인 회사채권 포트폴리오

자료: Morningstar(2018. 5), "2018 Target-Date Fund Landscape"

■ 미국 퇴직연금에서 TDF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많은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기본 옵션으로 TDF를 제공하고,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TDF의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 TDF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점점 더 많은 고용주가 퇴직연금(401(k))의 적격디폴트 투자상품(QDIA)의 기본 옵션으로 TDF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⁸⁾
-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임
 - 개인투자자는 시장 환경이 급변할 경우 제때 관리를 못해 큰 손실을 볼 수 있지만 TDF는 자동 밸런싱 되는 구조이므로 극단적 상황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펀드 제공자들은 투자자의 연령별 위험선호도를 반영해 다양한 연령대의 투자자 수요를 맞추고 있음
- TDF 내에 비용이 낮은 상장지수펀드(ETF)의 활용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TDF의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⁹⁾

■ 우리나라는 TDF 상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투자상품 구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TDF를

8) U. S. Department of Labor(2013), "Target Date Retirement Funds-Tips for ERISA Plan Fiduciaries"

9) Morningstar(2018. 5), "2018 Target-Date Fund Landscape"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투자상품이 원리금보장형과 실속보장형을 모두 포함하여도 투자자 선택의 폭이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되었음
 - 원리금보장형은 수익률이 낮고, 실속보장형은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있음
- 최근 TDF에 대한 투자를 연금자산의 70%로 제한한 규제를 없애¹⁰⁾ 우리나라도 TDF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TDF는 수수료가 다른 상품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TDF 상품을 개발하되, 미국과 같이 상장지수에 투자되는 수동형 펀드 상품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의 주식시장 환경을 고려한 분산투자가 필요하며, 상품 제공 시 소비자의 투자위험성향을 잘 파악해야 함
-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률 확보를 위해 미국과 같이 TDF를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TDF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론 수렴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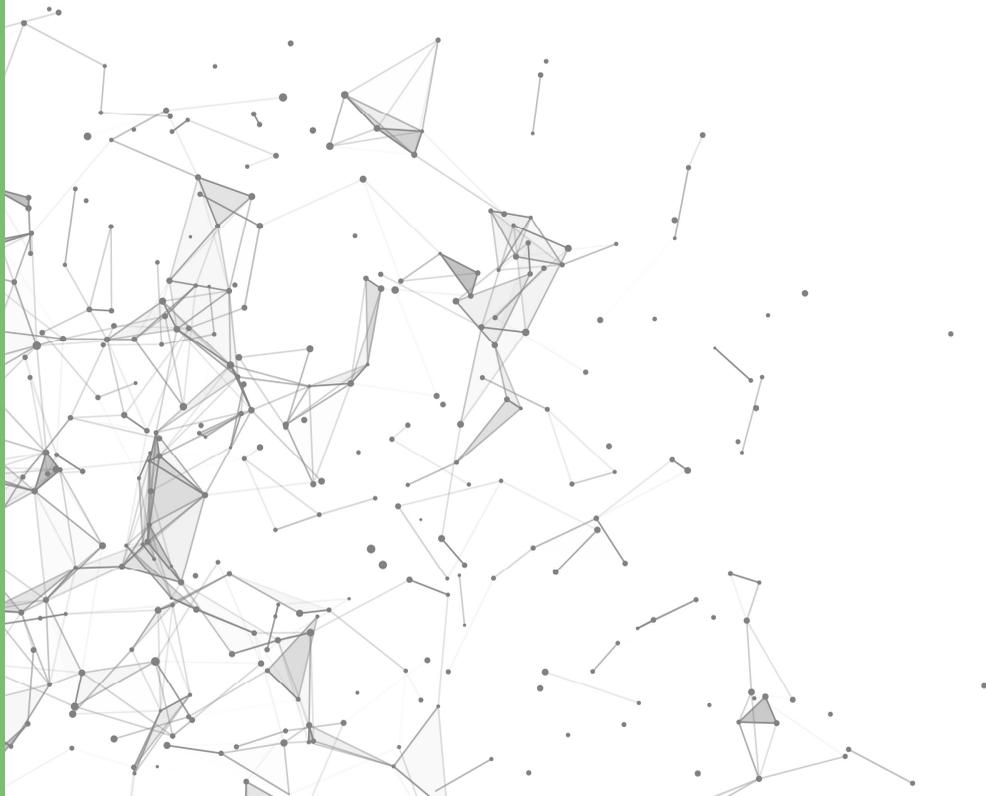
kiri

10)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2018년 8월 31일 의결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TDF(Target Date Fund) 출시·확대 유도
 - TDF에 대한 투자 제한(연금자산의 70%) → 100% 투자 허용
- ②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 확대(DB형)
 - 리츠(REITs)에 대한 투자 금지 → DB형에 한해 투자 허용
- ③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허용
 - 은행법상 은행의 예·적금으로 한정 → 저축은행 허용

건강

1. 건강검진과 국민의 건강성과 | 이정택
2.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 오승연
3.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안(案) 비교 | 이정택 김동겸
4.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지출실태와 과제 | 김동겸
5.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 | 오승연 김혜란
6. 수술입원일수 감소와 보험회사의 대응 | 김동겸
7. 모바일 건강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과 시사점 | 오승연 김혜란
8. 일본 지자체의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 이상우





건강검진과 국민의 건강성과

이정택 연구위원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질병위험군 발견을 통한 질병 예방과 합병증 예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지만, 연도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유질환자 비율은 상승하고 있음.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검진의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사후체계를 확립해야 함.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 특성별로 검진항목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검진이 시행되어야 하며, 1차 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 노력이 1차 의료 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사 건강보험의 건강 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강검진의 사후체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2016년 건강검진 통계 연보에 의하면, 일반검진의 대상인원 1천 763만 명 중 1천 371만 명이 검진을 받아 77.7%의 수검률을 보이며, 이를 위해 1조 3000억 원 이상이 건강검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¹⁾
- 국민건강보험은 일반검진을 비롯하여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전 국가적인 규모로 건강검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²⁾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로 일반검진은 2016년 77.7%,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79.3%, 영유아 건강검진은 71.9%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음
 - 수검률 증가로 인해 2011년 8천 900억 원에서 46% 증가한 1조 3000억 원 이상이 2016년 건강검진 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요양기관도 병·의원, 보건기관, 치과 병·의원을 모두 합쳐 16,441 개소 에서 20,957개소로 증가하여 건강검진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음

1)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

2) 일반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지역 및 직장가입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질병위험군 발견을 통한 질병예방과 합병증 예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임

- 금연·절주·운동을 통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발병의 요인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중증질환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중요함³⁾
 - 공공보건(Public Health)에서 정의하는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은 예방접종과 공중위생과 같이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흡연·폭음을 줄이고 정기적인 운동과 같이 신체적 활동량을 늘리는 건강생활습관을 포함함
 -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은 질병 발생 시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행위를 뜻하며, 대표적인 2차 예방은 건강검진임
-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의 2단계인 2차 예방으로 질병에 걸려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통해 발현 전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며, 1차 예방보다는 하위 전략이지만 그 효과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연도별 건강검진 통계를 통해 연령별 유질환자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유질환자 비율은 상승하고 있음

- 단순히 연령 간 유질환율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의심⁴⁾ 또는 유질환자⁵⁾ 판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당연한 결과임
 - 20대 이하는 정상 판정 비율(정상 A, 정상 B)⁶⁾이 75%를 차지하지만 70대 이상은 16.5%에 불과함
- 주목할 점은 연도별 유질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정상 판정 비율은 하락 하였고, 반대로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유질환자 비율이 상승하였음(〈그림 1〉 참조)
 - 65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2011년도 비교하여 2016년 10%p 이상 유질환율이 상승 하였고, 40~64세에서도 유질환율은 상승하였음

3) Kenkel (2000), Prevention,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Volume 1, Part B

4) 질환의심자는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임

5)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유질환자라 함. 당뇨병은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이며, 고혈압은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임

6) 정상 A는 1차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이며, 정상 B(경계)는 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임

- 비만(BMI 25 이상)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2010년(32.1%) 대비 2016년(34.9%) 2.8%p 증가하였고, 55~6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만 비율이 상승하였음(〈그림 1〉 참조)

〈그림 1〉 연령별 유질환자 비율과 비만 비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KOSIS, “연령별 성별 일반 건강검진 1차 판정현황 및 연령별 체질량 분포현황”

■ 국민들의 고혈압이나 당뇨의 유질환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고, 1차 건강검진 이상자(112만 명) 중 56만 명인 약 50%만이 2차 검진을 받는 것은 건강검진의 사후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⁷⁾

-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검진의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사후체계를 확립해야 함
-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 특성별로 검진항목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검진이 시행되어야 함
 - 증상이 전혀 없는 일반국민과 만성질환자에게 동일한 건강검진을 적용하고 있는 점은 비용 대비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됨
-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 노력이 1차 의료 기관(병·의원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건강검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사 건강보험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음⁸⁾
 -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건강검진의 사후 관리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⁹⁾ Kiri

7)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

8) 조용운 (2018),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방안』

9) 현재 건강검진의 사후관리 서비스는공단지사들을 활용하여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건강검진 이상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조비룡·이철민 2011)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오승연 연구위원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의 건강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은 소비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 모바일 헬스기기에서 생성된 개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들을 개인건강기록에 집적하고, 여기에 의료기관에 보관된 개인의 의무기록과 같은 정보들을 연계시켰을 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임. 디지털 건강정보 활용에 저해요인이 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의 활용 여부 혹은 공개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서 핵심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 보건의료체계에서 환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환자가 개인의 건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헬스케어 공급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와 헬스케어 공급자가 네트워크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음
 - 만성질환에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의 정보들이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질병관리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움
 - 디지털 건강정보에는 생애 전 기간에 걸쳐서 수집되고 관리되는 개인의 치료 및 처방기록, 건강검진기록, 모바일 헬스기기들을 통해 생산되는 건강행태 정보 등이 있음
 - 또한 디지털 건강정보의 구축과 활용은 정보통신기술에 근거한 헬스케어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임

-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은 단순히 집적된 데이터가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건강정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은 크게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과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s)¹⁾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전자건강기록은 주로 의료기관들이 관리해온 환자의 의료정보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공급자들이 환자의 최신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현재 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개별 의료기관들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타 의료기관의 환자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과거 의료정보들이 누락되거나 다시 생산되는데 비용이 드는 등 비효율성이 큼
 - 전자건강기록은 기존 의료기관들의 분산된 정보들을 통합하여 환자 개인 당 하나의 파일로 집적하는 방식인데, 의료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어 환자의 의료정보를 가장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음
- 개인건강기록 역시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자건강기록과 유사하나 정보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개인이 갖는다는 점에서 전자건강기록과 구분될 수 있음
 - 개인건강기록에는 의무기록, 진단 증상, 약물처방, 생체 신호, 예방접종, 연구실 결과, 연령이나 체중과 같은 신체특성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의 통합된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현재 개인건강기록은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웹 페이지 형태부터 환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 소유의 환자 포털, 청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지불자 포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²⁾

■ 개인건강기록은 소비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소비자가 언제든지 개인건강기록에 접속해서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헬스케어 제공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소비자의 참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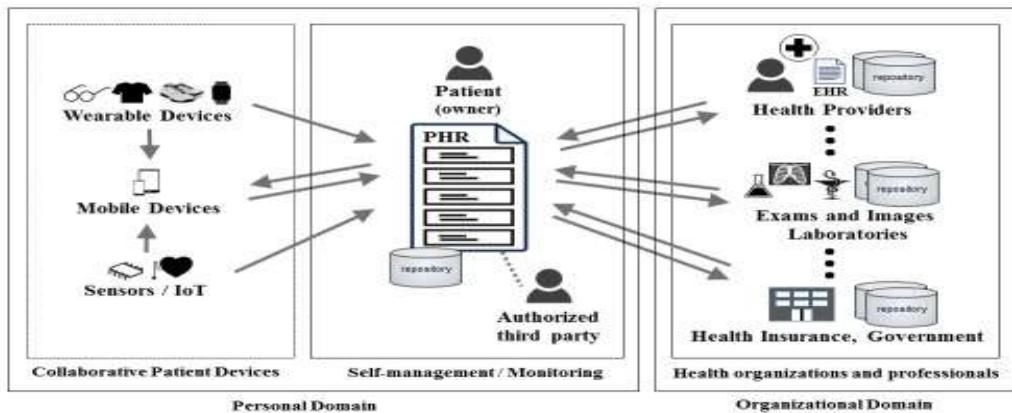
1) e-PHR(electronic PHR) 혹은 UHR(Universal Health Records)로 불리기도 함

2) 자세한 내용은 OECD(2014),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참조

■ 개인건강기록은 보건의료프로세스에 적절하게 통합되었을 때 소비자의 건강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건강기록이 개인들의 자기건강관리(self-management)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개인건강기록은 개인의 치료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자기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³⁾
- 모바일 헬스기기에서 생성된 개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들을 개인건강기록에 집적하고, 여기에 의료기관에 보관된 개인의 의무기록과 같은 정보들을 연계시켰을 때 소비자의 자기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임(〈그림 1〉 참조)

〈그림 1〉 개인건강기록과 전자건강기록의 관계



자료: Roehrs et al.(2017), "Personal Health Record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Mediccal Internet Research*, Vol. 19, No. 1

■ 전자건강기록에 기반해서 소비자가 통제권을 갖는 개인건강기록을 구축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전자건강기록의 일부를 개인이 통제하도록 하는 호주의 "개인이 관리하는 전자건강기록(Personally Controlled 전자건강기록, 이하 'PC전자건강기록')이 있음
 - 의료 관련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 혹은 연결하여 환자 혹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건강정보흐름을 구축하고 분절화되어 있는 공적부분과 민간부분 간 의료 및 건강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도입됨

3) Johansen M.A. and Henriksen E.(2014), "The evolution of personal health records and their role for self-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and Informatics*, 205

-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관한 통제권을 소비자가 가지며, 승인받은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소비자가 설정한 접근 통제에 따라 개인이 관리하는 전자건강기록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민간부문에서 개인건강기록을 의료기관의 전자건강기록과 연계한 사례로는 미국의 마이차트가 있음
- 외래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분야의 주요 공급자인 에픽 시스템즈(Madison, WI)는 자신의 전자건강기록에 근거해 개인건강기록에 해당하는 환자포털 마이차트(MyChart)를 개발함⁴⁾

■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privacy)문제임

- 이러한 우려는 다양한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 개인건강기록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구축하는 전자건강기록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보건의료의 중요한 주체인 민영건강보험이 소비자 중심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영건강보험에서 건강정보를 활용한 개인의 위험세분화(personalisation)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 일부 개인들이 위험보장에서 제외되거나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 공유(risk sharing)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⁵⁾

■ 개인정보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유전정보 활용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미놈(Miinome)⁶⁾은 개인에게 유전정보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분야의 선두 주자인 23andMe와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시킴
- 23andMe의 경우 사용자 동의를 받은 후에는 개인의 유전정보 소유권과 통제권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반면, 미놈은 소비자가 자기 유전정보 중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⁷⁾ Kiri

4) OECD(2014),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5) 오승연(2017),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KIRI 리포트』, 제425호

6) 미놈은 개별 소비자들의 유전자 정보와 마케터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유전정보 거래소)을 제공하는 ICT 벤처회사로, 구글을 비롯한 SNS가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듯이 소비자들이 자신의 유전정보에 맞는 새로운 제품 정보나 광고들을 미놈을 통해 받아보는 사업모델임

7) 최윤섭(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안(案) 비교

이정택 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세 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세 건의 의원입법 발의안(案)은 법안의 제정목적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관한 내용은 대동소이함. 그러나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대상이 되는 민영의료보험의 범위 및 의료비의 정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실태조사, 벌칙조항 등에 있어 차이를 보임.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 의료기관, 감독 당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정책협의체 구성 이후,¹⁾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세 건의 법안이 입법발의 되어있는 상황임

● 2017년 12월 김상희 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 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案)” 대표 발의 이후, 윤소하 의원과 김종석 의원 등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음

■ 세 건의 법안(案)은 법안 제정목적과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방향성은 대동소이함

● 세 건의 법안 모두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의료비부담 절감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의료비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료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손해를 공시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함

- 의료비 실태조사 항목으로는 ① 실손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9. 2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② 요양급여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③ 비급여진료비용 현황, ④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지급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있음

〈표 1〉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1) 법안 제정목적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법률안 명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목적	국민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건강 증진	민간의료보험의 공적관리,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국민건강 증진

자료: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2017. 12. 29),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157);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2018. 01. 2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544);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2018. 02. 07),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814)

■ 그러나 상기 법안들은 ①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 및 의료비 범위,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③ 의료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④ 벌칙조항 등 세부 실행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관리대상 및 의료비 범위)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은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을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윤소하 의원안은 실손의료보험 외에 정액형 의료보험까지 포함시킴

- 김상희 의원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가입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급여진료비용을 의료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종석 의원안은 이들 비용 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과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시킴
- 반면, 윤소하 의원안은 상기 비용 외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까지 포괄함

〈표 2〉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2)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 및 의료비 범위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민영보험 범위	실손의료보험	실손형 및 정액형 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범위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의료비	김상희 의원안) +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 보험료	김상희 의원안) +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 (위원회 구성) 세 법안 모두 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소속을

-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고 있으나, 김종석 의원안의 경우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합
- 김상희 의원안과 윤소하 의원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이 맡도록 하는 반면,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 볼 때, 김종석 의원안은 위원회 부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수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상희 의원안²⁾과 윤소하 의원안³⁾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보건복지부차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표 3〉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3)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위원회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명칭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부 산하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20명 이내	25명 이내	23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부위원장이 각각 동수 임명
업무	● 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 보장범위조정, 손해율산정방법, 민영보험정책개선 의견제시,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	○ 실태조사, 민영보험 보장범위 조정, 표준약관개정 권고, 손해율산정방법, 민간의료보험 정책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	○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국민의료비 실태조사, 공사의료보험 관련 정보 공유 등	
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의견제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관련 정책	좌동* *보장범위에 대한 권고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	좌동	

- 2)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①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②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③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④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⑥ 금융감독원의 원장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⑦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연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①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②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③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④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⑤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
 - 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⑧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 (실태조사 범위) 의료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항목에는 실손보험이 의료비지출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진료비용 현황 등이 있음
- 김종석 의원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 지급에 관한 정보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표 4〉 공·사연계 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4) 실태조사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주기 (시행주체)	정기적, 필요 시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위원회)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회 이상 (위원회)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손보험이 의료비지출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 요양급여대상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김상희 의원(안) +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수입 및 지급 현황	윤소하 의원(안) +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 지급 정보

- (벌칙조항) 직무 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세 법안에서 모두 존재하나,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존재함
-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⁴⁾ 윤소하 의원안은 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음

〈표 5〉 공·사연계 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5) 벌칙조항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자료제출 사항	가입자 인적사항, 진료내역, 보험급여 내역, 민영보험 보험금 지급통계·보험료 등	좌동	김상희 의원(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내역, 요양급여부당 청구내역
벌칙	취득정보의 제공·누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료미제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4)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한정하고 하고 있으나(발의안 제14조), 김종석 의원안의 경우 자료 미제출 기관과 더불어 거짓 제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발의안 제21조)

- ■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 의료기관, 감독 당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감독 부재와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니 만큼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통해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함 kiri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지출실태와 과제

김동겸 수석연구원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수는 2017년 기준 91만 명에 달함. 외국인의 경우 3개월의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과정에서 이 같은 유인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건강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의료권 보장을 위해「국민건강보험법」제103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되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됨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내국인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됨
- 한편,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유학,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람¹⁾은 본인 신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취득이 가능함²⁾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2015년 10월부터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곧바로 자신의 신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유학, 취업, 결혼 등) 중에서 '취업' 항목을 삭제함

2)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

①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②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③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④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건강보험료를 적용함

〈표 1〉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구분	직장가입 대상자	지역가입 대상자
대상 및 자격취득 시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일	국내 최종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유학(D-2),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람: 신청일
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86조 규정 준용 ① 보수월액보험료(근로자와 사용자 절반 부담) = 보수월액 × 당해 보험료율(6.24%) * 하한: 28만 원, 상한: 7810만 원 ② 소득월액보험료(보수외소득 연 7,200만 원 초과 시) = 소득월액 × 당해 보험료율(6.24%) × 5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보수월액×부과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 • 영주 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 및 재외국민: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
기타 (보험료 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자격 D-6(종교) : 보험료 30/100 경감 • 체류자격 D-2(유학) 및 D-4(일반연수) : 산정된 보험료의 50/100 경감

주: 1)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한 28만 원, 상한 7,810만 원으로 설정함
 2) 소득월액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소득월액이 7,8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 원을 소득월액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를 참고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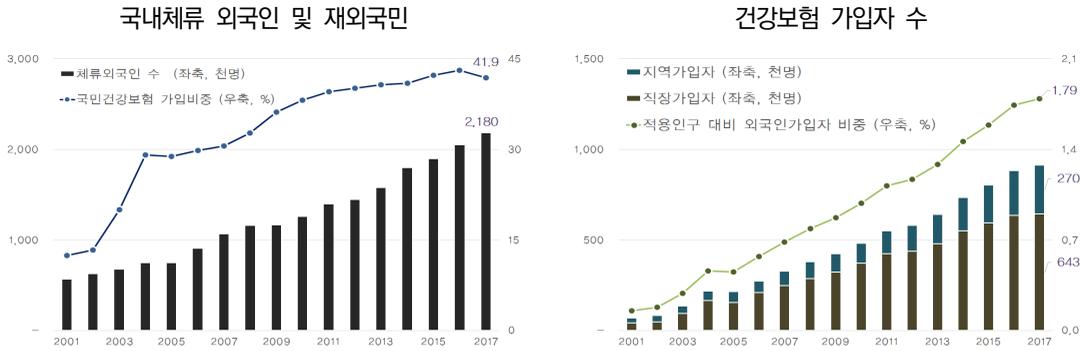
■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가입 특례제도 개정 및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91만 명에 달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1999년 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특례 조항에서는 본인 신청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후 직장가입 의무화, 지역가입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 정부는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E-9)는 2004년 8월 17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로 편입됨
-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이며, 이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64만 명(70.4%), 27만 명(29.6%)임³⁾
 -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7년 218만 명⁴⁾으로 이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3) 전체 직장가입자 대비 외국인 직장가입자 비중: 1.74%, 전체 지역가입자 대비 외국인 지역가입자 비중: 1.93%

- 포함)은 91만 3천명으로 최근 10년(2008~2017년) 간 연평균 10.8% 증가하였음
-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중 국적별 비중은 중국(51.4%), 베트남(8.8%), 미국(4.5%), 필리핀(3.6%), 태국(2.5%), 일본(1.8%) 등의 순임⁵⁾

〈그림 1〉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및 건강보험 가입자 수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 법무부(201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집단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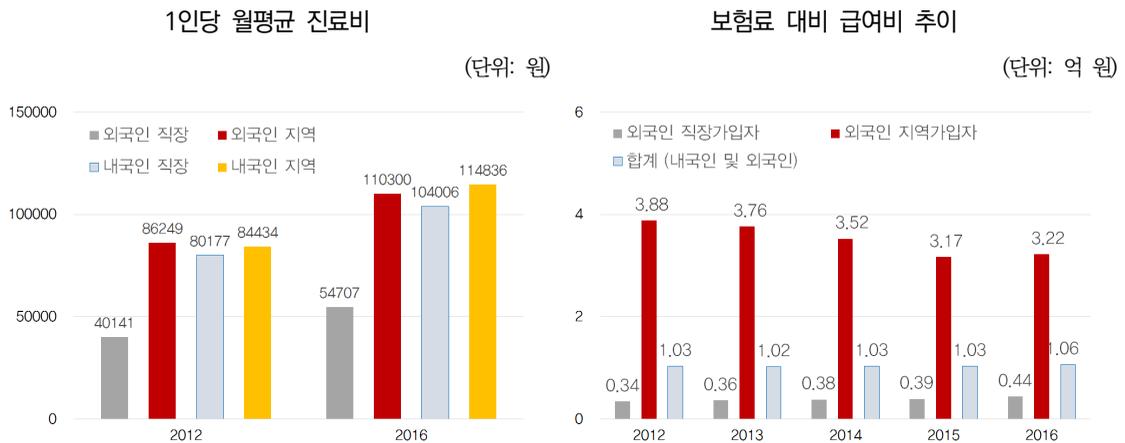
-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2년 58만 명에서 2016년 87만 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6% 증가함⁶⁾
-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⁷⁾ 건수는 16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9,549건)의 2.4배에 달함⁸⁾
 -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내국인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를 즉시 중단하나, 외국인의 경우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⁹⁾

■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장기체류자: 1,583,099명, 단기체류자: 597,399명 (법무부(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격별 현황: 재외동포(19.0%), 비전문취업(12.8%), 방문취업(11.0%), 영주(6.3%), 유학(4.0%), 거주(1.9%) 등
 5) 의학신문(2018. 4. 23), "건보공단, '외국인 전화상담 서비스' 확대"
 6)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2017년 국민생활밀착통계 100선
 7) 건강보험증의 대여 또는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8) 권미혁 의원실(2017. 10), 국정감사 보도자료
 9) 연합뉴스(2017. 10. 24), "건강보험 약용 외국인 '떡볶이' 여전"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0,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최근 5년간 6.4% 증가함
-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3.22배로 전체 국민건강보험가입자(1.06배)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
 - 외국인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2년 873억 원, 2013년 938억 원, 2014년 1,103억 원, 2017년 2,050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음¹⁰⁾

〈그림 2〉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현황 및 보험료 대비 급여비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2017년 국민생활밀착통계 100선

■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등으로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요건, 운영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방지 등 건강보험의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체류기간 강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치료목적을 숨기고 입국하여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본인부담 30%로 고액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차환자(タダ乗り患者) 문제로, 외국인 전용 보험의 도입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체류조건 연장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¹¹⁾

10) 조선일보(2018. 4. 30),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11) 週刊現代(2018년5월26日), 海を渡って日本に治療を受けに来る「タダ乗り患者」が増殖中

-
- 둘째, 외국인의 부정수급 및 보험료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지출에 연계한 보험료 책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Kiri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

오승연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가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과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임. 최근 가정 내 휘발성 화학제품 소비에 의한 대기오염이 차량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됨.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휘발성 화학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생활주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대기오염(Air Pollution)은 오존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실외 대기오염(Ambient Air Pollution)과 실내 대기오염(Household Air Pollution)으로 나눌 수 있음

- 실내 대기오염은 주로 요리나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고체연료(나무, 석탄 등)에서 발생함
- 그 외 실내 대기오염물질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¹⁾, 라돈, 석면,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음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휘발성화학제품에 포함된 유기용제는 오존(O₃)과 초미세먼지(PM_{2.5})를 생성시키는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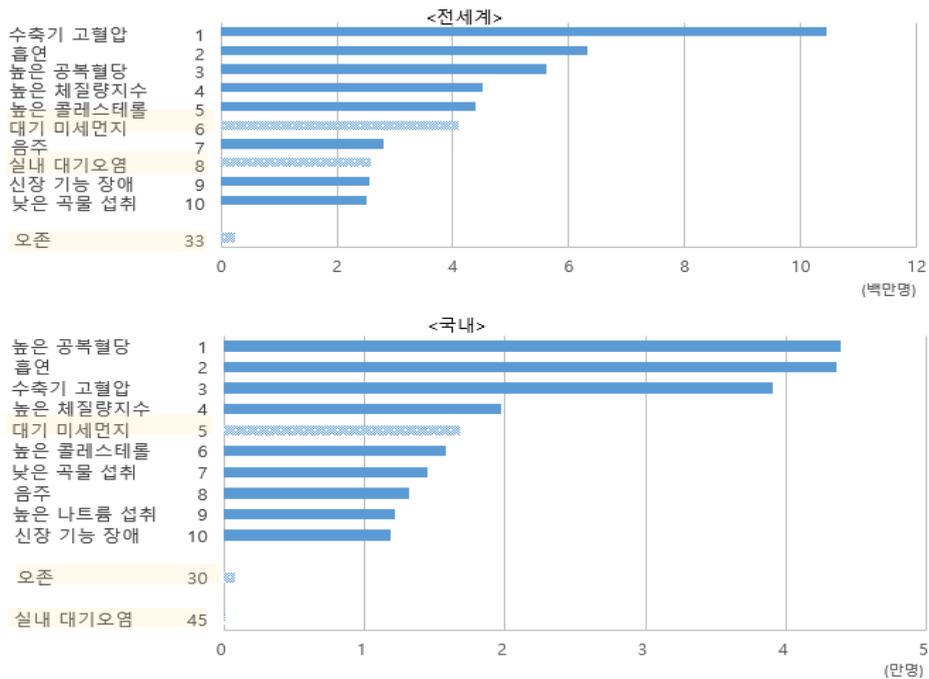
- 휘발성화학제품에는 살충제, 페인트, 프린트용 잉크, 접착제, 세정제, 그리고 샴푸, 향수, 냄새제거제와 같은 개인위생용품 등이 포함됨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실내 대기오염의 성분이기도 하지만, 대기 중에 노출되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PM_{2.5})의 주요 성분인 이차 유기에어로졸(Secondary Organic Aerosols)과 오존을 생성시켜 실외 대기오염의 원료물질이기도 함

1) 비점(끓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함

■ 실내·외 대기오염은 사망을 초래하는 대표적 위험요인임²⁾

- 질병부담연구에서는 직무적 특성과 무관하게 일반인이 노출되는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 오존, 고체연료에 의한 실내 대기오염의 세 가지 요인을 평가하고 있음
- 전 세계 인구의 사망요인으로 미세먼지가 6위, 연료에 의한 실내 대기오염이 8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세먼지가 사망요인 5위로 높은 위험이며, 연료소비에 의한 실내 대기오염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그림 1> 전 세계와 국내의 사망 위험요인 순위(남녀 모두, 모든 연령, 2016년)



자료: IHME/GBD Result Tool

■ 대기오염은 또한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 비감염성질환³⁾을 초래하고 있음

- 전체 대기오염은 흡연 다음으로 비감염성질환에 의한 사망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임(<표 1> 참조)

2) IHME(2018), "State of Global Air 2018"

3) 비감염성질환은 전염성 병원체에 의해 유발되지 않는 질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 질환

- 대기오염에 의한 비감염성질환으로는 폐렴, 뇌졸중, 허혈성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이 있음

〈표 1〉 비감염성질환(NCDs)에 의한 사망의 위험요인(전 세계, 모든 연령)

(단위: 명)

질병	전체 대기오염	실내 대기오염	실외 대기오염	흡연	높은 나트륨 섭취	과일 부족 식단	낮은 신체 활동	음주
만성 호흡기질환	1,337,248	805,373	764,676	1,313,880	0	0	0	0
암	515,529	318,196	262,550	1,890,411	397,208	261,550	33,353	606,487
심혈관 질환	3,848,542	1,785,848	2,413,738	2,476,113	3,557,162	1,982,337	1,300,865	797,869
기타 NCDs	0	0	0	167,446	175,291	117,313	39,120	577,901
전체 NCDs	5,701,319	2,909,417	3,440,964	5,847,850	4,129,661	2,361,200	1,373,339	1,982,257

자료: WHO(2018. 3. 21), "Preventing NCD deaths through better air quality"

■ 최근 가정 내 휘발성 화학제품 소비에 의한 대기오염이 차량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됨

- 올해 초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4) 가정용 소비재로부터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차량의 연료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로스앤젤레스에서 채취한 대기샘플을 분석한 결과 전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가운데 가정용 소비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인 반면, 산업에서 사용한 휘발성화학제품의 비중은 15% 차량 연료가 배출한 비중은 33%였음 5)
- 이 같은 결과는 그 동안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꾸준히 이루어져 차량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줄어든 반면, 가정 내 소비재에 대한 규제는 소홀했기 때문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고체연료 사용에 의한 실내 대기오염은 낮은 편이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등 소비재와 건축내장재에서 배출되는 실내 대기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휘발성 화학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 함량기준 규제 등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McDonald et al(2018), "Volatile chemical products emerging as largest petrochemical source of urban organic emissions", Science, Vol. 359, Issue 6377, pp. 760~764

5) McDonald et al(2018)의 Figure 4. B 참조

- 대기오염 규제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생활소비재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정 및 생활주변에서 소비되는 휘발성 화학제품은 사업장과 달리 별도의 오염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6) 제품생산 및 공급 단계에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임
 - 현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배출현황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규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현재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를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를 고시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배출 규제 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제한하고,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7)
- kiri

6) 환경부(2015),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방안 마련 연구』

7) 보다 자세한 규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ccfNo=5&cciNo=2&cnpClsNo=3>



수술입원일수 감소와 보험회사의 대응

김동겸 수석연구원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수술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2006년 6.55일에서 2016년 5.93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수술 증가로 인해 수술 건당 진료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3% 증가하여 환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전 세계적으로도 수가체계 개선,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당일수술 증가 등으로 단기입원이 증가함.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시 의료이용 패턴 및 진료비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의 수술 건수¹⁾는 2016년 기준 179만 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7% 증가함 (〈그림 1〉 참조)

-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는 2006년 2,786건에서 2016년 3,431건으로 연평균 2.1% 증가
 -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는 백내장수술(992건)과 제왕절개수술(652건) 등의 순임
 -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인 7대 질병군²⁾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적용 등의 여파로 백내장수술이 높은 증가율³⁾을 기록하고 있음
- 수술환자의 의료기관별 이용 비중은 의원(35.4%), 병원(22.1%), 종합병원(21.8%), 상급종합병원(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의원급에서 시행된 수술비중은 2006년 38.7%에서 2016년 35.4%로 감소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수술 비중은 동기간 중 18.7%에서 20.7%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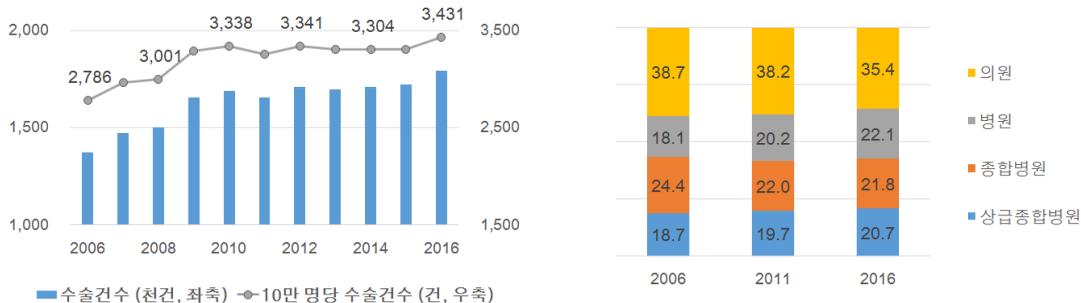
1) 수술 빈도가 높은 33개 주요 수술항목 기준임(국민건강보험공단(2017), 주요수술통계연보)

2)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금액을 내는 제도로,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함

① 안과: 백내장수술, ②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③ 외과: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④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3)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수술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국민건강보험공단(2017))

〈그림 1〉 우리나라의 수술관련 주요지표
 수술 건수 추이 (단위: 건, 천건) 전체 수술 건수 중 요양기관종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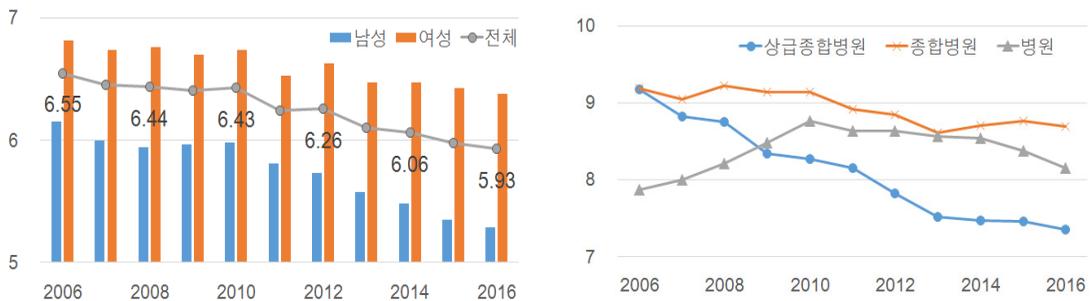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주요수술통계연보

■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수술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수술 건당 진료비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수술 입원일수는 2006년 6.55일에서 2016년 5.93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별로는 난이도 높고 중증질환 수술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일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그림 2〉 참조)
- 의료기술 발달로 복강경수술 등을 통해 개복수술보다 몸에 부담이 적은 새로운 수술법의 등장, 통원수술센터의 확산 등이 입원일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⁴⁾

〈그림 2〉 수술입원일수 변화 추이
 수술 입원일수 추이 (단위: 일) 의료기관별 입원일수 (단위: 일)



주: 평균재원일수=입원환자의 총 재원일수/입원환자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4) 입원일수에는 질병, 환자특성(성별, 연령 등), 병상공급, 의료비지불제도, 본인부담률, 입원료 차등제도 등이 영향을 미침

- 수술 건당 진료비는 2006년 180만 원에서 2016년 275만 원으로,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4.3% 증가함
 - 과거 10년(2006년 ~ 2016년) 사이 수술 건수 증가율(2.7%) 보다 진료비 증가율(7.1%)이 더 높은 것을 볼 때 고가 수술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표 1〉 참조)
 -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를 고려할 때 환자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표 1〉 평균 재원일수 추이

(단위: 천 건, 십억 원, 백만 원)

수술 건수	2006	2007	...	2013	2014	2015	2016	CAGR
수술 건수(천 건)	1,372	1,475	...	1,699	1,710	1,721	1,794	2.7%
진료비(십억 원)	2,472	2,814	...	3,924	4,152	4,476	4,925	7.1%
수술 건당 진료비	180	191	...	231	243	260	27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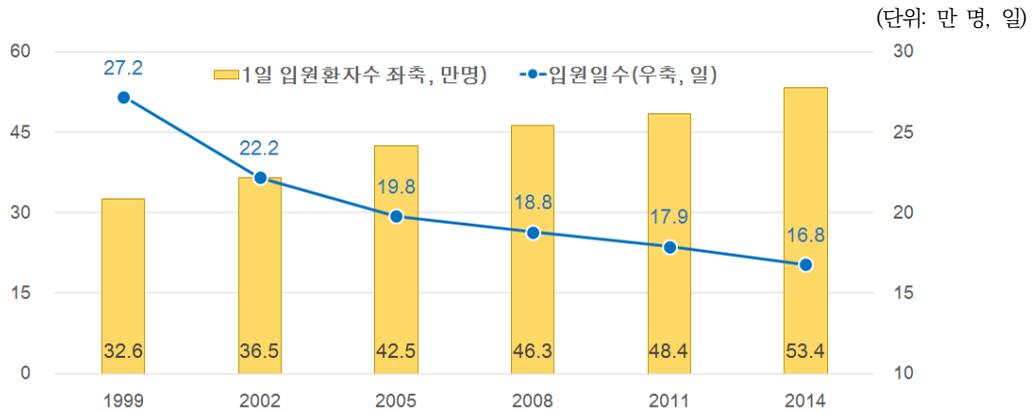
주: 1) 수술 건당 진료비=진료비/수술 건수
 2) 진료비: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금액(공단지급액+환자부담금)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미국과 영국⁵⁾ 등에서도 포괄수가제(DRG) 등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수가정책 시행, 당일수술 (Day-Case Surgery)이 가능한 외래수술센터의 확산 등으로 입원일수 감소하고 있음
 - 최소침습기법 등 의료기술 발전과 더불어 통증완화를 위한 마취영역의 발전 등으로 미국에서는 과거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상당수가 1980년대 이후 병원 내에 설치된 통원수술센터(Day Surgery Center 또는 Ambulatory Surgery Center)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⁶⁾
- 특히, OECD 국가 중 입원일수가 가장 긴 일본은 의료비적정화 계획 시행 등으로 평균입원일수는 지난 15년(1999년~2014년)간 10.4일 단축되었으며,⁷⁾ 입원자 중 29%가 4일 이내 퇴원하는 등 단기입원이 증가하고 있음⁸⁾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국민의료비 관리 및 입원일수 단축 등을 목표로 수가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재원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됨(〈그림 3〉 참조)⁹⁾

5) John Appleby(2015), "Day case surgery: a good news story for the NHS, TheKing'sFund"
 6) Hall et al.(2017), "Ambulatory Surgery Data From Hospitals and Ambulatory Surgery Centers"
 7) 1984년 54.6일, 1999년 39.8일, 2014년 29.9일, 2016년 28.5일을 기록함(厚生労働省, 『病院報告』)
 8) 厚生労働省(2014), 平成26年 患者調査

- 과거에는 입원일수 및 치료행위가 많을수록 진료비가 커지는 구조였으나 장기입원 억제를 위해 입원기간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는 제도(DPC 제도)¹⁰⁾를 2003년부터 시행함
-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단기입원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보장니즈 변화에 대응하여 단기입원을 보장하는 정액형 건강보험상품이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림 3〉 일본의 평균입원일수와 1일 입원일수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2017), 『病院報告』

-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입원 환자 증가,¹¹⁾ 건당 수술비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시 의료이용 행태 및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9) 松岡 博司(2018. 5. 31), “入院日数を短くしようという動きはあるの?; 厚生労働省, 医療費適正化計画について”

10) DPC 제도는 진단군 분류에 근거한 1일당 정액 보수 산정제도로, 입원기간이 길수록 낮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11) 우리나라의 당일 또는 1일 이하 입원환자 수 비중은 2012년 16.2%에서 2016년 21.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보건복지부(2016), 2016 환자조사)



모바일 건강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과 시사점

오승연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건강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급과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의 개입이 없는 독자적인(standing-alone) 건강앱의 효과성은 아직 확고하게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강앱이나 웨어러블기기의 장기적 이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은 소비자 개인만의 노력으로 쉽지 않음.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는 모바일 건강앱의 건강증진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건강생활서비스를 결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급과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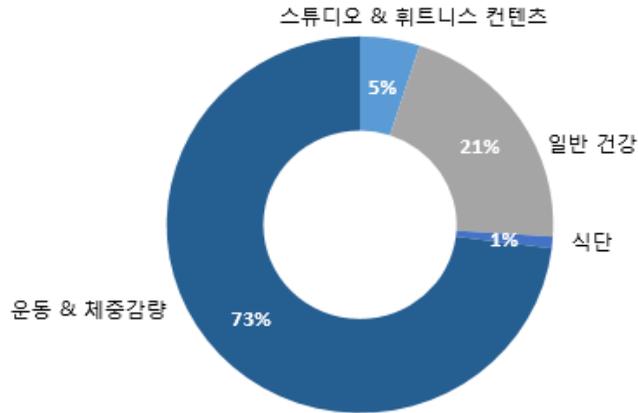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318,000여 개 이상의 건강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후 앱), 340여 개의 웨어러블기기가 출시되어 있음¹⁾
 - 건강관련 모바일 앱은 운동, 식단,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건강생활관리 앱과 질병정보 및 투약시간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 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질병관리 앱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의 건강생활관리 모바일 앱 이용은 2017년 기준 최근 3년(2014 ~ 2017)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²⁾

■ 소비자의 건강앱 종류별 이용현황을 보면, 운동과 체중감량 관련 앱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음

- 2017년 기준 운동과 체중감량 앱의 비중은 73%로 가장 높고, 건강 일반이 21%, 스튜디오와 휘트니스 앱이 5%, 식단관련 앱이 1%였음(<그림 1> 참조)

1) Aitken, M., Clancy, B. and Nass, D.(2017), "The Growing Value of Digital Health: Evidence and Impact on Human Health and the Healthcare System", IQVIA Institute for Human Data Science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석서비스인 야후 플러리(Flurry)의 보고서 참조
<https://flurrymobile.tumblr.com/post/165079311062/health-fitness-app-users-are-going-the-distance>

〈그림 1〉 건강앱 종류별 이용 현황



자료: Flurry Analytics(2017), "All Devices"

■ 이러한 건강생활앱의 급증은 웨어러블기기의 보급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행동추적(activity tracker)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행동을 기록,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행동추적 기능은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음
- 비용과 의료/비의료 구분이 모호한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는 건강앱에 전문가를 매칭시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대중화되고 있지 못하며,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행위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실제로 이용자 스스로 유지와 관리가 쉽지 않은 영양 및 식단관리 앱은 건강생활앱 중에서 이용 비중이 가장 낮으며, 그마저도 감소하고 있음³⁾

- 2014년에서 2017년 영양 및 식단관리 앱 이용비중은 26% 감소하였음
- 반면, 운동과 체중감량 앱은 2014년 55%에서 2017년 73%로, 스튜디오 & 휘트니스 앱은 2014년 2%에서 2017년 5%로 증가함

■ 또한, 전문가의 개입이 없는 독자적인(standing-alone) 건강앱의 효과성은 아직 확고하게 입증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⁴⁾

3) Flurry Analytics(2017), "All Devices"

- 건강앱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용자의 행동과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앱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음
 - 건강앱이나 웨어러블기기의 장기적 이용을 통한 건강한 행동과 생활습관 형성이 쉽지 않음⁵⁾
-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는 모바일 건강앱의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공적, 사적 보건의로 모두에 중요한 문제임
- 건강앱의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만성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임상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어 헬스케어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
- 소비자 맞춤형 앱이라 하더라도 행동추적만으로 이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한 건강생활서비스를 결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건강앱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식단이나 운동량 등을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결합시킴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⁶⁾ **kiri**

4) Oyungerel Byambasuren, Sharon Sanders, Elaine Beller & Paul Glasziou(2018), "Prescribable mHealth apps identified from an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npj Digital Medicine, Vol.1 No. 12 May

5) Endeavour Partners(2014), "Inside wearables: How the Science of Human Behavior Change Offers the Secret to Long-Term Engagement"

6) 모바일 시장분석서비스 앱애니(App Annie)의 건강 및 피트니스 카테고리에서 수익 3위(2018년 10월 현재)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앱의 사례를 보면, 초기에 식사 기록과 운동량을 소비자 스스로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참여도가 떨어 지자 전문 코치가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전환한 후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급증하였음



일본 지자체의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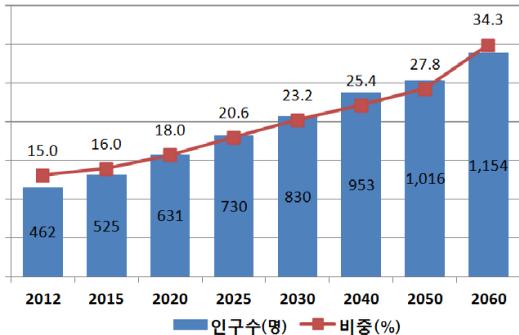
이상우 수석연구원

일본은 치매¹⁾환자가 입힌 물적손해 사고에 대하여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한 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일본 지자체들은 치매환자가 주민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최근 그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소송사례는 일본과 법률이 유사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치매환자 간병이 개인과 가족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치매환자에 의한 물적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국가책임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치매 고령자 증가와 최고재판소 판결의 영향으로 치매 고령자가 일으킨 물적손해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함
- 일본은 치매 고령자 수가 <그림 1>과 같이 2012년 462만 명(65세 이상 7명 중에 1명)에서 2025년 730만 명(65세 이상 5명 중에 1명)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14.5조 엔²⁾에 이를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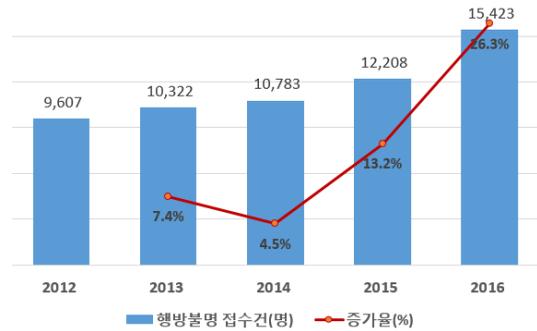
1) 올바른 용어는 인지증이지만 편의상 치매로 호칭함(성윤환 의원 등 11인(201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NHK스페셜(2017. 3. 26), 認知症社会・誰もが安心して暮らすために

〈그림 1〉 일본 치매 고령자 수 전망



자료: 内閣府(2017), 高齢社会白書

〈그림 2〉 일본 치매에 의한 실종자 수



자료: 警察庁(2017), 警察統計

- 치매 실종자 수도 〈그림 2〉와 같이 최근 증가하여 2016년 약 1만 5천 명이 실종됨
-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아마토시(大和市)가 2017년 11월 처음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 배경은 치매 고령자에 의한 타인의 물적 손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치매 고령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최고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받음
- 사건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이 91세 치매 환자 남성 A씨가 전철 선로에서 배회중 전철에 치여 사망하면서 발생한 피해복구비와 출근시간 대체교통 비용을 전철회사가 감독책임을 있는 가족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³⁾

〈표 1〉 최고재판소 심판 치매 고령자 전차 피해사건 주요 내용

핵심 내용	주요 내용
사고 경위	- 지난 2007년 12월 아이치현 오부시에 거주하는 91세의 치매에 걸린 남성 A씨가 새벽에 자택에서 부인이 잠시 잠든 사이 혼자 돌아다니다 열차에 치여 사망 - 가족은 사고시점 간병 투병중인 동거 부인과 지방에서 10년 이상 별거하는 장남임
피해 사실	- 피해복구 비용 및 아침 출근시간에 대체교통 비용 발생
청구 금액	- 전도회사 JR동해는 A씨 유족을 대상으로 720만 엔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료: 厚生労働省(2016. 5. 31), 最高裁判所平成28年3月1日判決要旨를 요약

3) 厚生労働省(2016. 5. 31), 最高裁判所平成28年3月1日判決要旨

■ 일본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민법」상 치매 등에 의해 책임 무능력자⁴⁾의 감독책임 의무⁵⁾가 있는 가족에게 손해배상청구 전액을 배상할 것을 판시함

- 1심 나고야 지방재판소⁶⁾는 A씨 부인에게 졸음에 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장남에게 별거중이라도 사실상 감독자로서 아버지의 배회 방지대책을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금액 720만 엔의 전액 배상판결을 내림
- 2심 나고야 고등재판소⁷⁾는 장남의 감독책임 의무는 인정하지 않고 A씨 부인에게 감독책임과 전철회사의 감시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A씨 부인에 대해 360만 엔의 지급을 판결함⁸⁾

■ 그러나, 2016년 최고재판소⁹⁾는 A씨 부인과 장남에게 치매 고령자의 감독의무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가족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함¹⁰⁾

- 최고재판소는 A씨의 감독의무자를 치매 환자 심신상태와 간병상태, 가족과 동거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
- 이에 최고재판소는 A씨 부인의 경우 85세, 거동이 불편한 간병상태이고 장남의 경우 2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동 판결에 따라 일본에서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물적손해 사고를 입힐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일본 사회에 확산됨

- 이러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치매 고령자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함

■ 대표적으로 가나가와현 야마토시는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치매 고령자가 지역주민에게 입힌 물적피해 사고를 구제하는 고령자개인배상책임보험사업을 2017년 11월에 처음으로 실시함¹¹⁾

4)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
 5) 일본 「민법」 제714조 제1항은 책임 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를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함
 6) 名古屋地方裁判所判例 平成25年8月9日
 7) 名古屋高等裁判所判例 平成26年4月24日
 8) 일본 언론은 2심 결과에 대해 “간병현장의 충격적 판결”, “치매 환자가족 파산”, “2심이 치매 고령자를 24시간 감시하고 길 거리를 배회하지 못하도록 결박 또는 방에 강금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함(読売新聞 2016. 3. 9)
 9) 最高裁第三小法廷 平成28年3月1日 判決
 10) 최고재판소는 본건 발생한 시점에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여 치매 고령자 등의 정신장애자와 동거하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 야마토시가 계약한 보험상품은 개인배상책임보험부 상해보험특약임
 - 가입 대상은 다이와시가 실시하는 치매 고령자 보호 복지제도에 가입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피보험자 1인당 연간 약 6천 엔을 야마토시 예산으로 부담함
 - 보장내용은 치매 고령자가 제3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치매 고령자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최대 3억 엔 한도의 손해배상금과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300만 엔), 입원보험금을 지급함
- 이외에 현재 아이치현 오부시(2018. 6),¹²⁾ 이바라기현 코야마시(2018. 6), 가나가와현 에비나시(2018. 7), 후쿠오카현 쿠루메시(2018. 10)로 확산되고, 효고현 코베시¹³⁾가 2019년에 시행할 예정임
- 일본 지자체들은 지역 내 치매 고령자 보호 복지제도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치매 보호 복지제도¹⁴⁾ 가입에 부정적이던 치매 고령자와 그 가족의 인식을 개선시켜 향후 지자체가 실시하는 동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도 최근 치매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같은 유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민법」도 일본과 유사하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가족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감독책임 의무에 대한 가족을 배제한 일본 판결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이 경우 제3자가 치매 고령자로부터 입은 물적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치매 고령자에 대한 손해배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본의 판결사례는 재택요양 시 가족이 치매 고령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할 경우 치매 고령자 보호가 가족만의 부양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시사함
- 최근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고령자 부부만이 동거하는 고령자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배우자가 치매에 걸릴 경우 노령의 배우자의 힘만으로 치매 고령자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11) 大和市記者会見資料(2017. 8. 24)

12) 한자 지명은 愛知県 大府市(이하 동일) 栃木県 小山市, 神奈川県 海老名市, 福岡県 久留米市, 兵庫県 神戸市 임

13) 코베시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

14) 치매 검사, GPS 기기 부착, 지문등록, 실종 또는 길거리 배회 시 조기발견 케어, 치매 고령자 운전면허 자율 반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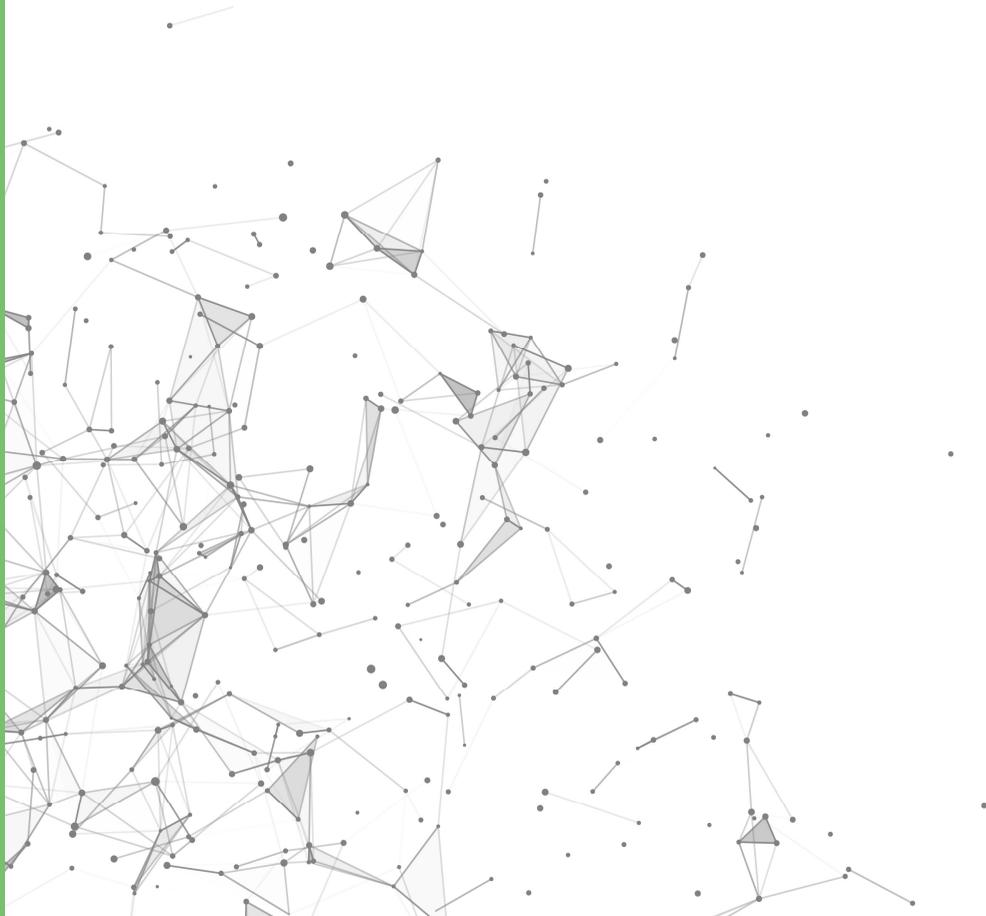
-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치매 고령자 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2017년 약 70만 명¹⁵⁾에 이르고 연간 1만 명 이상¹⁶⁾의 고령자가 실종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치매 고령자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도 기본적 간병은 가족 중심으로 부양하되,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제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향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치매환자 실종방지 등 정부의 치매 환자 케어서비스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kiri

15) 중앙치매센터(2017),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으로 전망함

16) 경찰청(2018)

저출산 및 고령화

1. 30~49세 근로세대, 노후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순자산 관리 필요 | 최장훈
2. 노년기 가구형태와 인지기능 | 이정택
3. 저출산 시대 난임·불임 증가와 보험의 역할 | 강성호 김동경
4.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원인과 시사점 | 최장훈





30~49세 근로세대, 노후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순자산 관리 필요

최장훈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고령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산과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30~49세 근로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낮아 노후를 대비한 적극적인 순자산 관리가 필요함. 재정패널을 분석한 결과 30~49세 순자산 가치는 물가를 고려하면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금융자산이 늘고 부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자산의 감소가 훨씬 컸기 때문임. 따라서 30~49세 근로세대는 순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지출 조정 계획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고령화¹⁾와 장수화²⁾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 근로세대의 노후를 대비한 자산과 부채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4배나 높음³⁾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를 밑돌고 있고, 적용 제외, 납부 예외 또는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큼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24%⁴⁾에 불과함⁵⁾
- 특히 근로세대의 순자산은 노후세대보다 낮아지고 수명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자산 관리의 필요성 또한 높음

1) 65세 이상 인구수(노인)가 증가하는 현상 (노인인구비율(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수/전체 인구수)
 2) 기대수명(혹은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기대수명(0세기준 기대여명)은 1975년 64.2세에서 2015년 82.1세로 17.9세 증가 (연평균 0.45세 증가).
 3) OECD(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4) 24% = (2017년 신규수급자의 연금급여액 평균(만 원) / 2017년 A값 218만 원) × 100
 5) 연합뉴스(2017. 12. 28), "[2018 국민연금 30년] ② '용돈연금' 벗어나 국가지급 보장돼야"

■ 일반적으로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매년 증가하나 세대간 순자산의 증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세대별로 그 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⁶⁾

- 전체 가구의 2017년 순자산은 31,142만 원(경상가)으로 2016년 순자산 29,918만 원(경상가)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도 경상가로는 전 연령대에서 모두 2016년에 비해 증가함
- 청년 실업이 높고 젊은 층의 근로환경이 과거보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젊은 층인 30~49세 근로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2015년 30~49세 근로세대와 2010년 동일 연령대의 순자산의 현가⁷⁾를 비교한 결과, 과거(5년 전)에 비해 동일 연령대의 순자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후 준비의 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5년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5년 전 동일 연령대에 비해 높아졌으나 30~4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5년 전 동일 연령보다 오히려 낮아짐
- 2015년 30~49세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2010년 동일 연령의 순자산보다 낮고, 이러한 패턴이 은퇴시점까지 지속된다면 이들의 노후자산은 앞선 세대에 비해 노후자산이 적을 것으로 추정됨

〈표 1〉 세대별 자산 및 부채 비교(2010년 vs. 2015년)

(단위: 만 원, 증가율)

구분	순자산(A=B+C-D)	금융자산(B)	비금융자산(C)	부채(D)
2010년 30세~49세	22,454	3,452	24,407	5,405
2015년 30세~49세	21,649(-3.6%)	3,542(2.6%)	23,472(-3.8%)	5,365(-0.7%)
2010년 50세 이상	25,101	3,351	25,303	3,553
2015년 50세 이상	28,352(13.0%)	4,215(25.8%)	28,281(11.8%)	4,144(16.6%)

주: 1) 2016년 기준으로 현가화함

2) 괄호 안은 2010년 대비 증가율임

3) 비금융자산은 부동산, 회원권, 귀금속, 농기계, 중장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3차(2010년)와 8차(2015년) 데이터 분석 결과

6)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17. 3. 31 기준)에 의하면, 전체 가구 대상으로 2017년 순자산은 2016년보다 증가(경상가 기준)함

7) 현가로 비교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에서 순자산의 가치를 비교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여기서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함

- 30~49세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과거보다 금융자산이 늘고 부채는 줄었지만 비금융자산의 감소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임(〈표 1〉 참조)
 - 30~49세의 2015년 금융자산은 2010년 동 연령대의 금융자산보다 모두 증가하였고 반대로 부채는 모두 감소하여 순자산을 늘리는 역할을 함
 - 이에 반해 비금융자산은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 규모⁸⁾가 훨씬 커 순자산은 낮아짐
 - 2015년 30~49세가 받을 국민연금 지급액은 2010년 30~49세보다 높아져 노후자산의 개선 여지는 있지만, 그 개선 정도는 순자산 차이와 기대수명 차이에 비하면 적을 것으로 판단됨⁹⁾
- 따라서 미래의 노후세대(현재 30~49세의 근로세대)가 빈곤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 및 지출 조정 계획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각 가계는 현재의 자산과 부채 관리뿐만 아니라 은퇴 시의 자산, 부채, 그리고 은퇴 후의 소득을 예측하고 이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여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또한 30~49세의 젊은 세대에게 자산과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kiri

8) 전체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2015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금융투자협회) 참조)

9) 유사한 연구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1,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보험연구원, 2018년 1월 발간 예정) 참조 바람



노년기 가구형태와 인지기능

이정택 연구위원

인지기능의 위험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생활습관, 건강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하지만, 노년기의 가구형태도 노인들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 과 '배우자 없는 노인이 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동거' 하는 경우 '부부가구의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이 낮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함. 독거노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 있기에 이들의 치매 진행에 대한 예방책이 공사영역에서 필요함

■ 인지기능 위험요인은 다양하지만, 노년기의 가구형태도 노인들의 인지기능¹⁾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여성, 저학력, 결혼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건강생활습관, 우울증,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및 연결망 등 다양한 요인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줌
- 복잡한 가구형태에 속하는 노인이 단조로운 가구의 노인보다 구성원간의 관계를 통해 지적 자극을 더 받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음²⁾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 과 '배우자 없는 노인이 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동거' 하는 경우 '부부가구의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이 낮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함

- '독거노인', '배우자 없는 노인이 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동거' 하는 경우 '부부가구 노인'에

1) 인지기능저하(Mild cognitive impairment)는 정상과 치매의 중간단계로 Yanghong et al.(2013)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 중 평균 10% 정도가 치매로 발전된다고 보고함
 2) 가구 구성원간의 관계를 통해 지적인 자극을 받아 뇌신경 조직의 퇴화를 막고, 구성원간의 정서적 교감으로 노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스트레스와 연관된 인지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임(Fratiglioni et al. 2004; Hulstsch et al. 1999; Seeman et al. 2001)

비해 인지기능이 낮았음(〈표 1〉 참조)

- ‘배우자 없는 노인이 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가장 낮은 인지기능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독거노인’이 낮은 인지기능을 나타냈음³⁾
- 배우자가 주는 지적 자극과 정서적 교감이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나타남⁴⁾

〈표 1〉 가구형태와 인지기능⁵⁾

변수(준거집단: 부부가구)	계수	변수	계수
독거노인	-1.423***	노인단독*나이	-0.146***
배우자 없는 노인, 자녀 및 기타구성원과 동거	-2.108***	배우자 없는 노인 자녀 및 기타*나이	-0.060

주: 응답자 5,333명, 총 15,341명 관측치를 이용하여, 사회활동 참여횟수, 건강상태, 일상생활제한, 도구적 일상생활제한, 운동여부, 음주·흡연 여부 등을 통제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함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08~2014)

■ ‘독거노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 있기에 이들의 치매 진행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함

- ‘독거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지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켜 스트레스 완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 한국의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는 경로당이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⁶⁾ 이들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 사회적 활동이 장려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독거노인’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프로그램 불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함
- ‘배우자 없는 노인이 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인지기능이 가장 낮은 점은 이들의 자녀 및 기타 가구원들이 잠재적 치매 돌봄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2014년 서울시 등록 치매환자의 34.6%가 배우자 없이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치매

3) 독거노인의 경우 준거집단이 부부가구의 노인들 보다 평균 1.423포인트 낮고, 배우자 없는 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사는 노인들의 경우 2.108포인트 낮음
 4)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배우자가 주는 정서적 지지만큼은 못할 수 있어 부부만 사는 경우에 비해 인지기능 유지에 부정적일 수 있음
 5) 인지기능 측정을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한국어판 인지기능(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을 사용함. 이 척도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를 선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질문지는 시간 지남력, 장소지남력, 단기/장기 기억력, 수리력, 물건인지 등 19개 문항으로 구성됨. 본고는 65세 이상이면서 2014년 5차 가지 인지기능 측정 항목 등에 응답한 노인들로 한정된 표본으로 고정효과 분석을 함(N= 5,333, 관측치 = 15,341)
 6) 통계청(2017), 「2017 고령자 통계」

환자의 주 돌봄자는 매일 9시간 환자를 돌보는데 사용하고, 약 52%는 가구 소득 대비 간호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⁷⁾

■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의 증가와 치매 돌봄자들의 간병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 공급이 미흡한 편이므로 건강보험 통계를 활용한 상품개발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

- 치매 보장 상품이 미흡한 이유는 내부 통계 부족으로 인해 손해율 관리가 어렵기 때문임⁸⁾
 - 치매 등급판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등급판정이 달라질 수 있고, 판정경계선에 있는 환자나 가족의 경우 치매증상을 강하게 주장하여 임상평가 시 최대한 인정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하여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음
- 건강보험, 의료급여 통계와 같은 국민통계를 이용한 상품개발이 우선 이루어진 후, 내부 통계 집적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치매보험 상품개발이 이루어져 함 kiri

7) 이동명 외(2014), 「2014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등록 치매 노인 관리현황 조사」,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8) 보험회사에서 2002년 4월부터 치매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한 이후,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료비, 간병비, 진단금, 생활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치매 보장 상품 공급은 미흡한 상황임



저출산 시대 난임·불임 증가와 보험의 역할

강성호 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

만혼, 출산기피 및 연기, 각종 환경적 요인 등의 영향에 따라 국내 난임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난임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난임환자 증가에 따라 난임치료 관련 진료비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임.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민영보험 역할 강화를 통해 난임·불임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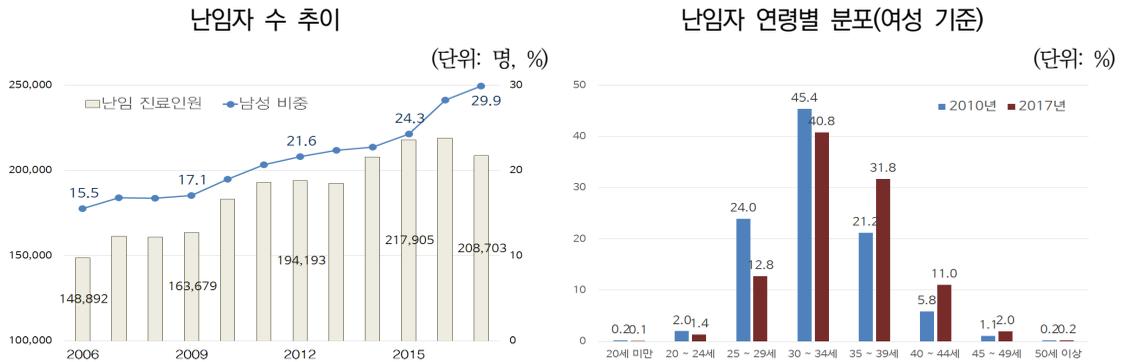
■ 만혼 및 출산계획 지연과 더불어 각종 환경적 요인¹⁾ 등으로 난임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성 난임자가 크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임

- 난임자 수는 2006년 14만 8,892명에서 2017년 기준 20만 8,703명으로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며, 난임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7년 29.9%로 늘어남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난임률 수준은 13.2%(2015)로 미국 6.7%, 영국 8.6%, 독일 8.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음
- 여성 난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의 난임자가 감소하였으나, 30대 중반 이후의 난임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대의 난임자 감소는 결혼연령 지연에 기인하며, 30대 중반 이후의 난임자 증가는 결혼 초기 사회적 기반마련을 위해 자녀계획을 미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요국의 초산연령은 미국 26.4세, 영국 30.2세, 독일 30.9세,²⁾ 우리나라 31.2세로, 초산연령과 난임발생 확률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Deyhoul et al.(2017), Infertility-Related Risk Factor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Health and Reproduction Sciences

2) Fertility Europe(2017) A Policy Audit on Fertility - Analysis of 9 EU Countries;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5), 「平成 22 年 第 14 回出生動向基本調査」; 통계청(2015), 2015년 출생·사망통계; CDC(2015): Key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그림 1〉 국내 난임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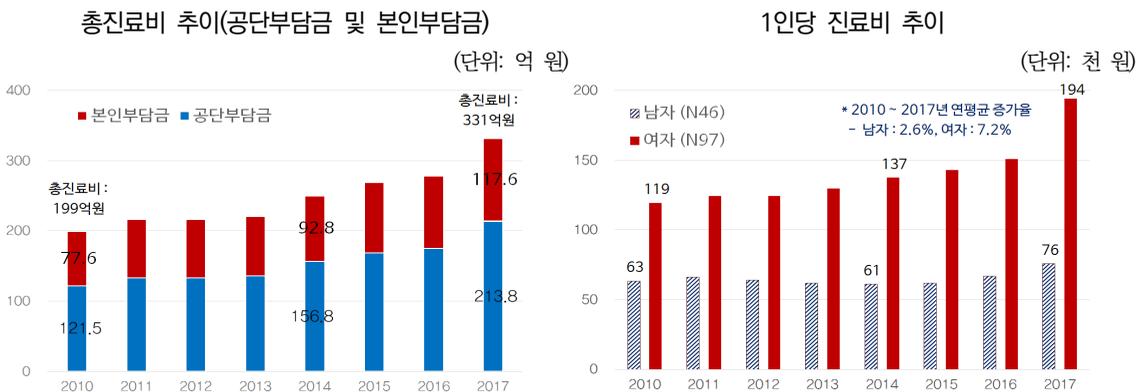


주: 1) 남성불임(N46), 여성불임(N97) 주상병 기준임 2) 2006년 ~ 2010년의 경우 여성불임에는 습관성유산(N96)이 포함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 난임자 증가에 따른 난임치료시술 증가로 인해 관련 진료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본인부담률은 2010년 39.0%에서 2017년 35.5%로 개선되었으나,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사회연구원(2016)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체외수정 시술비는 평균 277만 원이며, 의료기관 별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³⁾
- 난임진료 관련 진료비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7년 33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진료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2010~2017년 연평균증가율 남자 2.6%, 여자 7.2%)

〈그림 2〉 난임질환 관련 진료비 추이



주: 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합한 금액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3) 보건사회연구원(2016),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 **일본 금융청은 2016년부터 난임치료 보험상품개발 규제 해소를 통해 관련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불임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4년 고액의 불임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나 사각지대 발생 및 치료비 부담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한 적이 있음
 - 동 지원 서비스는 정액급부, 나이 및 횟수 제한 등으로 상당한 사각지대⁴⁾가 존재하였고, 불임치료 비용이 1회당 30~40만 엔⁵⁾ 등 고액이 소요되어 치료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옴
- 이에 일본 금융청에서는 보험업법시행규칙 개정⁶⁾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인수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난임치료 관련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계기가 됨

■ **일본 보험산업은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부응하여 일본생명, 도쿄해상, Aiaru(아이얼) 소액단기보험회사 등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 일본생명은 공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난임치료기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일본 최초의 보험상품인 ChouChou를 2016년에 10월에 출시함⁷⁾
 - 동 상품은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질병 및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고, 출산 및 특정 불임치료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특약의 형태로 취하는 상품임⁸⁾
 - 한편, 출산 시 출산지원 보험금 지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출산한 자녀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⁹⁾
- 도쿄해상(東京海上)은 기업이나 건강보험조합을 대상으로 직원의 특정불임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불임치료 비용 등 보상보험”을 2016년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함¹⁰⁾

4) 법률상의 미혼인 부부, 아내가 43세 이상으로 불임치료를 시작, 소득제한을 초과한 가구 등
 5) 厚生労働省, “特定不妊治療費助成事業の効果的・効率的な運用に関する検討会(第 1 回) 資料 不妊治療の患者数・治療の種類等について”
 6) 金融庁(平成28年2月10日), “保険業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 の公表について
 7) 日本生命(2016. 9. 5), 新商品 “ニッセイ出産サポート 給付金付 3大疾病保障保険 ‘ChouChou!’”, の発売について
 8) 상품 출시 후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약 5,000건의 계약이 체결함(マナー研究所(2017. 4. 29)),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体外受精) 및 현미수정(micro-fertilization, 顕微授精) 등 특정불임치료에 대해 최대 12회를 한도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함. 치료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적용하며(1 ~ 6회: 5만 엔, 7회 ~ 12회: 10만 엔),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담보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공적으로 보장해 주는 6회를 초과할 경우 보험금이 늘어나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음
 9) 1인: 10만 엔, 2인: 30만 엔, 3인: 50만 엔, 4인: 70만 엔, 5인 이상: 100만 엔(단, 가입 후 1년 이내의 출산은 제외)
 10)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株式会社(2016. 11. 1), “不妊治療費用等補償保険”, の販売開始について

- 동 상품은 기업 복리후생 차원의 단체보험상품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남성불임치료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Aiaru(アイアル) 소액단기보험회사는 불임치료 자체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임치료 중인 여성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子宝エール)¹¹⁾을 2011년 12월에 출시하였음¹²⁾
 - 불임치료 기간 중 6가지의 특정 질병을 제외한 항목을 보장하며, 불임치료 종료 후에는 정상적 보장내용의 의료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함
- 미국에서는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난임치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출산금융(Fertility Financing) 시장이 확산되는 추세임
- 뉴욕,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에서 난임치료보험을 민영 단체의료보험의 형태로 운영 중임¹³⁾
 - 난임진단, 진단목적 검사, 투약 등을 보장하며, 시험관 시술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장
 - 출산금융이란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특화된 금융상품으로 대출 및 체외수정(IVF) 위험분담상품 등을 의미함¹⁴⁾
 - IVF 위험분담상품이란 체외수정 시술 실패 시 일정부분 비용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임
-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민영보험 역할 강화를 통해 난임·불임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공적부문의 보장성 강화 추세 등에 따른 공적부문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면 민영 보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시점임
 - 특히 난임치료 지원 및 출산 시 급부금 제공을 통한 출산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영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본의 사례(출산지원 보험금 지급 등)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¹⁵⁾ kiji

11) 불임치료 중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임신·출산·육아 등의 정보 제공사이트(jineko, ジネコ) 운영회사인 PUZZLAB의 요청에 따라 공동개발한 상품임. 1년 갱신상품이며 보험료는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2,000엔 수준임

12) 小林 雅史(2015. 10. 27), 「不妊治療保険について - 現状と今後の方向性, ニッセイ基礎研究所」

13) New York Times(2014), "Insurance Coverage for Fertility Treatments Varies Widely"

14) 금융연구원(2015), 「미국의 출산금융 확대」, 국제금융이슈

15)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난임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적정보험료 산출의 어려움 불확실한 수익 등을 이유로 상품 출시가 되지 못한 상황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0. 23),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 등 난임(難妊)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 나옵니다"; 서울신문(2015. 6. 19), "작년 내놓겼다면 난임보험 6개월째 난임")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원인과 시사점

최장훈 연구위원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음.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체가구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음. 그 이유는 OECD 선진국들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적용비율이 높아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전체가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노후 일자리도 열악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월등히 높음.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므로 노인가구의 빈곤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3.8%로 OECD 평균 11.5%와 큰 차이가 없으나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2.5%보다 훨씬 높음¹⁾
- 한국의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3.3배 수준이며,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 빈곤율도 2016년 32.6%로 전체가구(9.3%)에 비해 노인가구가 더 높음²⁾

■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음(〈표 1〉 참조)

-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의 빈곤율보다 높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음
- 캐나다와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전체가구의 빈곤율보다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오히려 낮음

1)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빈곤통계연보」

- OECD 평균으로 보면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12.5%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인 11.5%와 큰 차이가 없음

〈표 1〉 OECD 주요국의 노인가구 빈곤율과 전체가구 빈곤율

(단위: %)

구분	노인가구	전체가구	구분	노인가구	전체가구
호주	25.7	12.8	이태리	9.3	13.7
오스트리아	8.8	9.0	일본	19.0	16.1
벨기에	7.7	9.1	한국	45.7	13.8
캐나다	9.0	12.6	멕시코	25.6	16.7
체코	3.7	5.9	네덜란드	3.7	7.9
덴마크	3.2	5.5	스페인	5.4	15.3
핀란드	5.2	6.3	영국	13.8	10.9
프랑스	3.6	8.2	미국	20.9	16.8
독일	9.5	9.5	OECD 평균	12.5	11.5

주: 노인가구는 66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로 2014년 기준임. 단, 일본은 2012년, 한국, 영국, 미국은 2015년 기준임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 OECD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이전소득을 적용받는 비율이 높아 소득수준이 전체가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표 2〉 참조)

- OECD 평균으로 보면, 노인가구 소득원의 66% 이상이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됨
- 이에 따라 OECD 평균 노인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소득의 88%에 달함

- 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노후의 일자리도 열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음
 - 국민연금제도가 시행(1988년)된 이후의 기간이 길지 않아 현재 노인의 상당수는 국민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급여액이 적은 상태임
 - 하지만,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2016년 기준으로 55%(국민연금 50%, 직역연금 5%)로, 45%는 노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것임³⁾
- 우리나라는 노인가구의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임(〈표 2〉 참조)

3) 국회예산정책처(2017),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II[노후소득보장대책 분석]」

- OECD 국가들 중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인 국가는 전체 35개국 중 2개국(한국, 멕시코)에 불과함
- 노후의 근로/사업소득이 높은 이유는 공적이전소득이 낮아 노후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하지만, 노후소득을 위한 일자리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라는 특징을 보임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종사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2.9%,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5%, 판매종사자 5.6% 등의 순서임⁴⁾
- 우리나라 노인가구소득은 전체가구소득의 69%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임⁵⁾

〈표 2〉 OECD 주요국의 전체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66세 이상)소득 비율 및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단위: %)

구분	전체가구소득 대비 노인가구소득 비율	노인가구 소득구성			
		공적이전소득 ①	근로/사업소득 ②	재산소득 ③	합계 (=①+②+③)
호주	70.6	55.6	26.2	18.2	100
오스트리아	93.4	81.8	12.4	5.8	100
벨기에	80.3	84.1	9.4	6.5	100
캐나다	91.1	35.1	24.8	40.1	100
체코	78.1	78.5	19.6	2.0	100
덴마크	79.5	62.9	16.7	20.4	100
핀란드	85.7	80.8	10.0	9.2	100
프랑스	103.4	77.3	5.5	17.2	100
독일	88.5	74.1	15.2	10.6	100
일본	89.8	51.3	38.7	10.0	100
한국	68.8	30.2	50.8	19.1	100
멕시코	89.1	31.4	56.8	11.8	100
미국	94.5	50.9	35.2	13.9	100
OECD 평균	87.6	66.3	23.6	10.1	100

주: ·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강제가입 퇴직연금이 포함됨

· 재산소득에는 사적연금과 그 외 금융소득이 포함됨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4) 정경화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참고로 우리나라 노인가구지출은 전체가구지출의 60%임(통계청(2018. 5. 30),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비중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가구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의 확대와 양육에 대한 크레딧제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도 고민해봐야 할 것임 kiri

고령화리뷰 모음집 2018

발행일 | 2019년 3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